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 플레이스

교정 이모저모

평수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서다
EBS '자이언트 펭TV' 촬영 현장

역사와 오늘

거친 수용자 마음을 진주처럼 매끄럽게 다듬다
진주교도소

교정의 공간

방황하는 수용자들의 '마음 주치의'
진주교도소 심리치료과

교정 아카이브

교정 포커스 **금융명**

대구 감옥의 설치와 근대 행형의 전개(상)

교정 논문 **한도완**

분노조절프로그램이 규율위반 수용자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하)

교정 리포트 **김종배**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전문가 칼럼 **곽대훈**

미국 교정정책 동향
전자식 서신교환 정책에 대한 소견

교정 판례 **박경혜**

위생상의 적절한 조치와 수용자 청결 의무에 관한 고찰

교정 백과 **허경미**

미국 민영 교정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

교정 NEWS

04

2023 April + Vol. 563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04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월
2023년 4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기획·디자인
반디컴 Tel. 02-2272-1190

월간 <교정>은 웹진(cowebzine.com)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교정 플레이스 Corrections PLACE

교정 이모저모 평수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서다 EBS '자이언트 펭TV' 촬영 현장	04
역사와 오늘 거친 수용자 마음을 진주처럼 매끄럽게 다듬다 진주교도소	08
교정의 공간 방향하는 수용자들의 '마음 주치의' 진주교도소 심리치료과	14
외부 칼럼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교정공무원의 진짜 이야기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룸 2.58』	18



교정 아카이브 Corrections ARCHIVE

교정 포커스 대구 감옥의 설치와 근대 행형의 전개(상) 금융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20
교정 논문 분노조절프로그램이 규율위반 수용자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하) 한도완 부산구치소 보안과 교위	46
교정 리포트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김중배 서울동부구치소 사회복귀과장	68
전문가 칼럼 미국 교정정책 동향 전자식 서신교환 정책에 대한 소견 곽대훈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	96
교정 판례 위생상의 적절한 조치와 수용자 청결 의무에 관한 고찰 박경혜 수원구치소 보안과 교감	98
교정 백과 미국 민영 교정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12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정 NEWS	136
모범 공무원	145
독자마당	146





펭수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서다

EBS '자이언트 펭TV' 촬영 현장

글 강진우 사진 이정도 출처 유튜브 '자이언트 펭TV'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죄명은 '팬심 방화죄'. 펭수와 현직 교정공무원들이 유쾌하게 풀어낸 '자이언트 펭TV'의 수용 생활 에피소드는 국민에게 교정시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더불어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선입견을 걷어 내는 역할도 수행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나타난 펭수

성인 키를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몸집과 초점을 알 수 없는 부리부리한 눈, 벚꽃을 닮은 연분홍빛 볼터치와 정수리를 감싸는 노란색 헤드폰. 펭수는 묘하게 귀여운 외모와 MZ세대 특유의 당돌한 성격을 바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EBS 최고의 인기 캐릭터다.

이런 펭수가 이번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교정본부와 서울동부구치소의 협조하에 수용 생활 에피소드 촬영에 나선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하루 종일 구치소 안팎을 다니며 교정공무원의 업무와 수용 생활의 단면을 펭수 특유의 유쾌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원활한 촬영을 위해 촬영 10일 전 사전 답사를 도왔으며, 구치소 내에서 촬영이 진행되는 만큼 치밀한 계획 수립·실행했다. 영상 속 펭수의 일대일 케치는 '몸짱'으로 유명한 수원구치소 보안과 박정호 교감이 도맡았다. 해당 에피소드는 지난 3월 31일 저녁 7시 35분 EBS1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15분으로 압축한 3년간의 수용 생활

'자이언트 펭TV' 제282회 '펭수, 수감되다' 편은 호송 버스에 탑승한 펭수가 구치소에 입소하는 장면으로 시작됐다. 남다른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끝에 '팬심 방화죄'를 선고받은 펭수는 구치소의 첫 관문인 신입실에서 신원 조회, 신상 확인, 신체검사 절차를 차례대로 밟았다.

지정받은 수용 거실에 받을 들인 펭수는 좌충우돌 가상 수용 생활을 이어 나갔다. 신입 수용자와 이런 저런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PD와 면회하는 도중 난동을 피워 기동순찰대에게 끌려가기도 했지만, 어느새 마음을 고쳐먹은 펭수는 서서히 모범 수용자로 성장해 나간다. 펭수를 일대일 케치는 역할을 부여받은 박정호 교감은 교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용자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교정교화의 과정도 시청자들에게 선사했다. 펭수와의 대화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고충을 알린 값진 시간도 마련됐다. 그간 겪은 사건들을 펭수와 함께 겪은 것처럼 이야기한 박정호 교감은 펭수가 건넨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의 이야기에 실제로 큰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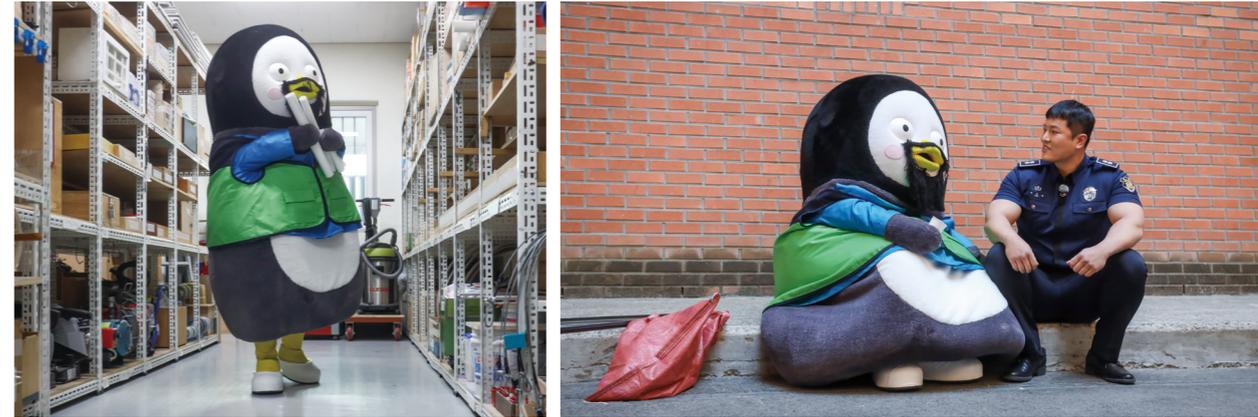


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수용 생활에 최선을 다한 펭수는 극 중 시간 3년 만에 출소, 제작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한결 유쾌하게 교정을 소개하다

이번 '사이언트 펭TV' 촬영은 여러모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인기 캐릭터인 펭수를 통해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첫 번째 성과다.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이 눈에 보이지 않아 관심을 갖지 못한 국민들에게 한결 다가서기 쉬운 유쾌한 문법으로 교정시설 안팎

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실제 수용 생활의 일면과 교정공무원의 임무를 축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동안 방송과 영화에서는 교정시설의 역할과 수용 생활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접한 국민들은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갖기 쉬웠는데, 펭수와 출연 교정공무원을 통해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그간의 오해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 이를 증명하듯 '펭수, 수감되다' 편 공개 직후 '사이언트 펭TV' 유튜브 채널에는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을



응원하는 2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지금도 조회수와 댓글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힘을 계속 기울인다.

Mini Interview



“국민들에게 교정을 알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수원구치소 교감 박정호

“이번 촬영에서 펭수를 일대일로 계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교정시설의 안팎과 교정공무원의 업무, 수용자의 수용 생활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촬영에 임했는데요. 특히 교정공무원의 고충을 이야기했을 때 펭수가 정말 고생 많으며 응원을 건네줘 큰 힘이 됐습니다. 촬영을 위해 애써 주신 제작진과 서울동부구치소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펭수 좋아하는 아들과 함께 본방 사수하겠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교위 이승훈

“사실 펭수라는 캐릭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다지 큰 관심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펭수를 엄청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더욱 열심히 촬영 협조 및 지원에 임했는데요. 많은 국민들, 특히 제 아들에게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호송 버스 계호할 때 출연했으니, 이번 편은 아들과 함께 반드시 본방 사수하려고 합니다.(웃음)”



“앞으로 다시 없을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교도 하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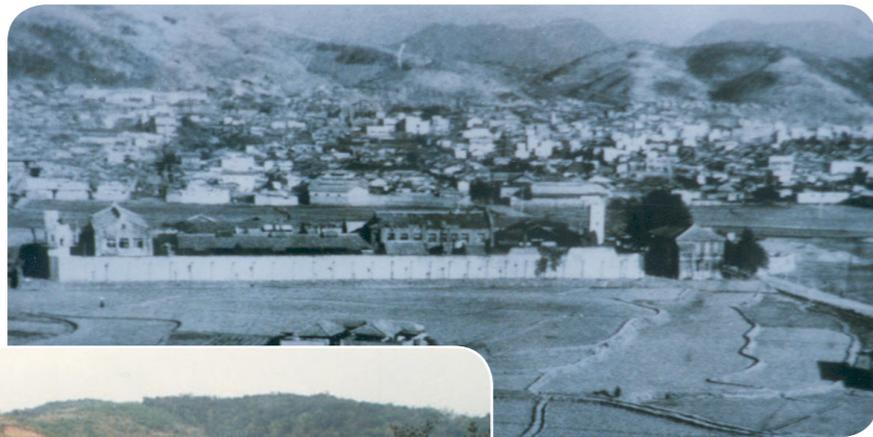
“현재 신입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이언트 펭TV' 촬영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평소 펭수를 좋아하는 데다가, 앞으로의 교정공무원 생활에서 다시 찾아오기 힘든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인데요. 입담 좋은 펭수 덕분에 긴장을 풀 수 있었고,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신입 수용자 입소 과정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거친 수용자 마음을 진주처럼 매끄럽게 다듬다

진주교도소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진주에 들어서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낮은 건물들과 탁 트인 하늘, 남강을 둘러싼 천혜의 자연과 진주성으로 대표되는 소담스러운 유적이 뾰족해진 심성을 원래 모습대로 다듬어 주는 것. 진주교도소도 진주 특유의 고즈넉한 편안함을 그대로 빼닮았다. 수용자들은 그 안에서 진주처럼 모난 곳 없이 새하얗고 동그랬던 자신의 본성을 서서히 되찾아간다.



#1

115번째 봄을 맞이한 진주교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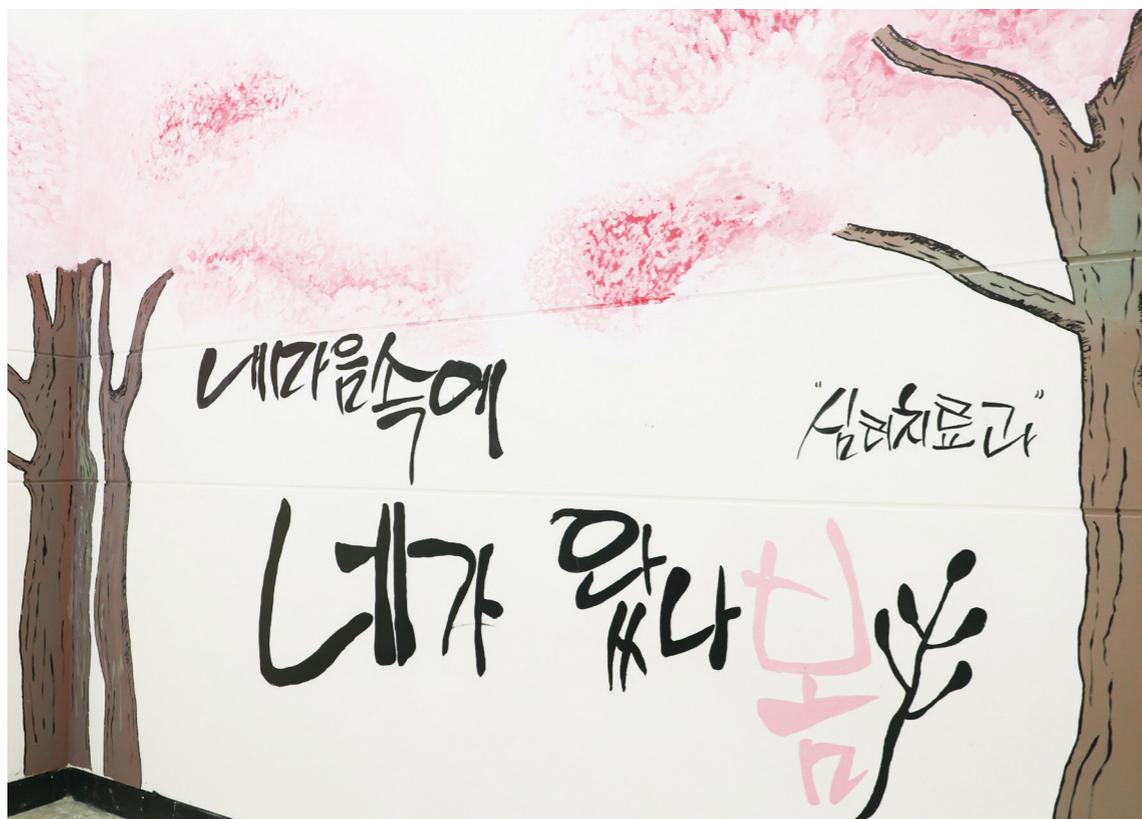
봄기운 완연한 어느 날, 서부 경남의 중심인 진주시 한편에 자리한 진주교도소로 향했다. 정문을 넘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청사 앞 공원은 봄 그 자체다. 죽히 수십 년은 서 있었을 법한 소나무 군락 사이사이로 철쭉과 벚꽃 봉오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더없이 푸른 하늘과 적당히 따스한 바람이 더해진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으려니, 취재진을 마중 나온 총무과 정주영 교위가 봄꽃처럼 활짝 웃으며 말을 건넸다.

“4월 초가 되면 온갖 꽃들이 진주교도소 곳곳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모두의 마음이 절로 포근해지는 시기죠. 모르긴 몰라도 봄에 가장 아름다운 교도소 중 한곳으로 꼽힐 자격이 충분할 겁니다.(웃음)”





하늘을 향해 길게 뻗은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개청 100주년 기념비는 진주교도소의 가나긴 역사를 대변한다. 1908년 4월 진주감옥으로 개청 후 1915년 진주시 상봉서동으로 이전, 1989년 12월 현재 위치로 다시 한번 자리를 옮긴 뒤 지금에 이르고 있는 진주교도소는 오늘날 중증 정신질환 및 결핵 수용자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처우 중점 교정시설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에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진주교도소 교정공무원 400여 명은 바윗돌 같은 단합력과 외부 기관 못지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용자 심신 안정과 효과적 교정교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한다.



#2

수용 생활에 심신의 건강을 더하다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전담하는 만큼, 진주교도소는 일반 교정시설에서는 보기 힘든 심리치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심리치료과 한쪽에 마련된 심리치료 상담실에서는 외부 전문의와 수용자의 화상심리치료가 진행 중이었다.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적절한 약물 처방, 종교활동 등을 통해 불안감이 많이 해소됐으며 최근에는 출소 후 사회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수용자의 이야기에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다. 심리치료센터에서는 '2023 마음치유 프로그램' 1회차 교육이 한창이었다. 사회성 증진·정신건강·인지행동치료·예술치료 등 건강한 수용 생활을 위한 다각적 교육이 11주에 걸쳐 이뤄지는데, 1회차 교육이 막바지에 다다른 덕분인지 참가 수용자들의 표정은 한결 같이 밝았다. 그들의 정돈된 마음을 증명하듯, 심리치료실 한편에 마련된 실습실에는 수용자들이 직접 만든 한지 공예품이 정갈한 멋을 품은 채 줄지어 놓여 있었다. 의료 수용동 끝단에 마련된 결핵 수용동도 진주교도소의 특징적인 시설이다. 결핵 수용동의 유리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복도와 각 거실에 상당한 규모의 음압 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이 설비가 결핵균을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결핵 수용동은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시기에 확진자 수용동으로도 활용됐으며, 덕분에 한결 수월하게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3

널리 가치를 뽐는 '함께하는 교정행정'

진주교도소는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심리치료과의 전문성을 활용해 개별 상담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마침 여성 수용동에서 심리치료과 직원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기에 현장을 찾았다. 내담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알맞은 조언 및 처방을 전하는 심리치료과 직원과, 그 이야기를 듣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내담자 사이에서 두터운 신뢰 관계가 물씬 느껴졌다. 아울러 진주교도소는 올해 안에 교정공무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신 안정실을 보안청사 2층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수용동으로 향하는 복도에 전시된 가운데 갤러리는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모두에게 심신의 안정과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하다. 이곳에는 1991년부터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화(禪畵) 무형문화재 성각스님의 선화 작품 24점이 걸려 있는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작품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푸근한 감동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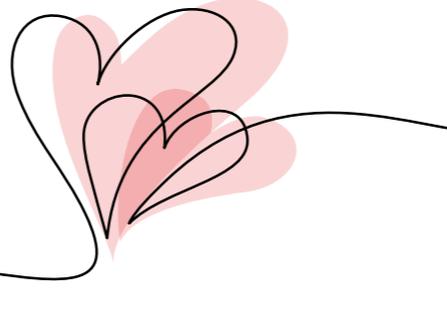
진주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은 이렇게 얻은 정서적 풍요를 기꺼이 지역사회와 나눈다. '진주교도소 나누미 봉사단을 중심으로 자매결연가정 돕기, 관내 모범학생 장학금 지원, 소외계층 위문금 전달 등의 활동을 폭넓게 펼친다. 진주교도소가 추구하는 '함께하는 교정행정'은 이렇듯 수용자와 교정공무원, 나아가 지역사회의 행복까지 두루 챙기는 모습으로 꾸준히 성장·발전하고 있다.



방황하는 수용자들의 '마음 주치의'

진주교도소 심리치료과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눈에 보이는 상처는 치료하기 쉽지만, 마음의 상처는 찾기 어려울뿐더러 치유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판단력을 흐트러트리기도 한다.
이는 수용자도 마찬가지. 진주교도소 심리치료과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함으로써 그들이 지나긴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한다.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의 마음을 돌보다

전주교도소는 정신질환 수용자 집중치료 교정시설로, 전국의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 중 상당수가 이곳으로 이감돼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각 소로 복귀한다. 이런 이유로 교정시설로서는 드물게 심리치료를 갖추고 있으며, 1991년부터 30년 넘게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해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가 정상적인 수용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장호 과장이 심리치료과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였다.

“심리치료과는 크게 심리치료팀, 전문상담팀, 운영지원팀으로 나뉩니다. 심리치료팀은 성폭력·마약·알코올·규율위반·가정폭력·스토킹 등을 일으킨 수용자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의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문상담팀은 상담을 통해 증상을 조기에 파악해서 정신질환을 예방하거나 중증으로 발전하는 상황을 막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울러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도 맡고 있죠. 마지막으로 운영지원팀은 심리치료과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합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 수용자 대상 통합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정신재활센터를 개소한 전주교도소는 대표적 심리치료 과정인 마음치료 프로그램, 아버지학교 등을 13년째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용 생활, 환소 및 출소 후 재발 방지에 기

여하고 있다. 지금껏 2,500명에 이르는 수용자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난 전문성

심리치료과는 부서 특성상 심리치료·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다 보니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전문적인 교과과정을 이수한 교정공무원이 심리치료과에 많이 들어오는데, 심리치료과에 지원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 관련 공부를 한 직원들도 상당수다. 심리치료과 직원들의 남다른 사명감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11명의 부서원 중 8명이 청소년상담사·임상심리사·정신전문간호사 등의 국가자격과 범죄심리사·중독심리사 등 민간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범죄심리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작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한 마약류재활강사에 5명이, 법무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한 제1회 교정교육전문강사에 3명이 합격했죠. 올해 들어서는 직원 2명이 범죄심리사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 수련에 돌입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 모든 부서원이 전문 분야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심리치료과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자부합니다.”

직원들이 자기 계발을 통해 얻은 전문성은 외부와 대면 교류가 끊기다시피 했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빛났다. 외부 강사가 교도소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자 내부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수 명령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더불어 작년에도 1,734건의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수용자 정신건강 관리에 크게 기여했다.



살뜰히 챙기는 동료들의 정신건강

아무리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도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를 상대하고 치료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심리치료과 직원들은 “신기하게도 힘들 때마다 치료받은 수용자들이 힘을 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직원과의 상담과 치료를 통해 상담가의 꿈을 갖게 됐다는 수용자, 더 이상 말썽 피우지 않고 수용 생활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수용자,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동시에 우울증을 떨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수용자 등 많은 이들이 전한 감사 덕분에 힘든 순간순간을 이겨 낼 수 있었다는 것.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진심 어린 치료와 상담이 직원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힘으로 돌아온 셈이다.

심리치료과는 일선에서 교정질서 확립과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개별 상담과 치료,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보안청사 2층에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신 안정실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수용자 교정교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동료들의 심적 어려움을 챙기는 동시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월간 <교정>을 통해 받은 선물들을 통해 우리 과 직원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잘 챙겨서 활기찬 교도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MINI INTERVIEW

수용자들을 위해 우리부터 건강해집시다!



“우리는 수용자들 중에서도 어둠이 짙은 수용자들을 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우리마저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이를테면 취미생활 등을 발견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키면서 수용자의 정신건강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용자들을 위해, 먼저 우리부터 정신건강을 잘 챙깁시다!”

심리치료과 하장호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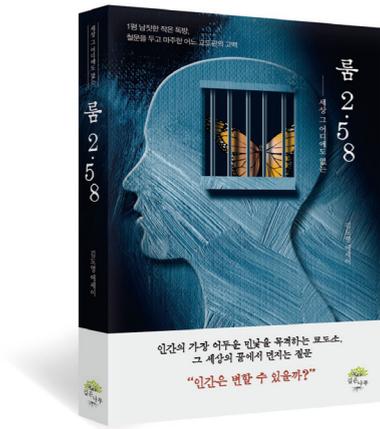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교정공무원의 진짜 이야기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룸 2.58』

작년 에세이집 『교도소에 들어가는 중입니다』를 출간한 현직 교정공무원 김도영 작가가 올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룸 2.58』로 다시 돌아왔다. 교정공무원으로서 겪고 느낀 일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그의 문장에는 사람에 대한 의문과 회의, 직업적 어려움 등이 면면히 녹아 있다. 그럼에도 그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우리 모두에게 읊조린다.

글 이준섭 문화칼럼니스트



정신없이 들어가는 교도소의 사계절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전국이 사계절을 맞이하고 떠나보낼 때, 교도소도 똑같이 현 계절을 보내고 새 절기를 들인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결은 바깥세상과 사뭇 다르다. 죄를 지은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부대껴 살아가며 서로 으르렁거리기 일쑤고, 뭔가 제 뜻대로 안 되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정과 고소를 제출한다. 수용동에 투입된 교정공무원은 1백 명 내외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교정교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때때로 벌어지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때문에 교도소의 사계절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돌아간다. 현직 교정공무원인 김도영 작가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룸 2.58』(이하 룸 2.58)의 목차를 봄·여름·가을·겨울 등 네 갈래로 나눴다. 교도소의 사계절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독자들을 가상의 교도소 복도로 안내한 그는 교도소 특유의 가라앉은 분위기와 묘한 한기, 여느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갖가지 사건들을 정밀화 그리듯 세세하게 묘사한다. 교정공무원으로서의 감정 변화와 이 일을 통해 느끼는 온갖 상념도 사건을 따라 이리저리 굽이친다. 언제나 만실(滿室)인 수용동을 순찰하고 거친 수용자들을 맞닥뜨릴 때는 '인간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하는 자문에 빠졌다가도 출소 후 인생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수용자들을 바라보며 새삼 교정교화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 아마도 김도영 작가는 오늘도 두 생각 사이를 분주히 오가고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교정공무원의 봄, 여름, 가을

김도영 작가가 그리는 교도소의 봄은 만물이 소생한다는 그 시기와 달리 삭막하다. 수용자의 방을 검사하며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벌인다. 24시간 근무의 피곤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수용자들을 지켜보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격언에 물음표를 붙이기도 한다. 수용자들이 무언가를 요청할 때 울리는 알람과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울리는 비상벨은 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교도소 생활의 껍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고 있을지도 모를 독자를 위해 그는 소리 내어 외친다. "남아, 부디 이 문턱을 건너지 마오!" 30℃ 넘는 열기와 온갖 냄새가 뒤엉키는 교도소의 여름은 읽는 것만으로도 폭폭 찌는 기분이다. 백화점에서 친절함 미소를 잃지 않는 직원을 통해 감정 노동자로서의 교정공무원의 노고를 떠올리고, 여름 특집 기사에 실을 교도소 괴담을 들려달라는 한 기자의 요청에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라는 답변을 차마 내뱉지 못하고 꿀꺽 삼킨다. 가을만큼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기 좋은 계절이 또 있을까. 김도영 작가도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사색에 잠긴다. 그리고 그 끝에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오히려 드라마와 영화로 인해 휘어지고 뒤틀린 교정공무원의 '진짜 모습'을 글로 써서 내보이고 이를 통해 교도소의 인력난, 과밀 수용 문제 등에 대한 세상의 관심과 변화를 이끌겠다고 결심한다. 덕분에 김도영 작가는 책을 낼 수 있었고 우리는 『룸 2.58』을 읽을 수 있었으니, 가을은 나름대로 우리 모두에게 큰일을 한 셈이다.

추운 겨울 속에서 새로운 봄을 꿈꾸다

『룸 2.58』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제4장 '교도소의 겨울'이다. 지난 계절과 별다른 것 없는 나날이지만, 그럼에도 김도영 작가는 인간성에 대한 믿음과 직업적 소명의식을 서서히 회복한다. 한 강연에서 호기심 가득한, 그래서 때때로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갖가지 질문들을 지나 교정공무원 선배의 자녀가 건넨 한마디 '교도관 일 많이 힘들죠?'에 큰 위로를 받고, 가족과의 내일을 그리는 수용자들의 다짐과 노력을 발판 삼아 교정교화의 길로 한 발 더 나아간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듯, 김도영 작가도 가장 근무하기 힘든 겨울에 내일의 따뜻한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을 살아간다. 그는 교정공무원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는 데에도 지면을 아끼지 않는다. 많은 교정공무원이 인력난, 수용자로 인한 봉변 등으로 인해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세상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아울러 전국의 교정공무원 선후배들과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와중에도 끝까지 책을 놓지 않은 독자들에게 아래의 마지막 문장으로 뜨거운 진심을 전한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전국 만 칠천여 명의 교도관들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그리고 제 청원의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감옥의 설치와 근대 행형의 전개(상)

김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전 안동교도소장

1. 서
2. 근대적 대구 감옥의 태동
3. 근대적 대구 감옥 건축과 확장
4. 직원
5. 수용자
6. 수용자 처우
7.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대구 감옥
8. 결어

1.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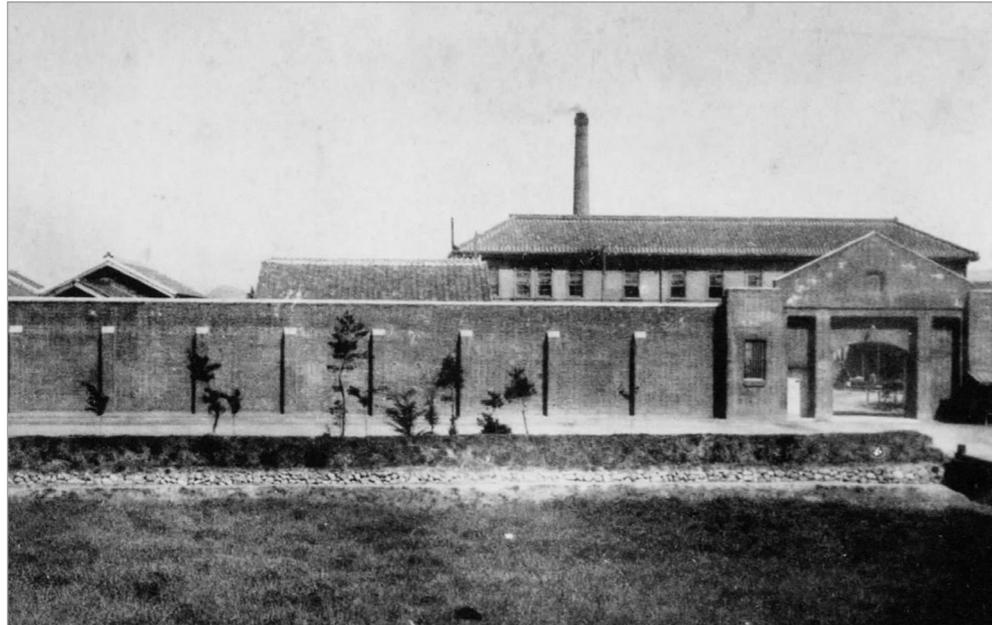
1894년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경찰에서 치안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면서 대구 경찰서 내 대구 감옥서에서 행형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1907년 감옥 사무가 법부(法部)로 이관되었고 1908년 대구 감옥이 전국 8개 본감의 하나로 설치되면서 근대적 감옥 사무가 시작되었다. 신관제에 따라 전국에 8개 감옥을 설치할 당시에는 비교적 감옥으로서 구조와 설비를 갖춘 곳은 현재의 서대문 역사관의 경성감옥(京城監獄)뿐이었고 나머지는 경찰 부속의 매우 불완전한 온돌식 감방이 두세 곳 정도 있었을 뿐으로 직원의 근무 장소도 없었다. 따라서 감옥의 개청에 앞서 사무실, 감방, 취사장, 목욕탕 등과 같은 설비를 갖추는 게 급선무였으므로 법부는 최우선적으로 그 시행에 착수하였다. 그 후 대구와 평양의 두 감옥을 신축 기공하여 통감부 시대 말기인 1910년 4월에 준공하였다.

1910년 10월 1일 한일 합병에 의해 통감부 감옥의 건물과 일체의 사무를 총독부 감옥이 인계받았다. 당시 재감자는 형사피고인 52명, 수형자 707명 등 총 759명이었다. 1921년 3월 25일 태형이 폐지되면서 감옥 확장 계획에 따라 김천과 안동에 분감을 신설하면서 김천은 같은 해 7월 15일, 안동은 7월 18일에 개청식을 거행하였다. 1923년 5월 5일 부령 제72호로 감옥의 명칭 변경이 되어 대구 감옥을 대구형무소로 개칭하고 분감은 지소로 개칭하였다. 1924년 4월 15일 김천형무지소는 김천소년형무소로 승격하여 대구형무소 관할에서 분리되었다.

1910년 4월 수용을 개시한 대구 감옥의 건축물은 1971년 화원으로 이전할 때까지 60여년간 대구는 물론 경상지역 구금시설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대구 감옥(형무소)에서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르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 우리나라 구금시설이 세계적으로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범죄자가 아닌 독립운동가 등 무고한 사람을 구금하고 처벌한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으로 대구에서의 구금의 기록은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대구 감옥의 근대식 감옥 건축의 도면을 통해 초기 감옥의 기본 요소와 증축의 기록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오늘날 교도소 건축에 참고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

대구형무소



2. 근대적 대구 감옥의 태동

가. 대구 감옥 개청

1907년 12월 13일 「감옥관제」(칙령 제52호)를 선포하여 감옥을 법부(法部)대신의 관할에 소속하고 형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감옥은 종래 내부(內部)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관제에 의해 법부(法部)대신의 관할로 함과 동시에 공소원 검사장의 감독하에 두었다. 감옥의 위치는 경성, 공주, 함흥, 평양, 해주, 대구, 진주, 광주 등 8곳으로 정하고 대구공소원 검사장이 대구, 진주, 광주의 감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1908년 7월 13일 「감옥사무 개시기에 관한 건」(법부령 제10호)에 의해, 같은 해 7월 16일부터 대구 감옥의 사무가 개시되었다. 새로운 관제에 따라 직원을 새로이 채용하면서 특히 전옥 이하 판임 이상의 직원 대부분을 일본인 감옥관(監獄官)으로 채용하는 한편 종래의 옥사(獄舍)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대하여 긴급 공사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경찰로부터 사무를 인계받아 집무를 개시하였다. 당시 대구 감옥 전옥은 토야마카메지로(富山要次郎)가 임용되었다.

대구소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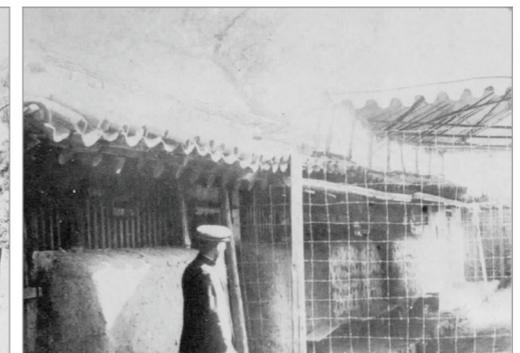


1908년 대구 감옥 개청 당시의 위치는 경북도청 부근이었다고 하며, 1910년 4월 17일 대구 중구 삼덕동에 근대식 건축으로 완공되어 이전하기 전까지는 재래식 건물을 구급 시설로 사용하였다. 1908년 대구 감옥 사무를 개시할 당시 경찰서로부터 인계받은 건물은 청사로 한옥 1동 3실(4.5평), 감방 2동 8실(약 24평)이었고, 재감자는 피고인 85명과 수형자 89명 등 174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사무실은 대구경무소에서 인계받은 시설로 전면이 전옥실이고, 전면 왼쪽이 감정(사환)실이다. 취사장도 대구경무소에서 인계받은 것으로 9.99평의 좁은 면적으로 취사 작업은 주로 밖에서 이루어졌다. 의무실은 오른쪽이 사무실, 가운데가 조제실, 오른쪽 끝이 진찰실이다.

대구 감옥 사무실



대구 감옥 감방



나. 대구 감옥 수용 현황

1908년 7월 감옥 설치 후 각 지방의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기결수를 모두 집금하였고, 당시 대구 감옥의 감방은 모두 3개로 총면적은 15평밖에 되지 않았지만, 재감자 150명을 수용하였다. 방 내에 줄을 가로로 매달아 거기에 양다리를 걸어 상반신만을 마루 위에 가로로 누워 자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¹⁾ 재판과 경찰의 정비로 인해 각 지방 감옥의 재감자가 갑자기 증가하여 감옥 개청 후 3~4개월이 지난 1908년 10월 말에는 재감자는 2천 명을 넘었으며 대구 감옥 수감자 수는 경성감옥 다음으로 많은 251명이 구금되어 있었다.

1908년 10월 말 대구 감옥의 죄명별 기결과 미결 인원 현황²⁾은 다음과 같다.

죄명	내란	공문서위조	관명사칭	증권위조	기물훼손
기결	12명	1명	1명	2명	4명
미결	1명	-	-	1명	-
계	13명	1명	1명	3명	4명

죄명	분모침해	모살	고살	투구살인	투구상인
기결	2명	4명	-	2명	1명
미결	1명	3명	2명	6명	3명
계	3명	7명	2명	8명	4명

죄명	검과	강도	절도	준절도	약인
기결	6명	77명	24명	18명	2명
미결	-	55명	1명	7명	2명
계	6명	132명	25명	25명	4명

죄명	도후분장	아편밀흡	방화	폭동	강간미수
기결	-	1명	1명	1명	1명
미결	1명	-	2명	6명	-
계	1명	1명	3명	7명	1명

1 中橋政吉, 朝鮮舊時의刑政, 治刑協會, 1936년 12월 20일, 173쪽.
2 中橋政吉, 전계서, 165-171쪽.

다. 재감자 처우

재감자에게 과역(科役)을 형벌의 집행 요건으로 한 것은 1895년 4월 「징역처단례」가 제정된 후 일반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여 옥내에서 정역에 취업하게 하고 국사범에 대해서는 주로 유형에 처하거나 징역을 부과되 예외로 정역을 면하게 하였다. 그리고 경무청 관제 중에 「재감인의 작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것을 보더라도 감옥의 작업은 점차 확대 시행되었다. 1898년 「감옥규칙」³⁾을 개정하면서 작업의 부과, 급여 공전의 산정, 면역일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1905년 「형법대전」 제정에 따라 역형은 역형(役刑)과 금옥형(禁獄刑)의 2종류로 나누고 금옥형에는 정역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장 등 취업에 필요한 설비가 준비되지 않아 작업을 부과하지 못하였고 청소, 취사와 같이 감옥의 잡일에 사역하는 것을 작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역하는 사람에게 공전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식 대신으로 가마솥 밑에 붙은 밥을 끓여 공급하였다. 1908년 신감옥관제가 실시된 후에는 각 감옥에 감옥의(監獄醫)를 배치하여 보건 의료를 담당하였으며 점차 개선에 이르렀다.

대구 감옥 의무실



대구 감옥 취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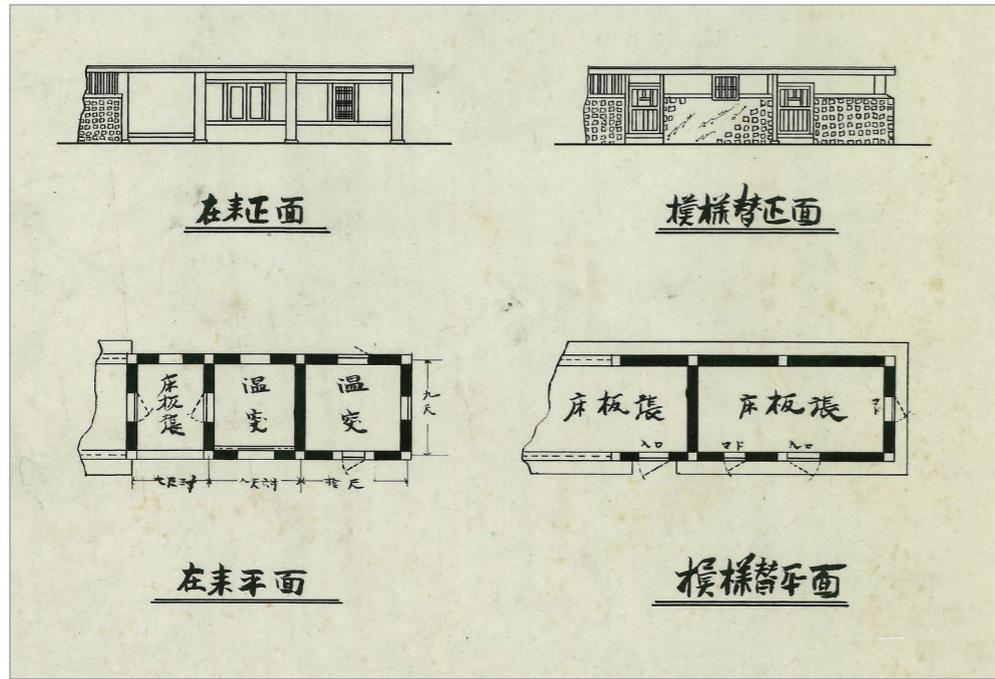
1908년 「신감옥관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사형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교형의 집행 방법이 가지각색이었으며 대구 감옥에서는 통나무 3개를 세 갈래로 나누어 중앙 상부에 줄을 매달아 사형을 집행하였다.⁴⁾

3 1894년 11월 5일 제정.
4 中橋政吉, 전계서, 199쪽

라. 근대식 대구 감옥의 건축과 삼덕동으로의 이전

1909년 11월 1일 사법권 위임에 따라 통감부 소속의 대구 감옥은 구 한국 정부 및 이사청 감옥으로부터 인계받은 건물은 대구경찰서로부터 인계받은 건물 외에 신축한 바로크 건축 양식의 감방 1동 3실과 구 군아(郡衙) 내 한옥 감방 2동 4실이였다.

대구 감옥서 재래도면



재감자는 구 한국 감옥으로부터 형사피고인 90명과 수형자 510명을, 이사청 감옥으로부터는 수형자 7명 등 계 607명을 인계받았지만, 감방이 협소하여 수용이 곤란하였으며 일부 수형자를 경성감옥으로 이송하는 한편 급히 천막을 치고 철조망을 둘러 여름철 수용장소로 사용하거나 공장으로 이용하면서 작업을 개시하였으나 재감자는 연일 급증하는 추세였으므로 1909년 9월 2일 공사에 착공하였다. 구 한국 정부가 설계한 신감옥 건축은 1910년 2월 15일 구내 면적 3,099.458평, 구외 면적 892.92평이었고 건물은 사무실 96평, 감방 312.5평, 부속건물 315.5평 등 합계 734평으로 준공을 맞이하였으며 같은 해 4월 17일 이전하였다.

대구형무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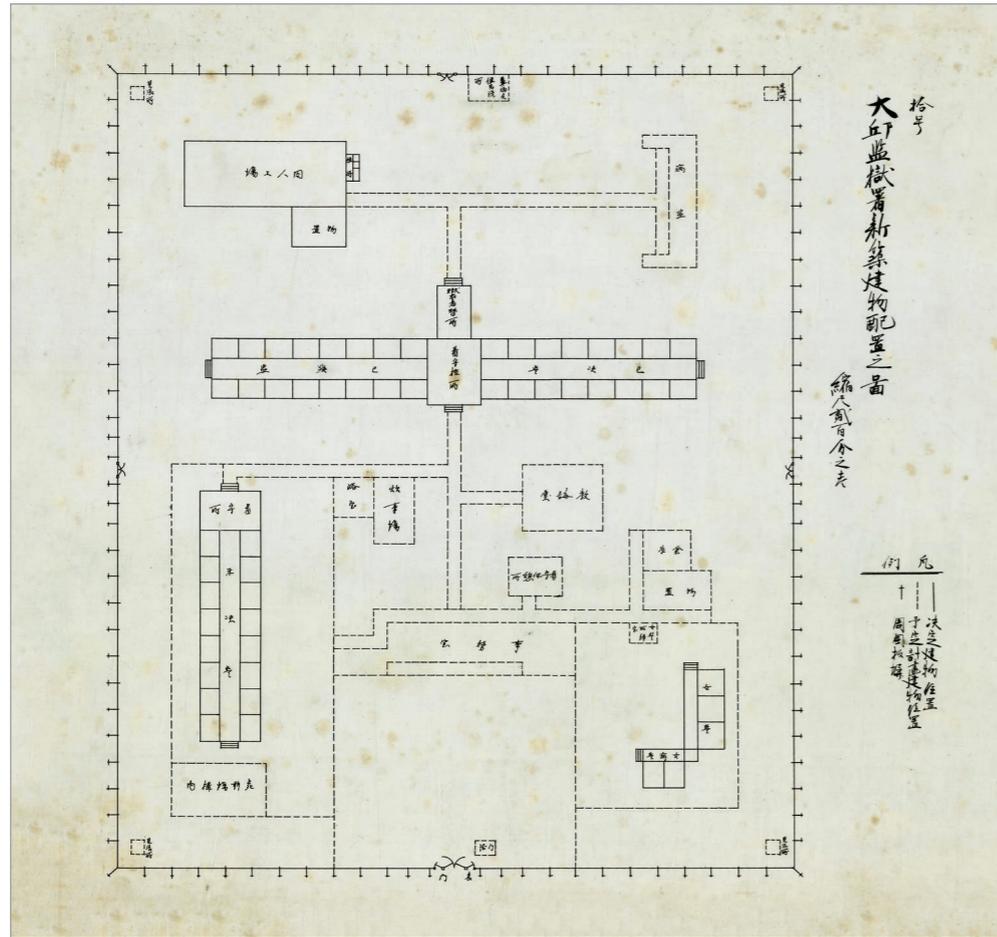


3. 근대적 대구 감옥 건축

가. 서

1909년 11월 1일 사법권 위임에 따라 통감부 소속의 대구 감옥은 구 한국 감옥으로부터 형사피고인 90명과 수형자 510명을 이사청 감옥으로부터는 수형자 7명 등 총 607명을 인계받았지만, 감방이 협소하여 수용이 곤란하였으며 일부 수형자를 경성감옥으로 이송하였다. 한편 유희부지에 급히 천막을 치고 철조망을 둘러 수용 장소로 사용하거나 공장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재감자는 연일 급증하는 추세였으므로 1909년 9월 2일 삼덕동으로의 이전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대한제국 정부가 설계한 신감옥 건축은 1910년 2월 15일 구내 면적 3,099.458평, 구외 면적 892.92평이었고 건물은 사무실 96평, 감방 312.5평, 부속 건물 315.5평 등 합계 734평으로 준공되었으며 1910년 4월 17일 이전하였다. 1905년 「형법대전」의 제정으로 징역형이 도입됨에 따라 시간제 형벌의 집행에 필요한 의식주를 위한 설비를 갖추었고, 작업을 위한 공장동과 교화 등을 위한 교회당이 배치되었다.

대구 감옥서 신축 건물 배치도



나. 근대식 감옥 신축과 증개축

근대식 대구 감옥은 청사 1동, 미결감 1동, 여감 및 여공장 1동, 기결감 1동, 병감 1동, 공장 1동, 사형장 1동, 취사장 및 목욕탕 1동, 교회당 1동, 간수휴게소, 감시대 3곳, 정문 및 후문 3곳, 창고, 주벽, 우물, 화장실, 건물등(建物燈) 37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계 도면상 명칭이 '대구 감옥서'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감옥 건축 설계도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감옥 사무가 1907년 내부에서 법부로 이관되기 전인 대한제국 시로 추측된다.

청사를 제외한 모든 건물은 목조 단층 구조였으며 1920년대에 2층 구조의 독거감을 건축하였다. 주벽은 목조 비늘판벽으로 건축되었고 모든 건물이 주벽 내에 위치하였으며 1920년 초에 자체 벽돌 공장에서 생산된 벽돌로 모두 교체하였다. 신축 이후 수용인

원의 계속된 증가로 수용동과 공장동을 증축하면서 1915년 1차 주벽 확장을 통해 공장 1개동을 신축하였다.

건축구조는 오늘날 교도소 건축의 구성요소와 유사하였으며 이후 수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장 및 증·개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대대적인 증·개축은 국가기록원의 도면을 통해 1920년경과 1936년경에 실시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사무소는 목조 2층 건물로 건축되었다. 2층에는 전옥실, 의무 및 교무 사무실, 서무 사무실, 회의실이 위치하였으며 중앙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였다. 1층에는 보안사무실, 용도사무실, 간수장 숙직실, 조사실, 접견실, 물품접수실, 진단실, 응접실, 사환실 등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건물에 이어붙인 화장실에 대변과 소변을 위한 설비가 마련되었다.

기결감은 신축 시 일자형 건물 1동으로 건축되었다. 건물은 좌우 대칭형으로 각각 복도를 중앙에 두고 양쪽에 감방이 배치된 중복도 형태였다. 거실은 모두 혼거실로 총 32개가 한쪽에 16개씩 배치되었다. 한 개 거실 크기는 가로 3.636m, 세로 2.97m였으며 기결감 복도 폭은 2.97m였다. 기결감 중앙에는 직원 근무실이 위치하였고 기결감에서 공장으로 가는 방향에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지붕 위에 작은 지붕을 설치하여 통풍과 환기 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즉 건물과 각 감방에는 공기의 흐름을 위한 통기구를 설치하였으며 공기가 들어오는 작은 구멍을 하단에 설치하였고, 공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은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설계하여 자연환기가 되도록 하였다. 화장실 설비는 각 거실로부터 소변이 토관을 통해 모이도록 하는 소변저장소가 좌우 및 전후 4곳에 마련되어 있었다.

미결감은 1개동이 설치되었고 건물은 좌우 대칭형에 중복도 형태로 거실은 모두 혼거실로 총 16개가 한쪽에 8개씩 배치되었다. 거실 크기는 기결감의 감방과 같았으며 나머지 구조나 설비도 기결감과 유사하였다.

여감에는 3개 거실의 수용동과 2개 거실의 병감, 그리고 욕실 1곳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수용거실과 병감은 두 개의 건물을 'ㄱ'자형으로 이어붙인 구조로 건축되어 두 건물이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였다. 거실은 가로 세로 모두 3.636m인 정사각형 구조였고, 병감은 3.636m×2.727m 규모였으며 욕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물을 데우는 화구(火口)가 설치되었다.

병감은 배치도상 기결감 및 공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 당시 병감은 진료와 치료를 위한 사무실과 병실 그리고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병실이 있었으며 욕실은 2곳으로 일반 병실과 감염병 거실 가까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무실, 약국, 병실 2개, 화장실, 욕실과 감염병 구역에 병실, 화장실, 욕실이 위치하였다. 사무실과 약국

은 가로, 세로 각각 3.636m의 정사각형으로 건축되었고 병실은 6.636m×2.727m 크기였다.

수형자 공장은 1동이 건축되었다. 공장 바닥은 흙을 다진 바닥이었으며 공장 내부에 창고, 화장실이 부설되었다. 공장 내부는 21.816m×9.09m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였고 창고는 7.272m×5.454 크기였다. 화장실에는 대변기 2곳과 긴 형태의 소변기 1개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대변과 소변은 공장 밖 저장소로 배출되도록 하는 설비였다. 공장은 단층 건물이었으나 층고를 높게 하고 환기를 위한 설비가 마련되었다. 그 후 공장은 수용 인원의 증가에 따라 증축을 거듭하였으며 배치도를 통해 증축 현황을 알 수 있다. 1936년에는 공장동이 15개로 증가하였다.

취사장은 판자 주벽으로 둘러싸인 시설 내 중앙 부근에 위치하였으며, 이는 식사의 운반에 편리하도록 고안되었다. 취사장과 목욕탕은 서로 인접하여 건축되었으며 화기 사용으로 인한 굴뚝이 설치되었다. 취사장은 세로 11.817m, 가로 5.454m의 장방형 형태였고, 내부에는 화덕이 7개가 설치되어 밥을 짓고 각종 부식을 조리하였으며 한쪽에 창고가 마련되어 있었다. 인접한 목욕탕은 가로, 세로 모두 5.454m의 정사각형 구조였으며 욕탕과 목욕실,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교회당은 전체 시설의 중앙 부근에 위치하였으며 이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교회행사의 편리를 위한 고려였다. 가로 10.908m, 세로 9.09m의 사각형 형태의 목조 단층 건물이었다. 출입구 맞은편에 1.818m의 연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형장은 「재판소설치법」에 따라 대구에 복심법원(공소원)이 설치됨으로써 대구 감옥 내에 설치되었다. 사형장은 가로 8.18m, 세로 2.727m의 장방형 구조로 공간은 세 칸으로 구분되었다. 중간의 공간에는 계단으로 연결된 지하공간이 있었으며 사형집행 후 교수를 풀어 시신을 다시 지상으로 운반하도록 하는 설비로 되어있다.



대구 감옥은 정문과 주벽, 출입문, 내부 중간 벽들이 모두 목조로 건축되었다. 정문의 판자벽은 파옥을 방지하기 위해 주벽보다 더 많은 판자를 덧대고 튼튼한 나무를 땅을 파고 깊이 묻어 건축하였고, 주위를 둘러싼 판자의 주벽은 땅을 깊이 파고 돌을 깬 후 튼튼한 목재의 기둥을 깊이 묻어 도주를 방지하였다.

간수휴게소는 사무실에 인접한 보안 구역에 설치되었다. 가로 7.272m, 세로 5.454m의 사각형 구조의 단층 건물로 내부에는 간단히 취침을 할 수 있는 휴게장과 난로, 내벽에 부착된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다. 직원 식당은 청사와 취사장 사이에 위치하였다.

그 밖에 수감자가 공장으로 작업을 가면서 수용동에서 입던 수감자복을 작업복으로 갈아입도록 하는 공간이 기결감과 공장 사이에 마련되어 있었다. 가로 7.272m, 세로 4.545m의 장방형구조였으며 세로 쪽 양쪽에 출입문을 두어 공장으로 작업을 나가면서 옷을 갈아입고 반대편 문을 통해 공장으로 나가고 저녁에 방으로 돌아올 때는 그 반대로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도록 하였다. 또한 수용동과 공장 등에 설치된 화장실에 변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변 저장소 및 변기세척장의 설비가 마련되었다. 변을 운반하는 재감자는 관용부로 지정되어 감옥 내 화장실의 변을 모아 정문 반대편 주벽 안에 설치된 변을 버리는 곳으로 운반하여 부으면 변은 주벽 밖에 있는 변저장소로 흘러나갔다. 변저장소에 모인 변은 농장에서 사용하였다. 변을 버린 후 운반용 변기는 세척하여 보관하였고 운반용 변기보관장소가 마련되었다. 감시소는 미결감과 기결감 2곳과 구내 각 모서리 4곳에 설치되었으며, 가로와 세로 모두 1.818m의 정사각형 건물로 직원이 감시를 위해 상시 근무하는 곳이었다.

건물 전등은 두 종류가 설치되었다. 감방 주위에 설치된 건물등은 전등을 제외한 기둥 높이가 2.727m이며 기타 전등은 1.970m로 구분되었다. 신축 당시 우물은 취사장, 여감, 기결감과 공장 사이, 변 처리장 등 4곳에 설치되었다. 취사장 우물은 수용자 식사와 목욕 및 미결수용동에 물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여감 구역에 설치된 우물은 여자수용자동 및 세탁을 위해 사용되었다. 각 우물로부터 주벽 밖으로 토관(土管)을 매설하는 하수 설비가 설치되었다.

다. 대구형무소 확장

1909년 통감부 감옥의 신축 이전 이후 재감자의 증가에 따라 1920년과 1931년에 감옥이 확장되면서 건물 등의 증·개축과 함께 부지를 정리하고 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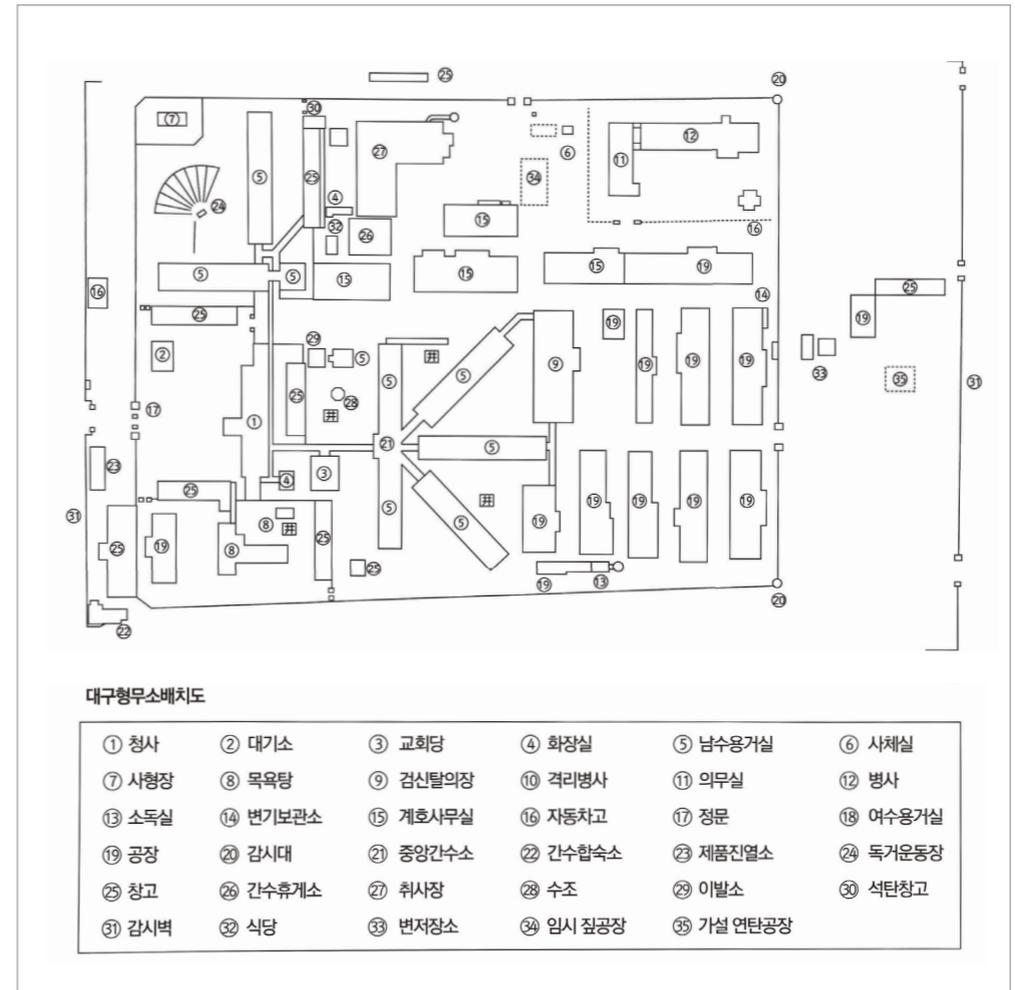
‘입감자 격증으로 대구형무소 증축’이라는 1931년 8월 18일 조선일보 기사에는 ‘대구형무소에서는 사상범을 수용할 독거감방과 그 외 보통 감방을 증축할 계획으로 9월 초

대구형무소 원경



순경에 송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데 공사 인부는 순전히 재감자를 사용하고 건축재료 대금만 7천 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6인실 38실을 더 세울 터인데 현재 184실과 합하면 220실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1931년 6인 혼거수용동이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수년 동안 수용자의 증가와 군수품 제작 확충 등 형무 작업의 진전, 「누진치우령」 및 「행형교육령」의 실시에 따라 지금의 상시 설비의 부족으로 행형상 많은 불편과 곤란을 느끼는 상태였다. 남산정 벽돌 공장 부지는 1937년도에 대봉정(大鳳町) 경운지 내에 있는 민유지와 인접 민유지 등 합계 4,777평에 대한 교환에 착수하여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거쳐 교환계약이 성립하였다. 1937년 12월 16일 인수를 완료하는 동시에 이전 공사에 착수하여 다음 해 3월 말에 공장 1동, 휴게소, 초소, 벽돌요의 이전 공사를 완료했다. 1938년에는 전부 이전을 완료해 오랜 현안이었던 벽돌 공장 이전 문제도 무사히 해결을 보기에 이르렀다. 1935년에는 교환이 잘 안되었던 동문 밖 삼립정 130의 4번지는 376.6평은 현 소유자 이 모씨와 교환교섭이 되어 세무감독국 보관의 덕산정 35의 18외 9필 253평을 교환대지로 하여 소속을 바꾸어 받아 교환계약이 성립하여 1938년 10월 16일 인도를 완료하고 부지 정리에 오랜 숙원을 달성하였다.

대구형무소 배치도



라. 증개축

1) 1차 증·개축(신축 이후부터 1923년까지)

1차 증축 시에는 정문의 반대쪽 부지를 ‘ㄷ’형태로 확장하면서 높은 판자 주벽을 새로 설치하였다. 확장된 길이는 가로로 18.180m에 모서리를 5.454m의 대각선으로 만들었다. 주벽의 세로 길이는 87.264m였다. 1921년 12월에는 여공장, 여감 근무자실, 여감용 창고, 직원용 세면실 및 화장실, 변호인접견실, 영선창고, 보관품 검사소, 계호 사무실, 구치감에 대한 이축 및 개축공사가 실시되었다. 기결감과 공장동을 개축할 때에는 주벽을 확장한 후 가감방과 가공장을 지어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건물을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1922년 3월 작성된 배치도 상에는 청사가 증축되

었으며, 미결감에 감방동 1동이 증축되었고, 기결감은 4개동이 증축되어 총 5개동으로 늘어났다. 여감은 여감방이 증축되었으며, 여직원 근무실과 창고 등이 들어섰다. 병감에는 별도 건물로 약국과 의무실이 증축되었다. 공장동은 총 12개동으로 늘어났다.

2) 2차 증·개축(1923년 이후부터 1936년까지)

1930년에는 구치감에 독거감방을 증축하고 공장 1동을 증축하였다. 이후 의무소를 이전 확장하였다. 그리고 1934년에는 정문 밖 외벽에 이어진 창고를 신축하였다. 1931년 대구형무소 배치도에는 기존의 방사형의 날개 중 병감 및 진료실과 약국이 위치했던 장소에 독거기결감방을 건축하여 방사형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공장동 4개에 대하여 확장공사를 실시하였다. 1936년에는 취사장과 목욕탕을 이축하여 확장공사를 하였다. 취사장의 규모가 커지고 구내 부지면적이 확장되었다.

마. 각 건물의 현황

1) 청사동

1922년 3월 청사동 개축 도면상에는 증·개축이 실시되었으며, 당시 청사동은 해방 이후와 화원으로 이전할 때까지 약 50여 년 동안 사용되었다. 2층 목조건물인 청사 1층에는 현관 출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사무실과 응접실이 위치하였고, 왼쪽으로는 사무실과 숙직실이 위치하였다. 그리고 청사동 옆에 이어진 단층의 부속건물에는 조사실 2실, 접견실이 위치하였다. 청사동 2층에는 오른쪽에 전옥실과 의무 및 교무 사무실이 위치하였고, 왼쪽에는 응접실과 회의실이 위치하였다. 청사에서 안쪽으로 제2과 사무실이 증축되었으며 간수휴게실이 나란히 위치하였다. 제2과 사무실은 가로 9.090m, 세로 7.272m의 크기의 단층 목조건물이었다.

대구형무소 청사



대구형무소 청사(1959년)



2) 구치감 이축

1921년 11월에 구치감 이축 공사가 시행되었다. 이축 전에는 직원 근무실이 미결감과 같은 건물 맨 끝 쪽에 위치하였으나 이축하면서 직원 근무실을 별도로 분리하여 구치감 복도가 잘 보이도록 하였다.

3) 기결감

1920년 3월 배치도를 보면 신축 시 기결감과 수직으로 감방 1개동이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증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 배치도상에는 방사형으로 신축 감방을 건축하고, 감방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신축 예정 감방은 설계도상에 나타나 있다. 1920년 3월 신축된 수용동은 중앙간수소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배치된 수용동 사이에 비스듬히 방사형으로 배치되었으며 가로 36.360m, 세로 8.181m의 규모였다. 복도를 중심으로

대구형무소 수용동



로 좌우 양쪽으로 혼거실 10개 나란히 배치되었으며 총 20개 거실이 들어섰다. 거실의 크기는 기존 감방동 거실과 같은 크기였다. 1922년 3월 증축된 감방동은 기존 감방동과 크기와 규모, 거실 수 등이 모두 같은 구조였다.

각 거실에는 공기의 자연적인 흐름을 통해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천정 공기구와 감방 아래 공기구멍이 설치되었고, 직원과의 대화를 위해 신호기가 복도 쪽으로 설치되었으며, 거실 창에는 방충망이 부착되었다. 거실 문은 시찰이 용이하도록 위쪽과 중간에 큰 창을 설치하였고 아래에는 배식구를 설치하였다.

1920년대 이후 감방이 지속적으로 증축되었으며, 1931년 대구형무소 독거감방이 신축되었다. 한쪽에 독거실 18개의 중복도 방식으로 총 36개 독거실이 있었으며, 입구 쪽에는 수용자의 물건을 두는 공간이 2실이 마련되었다.

그 후 2층 독거감방이 신축되면서 모두 독거방으로 건축되었으며 1층에는 중앙복도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독거실 16개와 다른 한쪽에는 독거실 15개, 격리실 2개, 창고 1개가 건축되었다. 2층에는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독거실 17개가 만들어졌으며 복도에는 1층과 2층이 연결된 4곳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독거감방 안쪽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었다. 독거실의 크기는 가로 1.818m, 세로 2.727m의 규모였으며 독거감방에는 위생급수 설비 공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전등은 독거방과 2개의 사이 벽을 뚫어 설치하였다.



4) 여감

대구 감옥 여감 기타 공사 배치도 상에는 여감이 증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여자 수감자의 증가로 인해 여감 증축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면상 기결감의 배치 등으로 보아 1920년대 이전에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 1920년 재래 감방에 연결하여 가로 5.454m, 세로 10.908m의 목조 단층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이곳에는 혼거실 3개가 마련되어 여감의 거실은 총 8개가 되었다.

1920년 11월 대구 감옥 여감 직원 근무소 기타 이·개축 설계도에는 여감 사무실이 증축되었다. 가로 3.636m, 세로 4.545m 크기로 창고 2개와 접견실 및 조사실 등이 위치한 목조 단층 건축물이었다. 1921년 12월에는 여감 구역 내에 제2공장이 증축되었다. 제2공장은 가로 9.090m, 세로 7.272m의 크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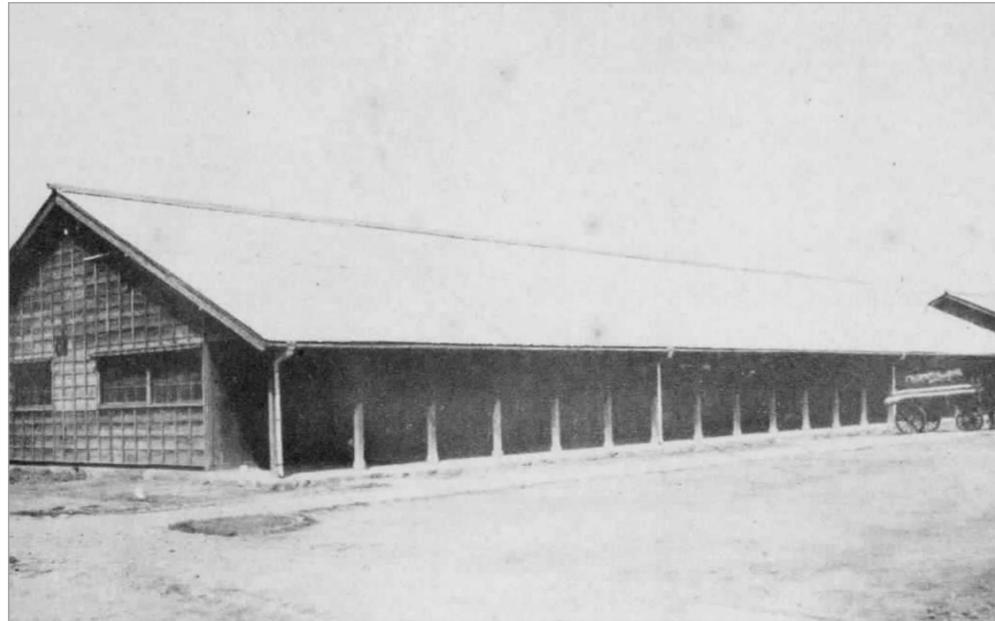
5) 병동 및 진료소

1920년대 이전 여감 증축 시 진료실이 이축되었다. 이축된 건물은 2동이 연결된 구조로 한동에는 의무실이, 다른 동에는 진료실과 대기실이 위치하였고 모두 가로 3.636m, 세로 9.090m의 크기로 진료를 위한 공간으로 수용동과 병동 사이에 건축되었다. 이는 병동을 이전하기 이전에 건축한 것으로 수감자의 증가에 따른 진료 공간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기존 병동 자리에 수용동을 증축하면서 환자 등을 수용하기 위해 1920년대에 병감을 이전하였다. 새롭게 건축된 병감은 ‘ㄷ’구조로 환자에 대한 진료 구역과 환자를 수용하는 병동 및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구역을 구분하는 등 매우 정교한 건물로 수용관리와 감염병에 대비하는 뛰어난 조닝 계획 하에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한쪽 날개에는 대기실, 진료실, 수술실, 실험실, 약국, 의무실이 배치되었다. 건물의 중앙에는 휴업하는 수용자 거실과 가벼운 증세의 환자를 수용하는 경병감 2개, 중환자를 수용하는 중병감 1개를 배치하였다. 건물의 다른 한쪽 날개에는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구역으로 설계되었으며 혼거실 2개와 독거실 2개 그리고 감염병 환자용 욕실이 위치하였다. 건물의 중앙과 감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구역과의 사이에 일반 환자를 위한 목욕탕과 직원 근무실, 간호부실이 위치하였으며 감염병 환자 수용 구역에는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 분리를 철저히 하였다.

6) 공장동

신축 이후 공장동은 지속적으로 증축되었다. ‘대구 감옥 주위 판자벽 증축 기타 이축 공사 배치도(1913년)’상에는 공장동이 2동이 있었으며 추가로 1동을 증축하고, 주벽을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증축된 공장의 면적은 가로 12.726m에서 세로 21.816m로

대구형무소 공장



증축하여 총 34.542m로 확장되었다. 1921년 12월 제12공장이 증축되었으며 공장의 규모는 가로 13.635m, 세로 7.272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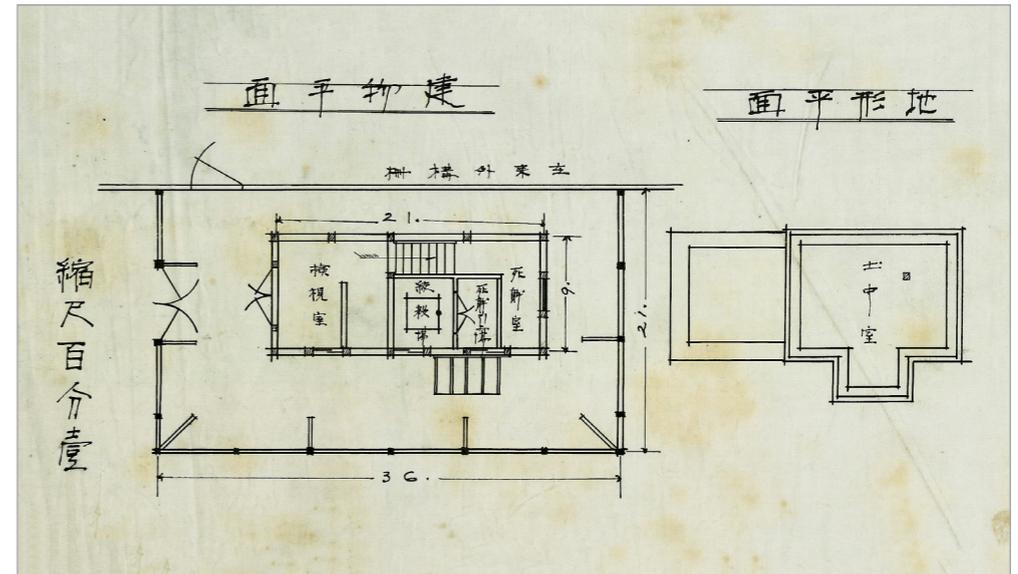
7) 취사장

수용 인원의 증가에 따라 1922년 3월경에 취사장과 목욕탕에 대한 증축 및 교체공사가 실시되었다. 조리를 할 수 있는 화덕은 기존 9개에서 13개로 늘었으며, 취사장을 확장하면서 목욕탕을 이축하였다. 목욕탕은 가로 9.09m, 세로 5.454m 크기로 내부에는 욕탕, 씻는 곳, 욕장, 탈의실 등이 있었다. 1937년 취사장과 목욕탕이 이전·증축되었다. 취사장의 규모가 확장되고 화덕 13개로 늘어났다. 목욕탕의 크기는 가로 9.09m, 세로 19.998m였으며 공동으로 목욕하는 공간(가로 9.09m, 세로 10.908m)에는 욕조 2개가 설치되었고, 개인목욕탕(가로 9.09m, 세로 4.545m)을 설치하였으며 개별욕조 6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소독실과 건조실이 설치되었고 취사장 인근에 수조와 굴뚝이 설치되었으며 굴뚝의 높이는 19.089m였다.

8) 사형장

사형장은 1910년 근대식 감옥 건축 시 설치되었으며, 1921년 대구 감옥을 확장하면서 사형장을 개축하였다. 사형장은 구치감과 인접한 주벽 쪽으로 판자벽으로 둘러싼 구

대구 감옥 사형장 신축 설계도(1921년)



역(가로 10.908m, 세로 6.363m) 내에 사형장 건물을 신축하였다. 사형장 건물은 가로 6.363m, 세로 2.727m의 크기로 검시실, 교살장, 사체인양장, 사체보관실 등 4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졌다.

9) 기타

1919년 11월 대구 감옥은 정문을 벽돌조로 신축하였다. 정문은 차량 출입문과 사람 출입문을 별도로 구분하였으며 직원 근무자실이 위치하여 출입자와 차량을 통제하였다. 각 거실의 출입문과 창문의 모양과 크기를 달리하였다. 출입문은 병감 입구와 기결감과 미결감 출입문을 달리하고 환기와 벌레를 방지하기 위한 방충망이 설치되었다. 창문은 기결미결창문, 여감창문, 병감창문, 여병감창문의 형태와 크기를 각각 달리하였으며 방충망이 설치되었다.

1920년대 초 무렵 대구 감옥 청사 부속 화장실을 이전하여 개축하였다. 화장실은 가로 5.454m, 세로 4.545m의 장방형 구조였으며 내부에 구획을 만들어 대변기 2개와 소변기 2곳 및 세면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다른 공간에는 대변기 2개와 소변기 3개 및 세면대를 설치하였다.

정문과는 반대쪽에 위치했던 변저장소와 변기세척장은 지속적인 확장에 따라 신축 당시 자리에서 이전하여 설치되었다. 주벽을 기준으로 내부에는 변을 버리는 설비와 변운반 용기를 세척하는 곳이 설치되었고, 주벽 바깥쪽으로 변저장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전체 크기는 가로 6.363m, 세로 4.545m였다. 주벽 내부에서 변을 버리면 퇴출구를 통해 변저장소로 흘러가도록 경사진 구조로 만들어졌다.

감방동과 공장, 병동 등을 연결하는 복도는 지붕이 딸린 목조구조로 폭 1.818m, 지붕을 제외한 높이 2.727m였다.

1934년에 주벽 밖에 건축된 창고는 2층의 벽돌 건물로 가로 29.088, 세로 9.09m 크기였다. 대구 감옥의 주벽은 신축 시 목조로 건축되었으나 자체 벽돌 공장에서 생산한 벽돌로 주벽을 모두 교체하였으며 주벽이 높이는 4.545m였고, 3.636m마다 기둥을 세워 연결하였다.

감시대에 해당하는 초소는 주벽의 네 모퉁이에 설치되었으며, 8각형의 건축물 내부에 사다리를 타고 감시대까지 올라갔다. 감시대까지의 높이는 21.21m였으며 창문이 설치되어 형무소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감시할 수 있었다.

4. 직원

대구 감옥(1923년 5월 5일 대구형무소로 개칭)의 1909년부터 1943년까지의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1909년 67명으로 시작하여 최고 1938년 216명까지 증가하였으나 1943년 178명이 되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은 평균 1:1.46으로 1909년부터 일본인이 계속 많았으나, 1941년과 1942년은 조선인의 비율이 많았다.

일제강점기 대구형무소 직원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⁵⁾

연도	계	전옥	간수장	간수	통역생	여감취체(간수)	교회사	교사	감옥의		약제사	고용원(압정)	작업기사(수)
									보건기사	보건기수			
1909	67	조선인	35	1	1	28	1			1		2	
		일본인	32		3	21						7	
1910	94	조선인	34		1	28	1			2		4	
		일본인	59	1	4	43		2	1		1	5	1
1911	110	조선인	39		1	33	1			2		4	
		일본인	71	1	5	48		2	1	1	1	8	2
1912	126	조선인	46		1	39	1			2		5	
		일본인	80	1	5	54		4	2	1	1	8	2

5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19, 1920, 1922, 1944, 1945 통계연보 소실 또는 미제작)

연도	계	전옥	간수장	간수	통역생	여감취체(간수)	교회사	교사	감옥의		약제사	고용원(압정)	작업기사(수)	
									보건기사	보건기수				
1913	144	조선인	53		1	46	1				2		5	
		일본인	91	1	6	62		4	2	1		1	8	4
1914	148	조선인	54		1	46	1				2		6	
		일본인	94	1	6	63		4	2	1		1	10	4
1915	144	조선인	52		1	45	1				2		5	
		일본인	92	1	6	61		4	2	1		1	10	4
1916	144	조선인	51		1	43	1				3		5	1
		일본인	93	1	6	61		4	2	1		1	10	4
1917	144	조선인	50		1	43	1				3		4	1
		일본인	94	1	6	61		5	2	1		1	11	3
1918	180	조선인	72		1	61	1				3		8	1
		일본인	108	1	7	72		6	3	1		1	11	3
1919		조선인												
		일본인												
1920		조선인												
		일본인												
1921	205	조선인	78		1	65	1				2		11	
		일본인	127	2	8	89		7	3	1		1	9	5
1922		조선인												
		일본인												
1923	188	조선인	66		1	54	1				1		9	
		일본인	122	1	8	85		7	2		2	1	11	5
1924	175	조선인	65		1	58	1						5	
		일본인	110	1	6	78		6	1		2	1	7	8
1925	178	조선인	69		1	60	1				1		6	
		일본인	109	1	6	78		6	2		1	1	7	7
1926	174	조선인	67		1	58					1		6	
		일본인	108	1	6	79		6	2		1	1	7	5
1927	175	조선인	66		1	57	1						7	
		일본인	109	1	6	80		5	2		1	1	7	5

연도	계	전옥	간수장	간수	통역생	여감취체(간수)	교회사	교사	감독의		약제사	고용원(압정)	작업기사(수)
									보건기사	보건기수			
1928	183	조선인	73		60	2	2					8	1
		일본인	110	1	6	81		4	2		1	1	1
1929	182	조선인	68		56	2	2					7	1
		일본인	114	1	6	85		4	2		1	1	1
1930	182	조선인	72		60	2	2					8	
		일본인	110	1	6	83		4	2		1	1	1
1931	186	조선인	76		63	2	2					9	
		일본인	110	1	5	83		4	1		1	1	1
1932	183	조선인	73		63	1	2					7	
		일본인	110	1	6	79		4	2		1	1	1
1933	186	조선인	73		63		2					7	
		일본인	113	1	6	82		4	2		1	1	1
1934	192	조선인	76		66		2					7	
		일본인	116	1	6	86		4	2		1	2	1
1935	202	조선인	79		66		2					9	
		일본인	123	1	6	80		4	4		1	3	1
1936	199	조선인	79		68		2					7	
		일본인	120	1	6	77		4	4		1	3	1
1937	209	조선인	90		76	1	2				1	9	
		일본인	119	1	7	71		5	3	1	1	3	1
1938	216	조선인	96		78	1	3					13	
		일본인	120	1	7	68		5	3	2	1	5	1
1939	203	조선인	96		73	1	3				1	17	
		일본인	107	1	7	66		4	4	1	1	3	17
1940	197	조선인	97		73	1	3				1	18	
		일본인	100	1	6	70		4	3	1	1	1	1

6 통역생은 간수장을 겸임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간부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도	계	전옥	간수장	간수	통역생	여감취체(간수)	교회사	교사	감독의		약제사	고용원(압정)	작업기사(수)
									보건기사	보건기수			
1941	189	조선인	102		1	77	1	3				1	19
		일본인	87	1	7	59		4	3	1	1	1	6
1942	182	조선인	94		1	68	1	2				1	21
		일본인	88	1	6	58		5	3	1	1	1	9
1943	178	조선인	83			62	1	3					17
		일본인	95	1	8	66		4	2	1	1	1	1

직급별로 살펴보면 전옥, 간수장, 통역생⁶⁾ 등 간부로 구분되는 직원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을 보면 1:3.9로 약 4배의 차이를 보였고, 하급 직원인 간수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비율은 1:2.7을 보였다. 대구형무소 소장의 직급은 전옥으로 전옥보가 소장으로 보임된 경우는 없었으며, 역대 소장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간수장 등 정복 간부로서 여러 형무소의 근무경력을 쌓은 후 전옥(보)로 승진한 후, 소규모 형무소의 소장을 거쳐 대구형무소장이 되었다. 대구형무소에서는 일제강점기 기간 중 조선인 간수장 및 통역생(간수장 겸임)은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 근무함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관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겸임제이다. 조선인 통역생이 간수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흔하였고 약제사가 작업기수를, 기수가 간수장을, 교사가 교회사를, 교회사가 교사를, 간수장이 작업기수를, 보건기수가 약제사를 각각 겸임하였다.⁷⁾ 교회사는 일본 불교의 승려를 교회사로 채용하여 주로 황국신민화 교육을 담당케 하였다. 조선총독부가 1936년 발간한 「조선사법대관」에 등재된 20개 형무소(지소 포함)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5명의 일본 승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책자에 등재된 5명의 일본 승려 교회사는 당시 교무계장으로 보임되었다.

조선인이 형무소 직위(급) 중 배제되었는 분야는 전옥(보), 교회사, 교사⁸⁾, 작업기사 등 4가지였으며 대구형무소는 그 외에 약제사, 보건기사 등에서도 조선인 근무 기록이 없었다. 1937년 형무소의 조직을 개편하여 계를 과로 변경하게 되는데, 당시 조선인 간수장의 근무 부서는 서무과와 계호과였다.⁹⁾

7 조선총독부, 조선사법대관, 1936년
 8 1937년 인천소년형무소에서 조선인 교사가 채용된 기록이 유일하다.
 9 1938년, 1939년 조선총독부 직원록.

1939년 3월 31일 현재 대구형무소와 안동지소의 직원 정원 및 현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본소		안동지소		계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전옥	일본인	1	1	-	-	1	1	
간수장	일본인	7	7	2	2	9	9	
	조선인	1	1	-	-	1	1	
감옥통역생	조선인		-	-	-	1	-	
	일본인	1	1	-	-	1	1	
보건기사	일본인	1	1	-	-	1	1	
	조선인		-	-	-		-	
보건기수	조선인	1	1	1	-	2	1	
	일본인		-	-	-		-	
약제사	일본인	1	1	-	-	1	1	
	조선인		-	-	-		-	
의무축탁	조선인		1	-	-	1	1	
	일본인	1	-	-	1	1	1	
교회사	일본인	1	1	1	1	2	2	
	조선인		-	-	-		-	
교사	조선인	1	1	-	-	1	1	
	일본인		-	-	-		-	
교무축탁	일본인	1	2	-	-	1	2	
	조선인		-	-	-		-	
작업기수	조선인	3	3	-	-	3	3	
	일본인		4	-	-		4	
간수	일본인	84	63	22	17	106	80	
	조선인	72	77	20	20	92	97	
간수(여)	조선인	5	5	1	1	6	6	
	일본인	3	3	1	1	4	4	
작업교수	일본인	5	5	2	2	7	7	×는 임시
	조선인		×2	-	-		×2	
고원	조선인	4	2	-	-	4	2	×는 임시
	일본인		×2	-	-		×2	

구분		본소		안동지소		계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운전수	일본인	1	1	-	-	1	-	
	조선인		-	-	-		1	
기관수	조선인	1	-	-	-	1	-	
	일본인		1	-	-		1	
화부	일본인		-	-	-	2	-	
	조선인		1	-	-		1	
감정	조선인	12	-	5	1	17	-	×는 임시
	일본인		9		5×3		14×3	
전화교환수	일본인	2	1	-	-	2	1	
	조선인		1	-	-		1	
급사	조선인	2	-	-	-	2	-	
	일본인		2	-	-		2	
계		213	192 ×4 ○4	55	50 ×3	268	242 ×7 ○4	×는 임시 ○는 작업지도 축탁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분노조절프로그램이 규율위반 수용자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하)

- 교류분석이론을 근거하여 -

한도완

부산구치소 보안과 교위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제3장 TA 분노조절프로그램

제4장 연구방법

제5장 연구결과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제언

제4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에서 일탈행위로 인하여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분노조절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사실험설계모형(Quasi-Experimental Designs)을 활용하였다. 실험집단에는 교류분석을 중심으로 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에게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림1> 연구설계

	사전		사후
실험집단	O ₁	X	O ₂
통제집단	O ₃		O ₄

X: 실험처치(TA에 근거한 분노조절프로그램)

O₁: 실험집단 사전검사 O₂: 실험집단 사후검사

O₃: 통제집단 사전검사 O₄: 통제집단 사후검사

제2절 연구가설

본 연구는 TA에 근거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이 규율위반수용자의 공격성과 충동성 감소 및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효능감 증진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TA에 근거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은 규율위반 수용자의 공격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 가설 2. TA에 근거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은 규율위반 수용자의 충동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 가설 3. TA에 근거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은 규율위반 수용자의 자기통제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 가설 4. TA에 근거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규율위반 수용자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제3절 연구대상 설정

본 연구의 참여대상은 부산 시내에 위치한 P구치소 내에서 일탈행위로 인하여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이다. 프로그램 실시에 앞서 2021년 3월 경 P구치소 내 심리치료센터에 본 연구의 목적과 성격을 알리고 참여의뢰를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한 16명의 규율위반수용자를 무작위로 8명씩 한 단위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2>와 <표3>에 제시되었다. TA 분노조절프로그램은 2021년 3월 12일~3월 29일까지 주 3회 60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4주간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모두 중도이탈 없이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

제4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 정보를 알아보기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3가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만 나이, 성별, 범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나이는 참여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였으며, 만 나이로 20세부터 29세까지로 구성되었다. 또한 성별은 모든 참여자가 남성이다. 범수의 형태는 초범(1), 재범(2), 3범 이상(3)으로 측정하였다.

<표2> 실험집단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별칭	이름	나이	범수	죄명	형기	규율위반내용
벳돼지	배0진	21	1	특수절도	징역1년2월	허가 없는 물품수수
차은우	최0빈	22	1	사기방조	재판중	수용생활방해등
손흥민	오0준	21	1	사기	징역4년	지시불이행
난다리	김0수	20	2	보복협박	재판중	수용생활방해
환	정0환	24	2	절도	재판중	입실거부, 수용생활방해
용	김0찬	21	1	사기	징역1년6월	직무방해 등
상남자	권0현	21	1	사기	재판중	직무방해
권능	정0능	20	1	사기	재판중	폭행, 수용생활방해



<표3> 통제집단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별칭	이름	나이	범수	죄명	형기	규율위반내용
3919	정0현	29	4	조직폭력	징역3년	직무방해, 상해, 지시불이행
3014	김0석	23	1	사기	재판중	입실거부, 수용생활방해
2256	한0현	20	1	사기	재판중	수용생활방해 등
3525	전0현	23	1	상해	재판중	폭행2회, 직무방해
3928	김0규	26	4	공무집행방해	징역6월	폭행, 입실거부
2392	김0현	24	1	사기	재판중	수용생활방해
3326	김0우	20	3	특수절도	재판중	지시불이행2회, 폭행
2654	김0성	21	2	사기	징역2년6월	지시불이행[9회], 부당금품요구

제5절 연구절차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구치소 내 심리치료팀에서 시간을 달리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 프로그램의 목적과 절차 및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질문지를 이용하여 사전조사를 하였고, 8회기가 끝난 후 같은 질문지를 이용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사전사후 검사에 성실히 응한 16명이 무작위로 8명씩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제5장 연구결과

제1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주요특성 동질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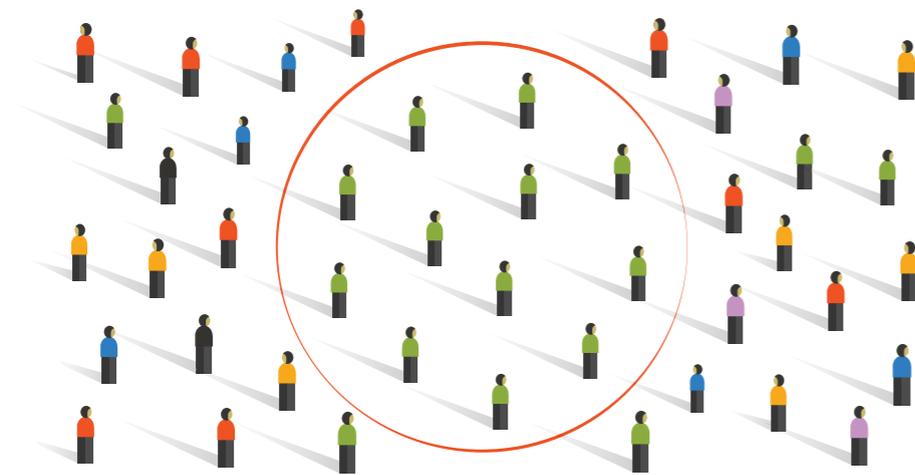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비교

본 연구에 참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의 참여자는 모두 남성으로 연령은 22세(3명, 37.5%), 23세(3명, 37.5%), 24세(1명, 12.5%), 25세(1명, 12.5%)으로 8명으로 구성되었다. 범수의 종류는 초범(4명, 50.0%), 재범(3명, 37.5%), 3범 이상(1명, 12.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제집단의 참여자 역시 모두 남성으로 20세(1명, 12.5%), 22세(1명, 12.5%), 23세(1명, 12.5%), 24세(1명, 12.5%), 25

세(1명, 12.5%), 26세(1명, 12.5%), 27세(1명, 12.5%), 31세(1명, 12.5%)으로 8명으로 구성되었다. 범수의 종류는 실업집단은 초범(4명, 50.0%), 재범(3명, 37.5%), 3범 이상(2명, 12.5%)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은 초범(2명, 25.0%), 재범(4명, 50.0%), 3범 이상(2명, 25.0%)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실험집단(8명) n (%)	통제집단(8명) n (%)	Z	P
연령	20	2(25.0)	2(25.0)	.000	1.000
	21	4(50.0)	1(12.5)		
	22	1(12.5)	-		
	23	-	2(25.0)		
	24	1(12.5)	1(12.5)		
	26	-	1(12.5)		
	29	-	1(12.5)		
범수	초범	6(75.0)	4(50.0)	.000	1.000
	재범	2(25.0)	1(12.5)		
	3범이상	-	3(37.5)		
전체		8(100)	8(100)		



2. 주요변수의 신뢰도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의 적합지를 검증하기 위해 주요변수인 공격성 27문항 및 충동성 23문항과 자기통제력 10문항, 자기효능감 23문항으로 총 83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 공격성의 척도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0.913로 나타나 척도의 문항이 0.9이상의 척도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충동성의 척도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0.898로 측정되었고, 자기통제력의 척도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0.884로 조사되었으며, 자기효능감의 척도 문항구성 및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0.904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의 척도는 주요변수의 문항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가 0.884~0.913로 매우 높은 척도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표5> 주요 변수의 신뢰도 검증

변수	문항수	Cronbach's α
공격성	27	0.913
충동성	23	0.898
자기통제력	10	0.884
자기효능감	23	0.904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비교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표6>과 같다. 공격성 점수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2.49(SD=.72)이며, 통제집단은 2.98(SD=.83)로 나타났다. 사전 공격성은 실험집단의 점수가 통제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U 검정(Mann-Whitney U Test, 이하 U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Z=-1.210, .226, p>0.05$). 충동성 점수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2.33(SD=.54)이며, 통제집단은 2.78(SD=.449)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사전 충동성이 통제집단보다 낮은 경향성을 보였으나 U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Z=-1.788, .074,$

p>0.05). 자기통제력 점수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2.35(SD=.92)이며, 통제 집단은 3.00(SD=.72)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사전 자기통제력이 통제집단보다 낮은 경향성을 보였으나 U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Z=-1.472, .141, p>0.05). 자기효능감 점수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3.47(SD=.59)이며, 통제집단은 3.24(SD=.64)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사전 자기효능감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나 U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Z=-.841, .400, p>0.05). 따라서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의 주요변수 척도에서 U 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p>0.05).

<표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주요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변수	구분	평균 (M)	표준편차(SD)	Mann-Whitney U	Z	P
공격성	실험	2.49	.72	20.50	-1.210	.226
	통제	2.98	.83			
충동성	실험	2.33	.54	15.00	-1.788	.074
	통제	2.78	.449			
자기 통제력	실험	2.35	.92	18.00	-1.472	.141
	통제	3.00	.72			
자기 효능감	실험	3.47	.59	24.0	-.841	.400
	통제	3.24	.64			

제2절 TA 분노조절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에서 집단 내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Wilcoxon 순위검증을 실시하였다.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내 사전-사후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내 사전-사후 평균 비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내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7>.

우선, 실험집단의 공격성은 사전 평균 점수는 2.49(±.72)이며, 사후 평균 점수는 1.91(±.40)로 나타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보다 프로그램 실시 후 공격성의 점수가 -.57(±.67)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의 사전 평균 점수는 2.33(±.54)이고, 사후 평균 점수는 1.87(±.39)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보다 실시 후 충동성의 점수가 -.46(±.57)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의 사전 점수는 2.35(±.92)이며, 사후 평균 점수는 1.88(±.63)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보다 실시 후 자기통제력의 점수가 -.48(±1.16)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사전 점수는 3.47(±.59)이며, 사후 평균 점수는 4.26(±.53)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보다 실시 후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79(±.40)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집단의 경우 분노조절프로그램 실시 후 공격성과 충동성, 자기통제력은 낮아졌으며, 자기효능감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통제집단의 공격성은 사전에 2.98(±.83)이고 사후에 3.08(±.72)로 .10(±.50) 증가하였으며, 충동성은 사전에 2.78(±.45)이고 사후에 2.67(±.36)로 -.10(±.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은 사전에 3.00(±.72)이고 사후에 2.96(±.65)으로 -.04(±.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사전에 3.24(±.64)이고 사후에 3.30(±.42)으로 .05(±.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볼 때,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에는 긍정적 변화를 도출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사전-사후 평균 변화

변수	실험집단(n=8)			통제집단(n=8)		
	사전	사후	사후-사전	사전	사후	사후-사전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공격성	2.49 (.72)	1.91 (.40)	-.57 (.67)	2.98 (.83)	3.08 (.72)	.10 (.50)
충동성	2.33 (.54)	1.87 (.39)	-.46 (.57)	2.78 (.45)	2.67 (.36)	-.10 (.32)
자기 통제력	2.35 (.92)	1.88 (.63)	-.48 (1.16)	3.00 (.72)	2.96 (.65)	-.04 (.60)
자기 효능감	3.47 (.59)	4.26 (.53)	.79 (.40)	3.24 (.64)	3.30 (.42)	.05 (.30)

2. 주요변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사전-사후 차이 검증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보고 Wilcoxon 순위 검정을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통제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8>.

먼저 공격성은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사례는 7명이며, 평균 순위는 4.71, 순위 합계는 33.00이다. 사후 공격성의 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은 사례는 실제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인 사례로 8명 중 7명이 나타났으며, 양수순위는 평균 순위 3.00, 순위 합계는 3.00으로 나타나 높은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 분노조절프로그램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공격성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2.10, p<.05$). 한편, 통제집단에서는 공격성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은 사례는 5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순위는 3.80, 순위의 합은 19.00으로 나타났다. 또한 3명의 사례는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순위는 5.67 순위 합계는 17.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Z=-.140, p>.05$).



충동성은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사례는 6명이며, 평균 순위는 4.50, 순위 합계는 27.00이다. 사후 충동성의 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은 사례는 실제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인 사례로 8명 중 6명이 나타났으며, 양수순위는 평균 순위 1.00, 순위 합계는 1.00으로 나타나 점수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분노조절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충동성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2.20, p<.05$). 한편, 통제집단에서는 충동성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높은 사례는 3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순위는 5.00, 순위의 합은 15.00으로 나타났다. 또한 5명의 사례는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순위는 4.20 순위 합계는 21.00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Z=-.421, p>.05$).

자기통제력은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사례는 5명이며, 평균 순위는 5.00, 순위 합계는 25.00이다. 사후 자기통제력의 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높은 사례는 실제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인 사례로 8명 중 3명이 나타났으며, 평균 순위 3.67, 순위 합계는 11.00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자기통제력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Z=-.980, p>.05$). 한편, 통제집단에서는 자기통제력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높은 사례는 2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순위는 7.00, 순위의 합은 14.00으로 나타났다. 또한 6명의 사례는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순위는 3.67 순위 합계는 22.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Z=-.561, p>.05$).

자기효능감은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게 나타난 사례는 없었으며, 평균 순위는 .00, 순위 합계는 .00이다. 사후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높은 사례는 실제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인 사례로 8명 중 8명이 나타났으며, 평균 순위 4.50, 순위 합계는 36.00으로 높은 점수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자기효능감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2.52, p<.05$). 한편, 통제집단에서는 자기통제력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높은 사례는 5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순위는 4.40, 순위 합계는 22.00으로 나타났다. 또한 3명의 사례는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평균 순위는 4.67 순위 합계는 14.00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Z=-.574, p>.0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TA 분노조절프로그램을 한 실험집단에서는 공격성과 충동성,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으나 자기통제력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8> 주요변수의 집단 내 사전-사후 차이 검증

변수	구분	빈도	평균 순위	순위 합계	Z	P	
공격성	실험집단	음수순위	7a	4.71	33.00	-2.10*	.036
		양수순위	1b	3.00	3.00		
		등률	0c				
		총계	8				
	통제집단	음수순위	5a	3.80	19.00	-.140	.888
		양수순위	3b	5.67	17.00		
		등률	0c				
		총계	8				
충동성	실험집단	음수순위	6a	4.50	27.00	-2.20*	.028
		양수순위	1b	1.00	1.00		
		등률	1c				
		총계	8				
	통제집단	음수순위	5a	4.20	21.00	-.421	.674
		양수순위	3b	5.00	15.00		
		등률	0c				
		총계	8				
자기통제력	실험집단	음수순위	5a	5.00	25.00	-.980	.327
		양수순위	3b	3.67	11.00		
		등률	0c				
		총계	8				
	통제집단	음수순위	6a	3.67	22.00	-.561	.575
		양수순위	2b	7.00	14.00		
		등률	0c				
		총계	8				
자기효능감	실험집단	음수순위	0a	.00	.00	-2.52*	.012
		양수순위	8b	4.50	36.00		
		등률	0c				
		총계	8				
	통제집단	음수순위	3a	4.67	14.00	-.574	.566
		양수순위	5b	4.40	22.00		
		등률	0c				
		총계	8				

a=(사후 < 사전), b=(사후 > 사전), c=(사후 = 사전)

*p<.05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변화량 비교

TA 분노조절프로그램에 참여한 두 집단 간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 변화량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9>.

먼저 공격성의 실험집단의 평균 순위가 11.72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21.28 평균 순위가 증가하여 두 집단의 공격성의 변화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Z=-2.885, p<0.01). 충동성의 실험집단의 평균 순위가 11.03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21.97 평균 순위가 증가하여 두 집단의 충동성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Z=-3.302, p<0.01). 자기통제력은 실험집단의 평균 순위가 11.59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24.41 평균 순위가 증가하여 두 집단의 변화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Z=-2.961, p<0.01). 자기효능감은 실험집단의 평균 순위가 20.63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12.38 평균 순위가 증가하여 두 집단의 변화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Z=-2.489, p<0.05). 위와 같이 TA 분노조절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두 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변화량의 차이에서는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의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사후 점수 변화량 비교

변수	구분(명)	평균 순위	순위 합계	U	Z	P
공격성	실험(8)	11.72	187.50	51.50	-2.885**	.004
	통제(8)	21.28	340.50			
충동성	실험(8)	11.03	176.50	40.50	-3.302**	.001
	통제(8)	21.97	351.50			
자기통제력	실험(8)	11.59	185.50	49.50	-2.961**	.003
	통제(8)	24.41	342.50			
자기효능감	실험(8)	20.63	330.00	62.00	-2.489*	.013
	통제(8)	12.38	198.00			

*p<.05, **p<.01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제언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에서 일탈행위로 인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20대 남자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류분석 분노조절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각각 8명으로 나누고 사전, 사후검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8회기의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살펴본 결과 공격성($Z=-1.210, .226, p>0.05$), 충동성($Z=-1.788, .074, p>0.05$), 자기통제력($Z=-1.472, .141, p>0.05$), 자기효능감($Z=-.841, .400, p>0.05$)으로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에서는 주요변수 유의확률이 통계표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p>0.05$).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내 사전-사후 평균 비교를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공격성 $-.57(\pm.67)$, 충동성 $-.46(\pm.57)$, 자기통제력 $-.48(\pm 1.16)$, 자기효능감 $.79(\pm 40)$, 통제집단 공격성 $.10(\pm.50)$, 충동성 $-.10(\pm.32)$, 자기통제력 $-.04(\pm 60)$, 자기효능감 $.05(\pm 30)$ 로 공격성과 충동성, 자기통제력은 낮아졌으며, 자기효능감은 높아진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내 사전-사후 차이 비교에서는 실험집단의 공격성 $Z=-2.10, p<.05$, 충동성 $Z=-2.20, p<.05$, 자기통제력 $Z=-.980, p>.05$, 자기효능감 $Z=-2.52, p<.05$, 통제집단에서 공격성 $Z=-.140, p>.05$, 충동성 $Z=-.421, p>.05$, 자기통제력 $Z=-.561, p>.05$, 자기효능감 $Z=-.574, p>.05$ 로 공격성과 충동성, 자기통제력은 낮아졌으며, 자기효능감은 높아진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간 사전-사후 평균점수 변화량 비교를 살펴본 결과 공격성은 실험집단 11.72, 통제집단 21.28로 변화량의 차이는 $Z=-2.885, p<0.01$ 이었고, 충동성은 실험집단 11.03, 통제집단 21.97로 변화량의 차이는 $Z=-3.302, p<0.01$ 자기통제력은 실험집단 11.59, 통제집단 24.41로 변화량의 차이는 $Z=-2.961, p<0.01$, 자기효능감은 실험집단 20.63, 통제집단은 12.38로 변화량의 차이는 $Z=-2.489, p<0.05$ 로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제2절 제언

본 연구는 TA 분노조절프로그램이 규율위반수용자의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자 대상으로 분노조절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국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징벌대상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법 개정과 외부 심리관련 전문가 채용이 요구되며 기존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 인력을 보강하여야 한다.

둘째, 징벌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용자에 대한 물리적 징벌위주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처벌 위주의 대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교정시설 내 일탈행동을 감소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심리적 정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징벌의 관점이 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징벌수용자 대상으로 교육적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개입프로그램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교류분석이론뿐만 아니라 여러 심리이론을 절충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자발적 참여 수용자들로 구성되었으나 사전-사후 검사지가 자기보고식 응답으로 기입되어 효과성이 주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과 현재 징벌중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검증 방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김혜령(201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적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12). “어머니와 아동용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규수·류태보(1996). 『교류분석치료』 형설출판사.
- 김남성. 1995. 『교육심리학』, 교육과학사.
- 김다윤(2019). “교류분석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위기청소년의 자아상태와 분노조절에 미치는 효과.”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례(2008). “교류분석(TA)이론에 기초한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183-200.
- 김미례(2015). “교류분석적 관점에서 트라우마 이해하기.” 『교류분석상담연구』 5(1), 23-33.
- 김미례(2017). 『교류분석 상담의 기초2』 아카데미아.
- 김미현·김민호·이영호(2009). “교류분석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자의 자아상태와 생활자세 변화에 미치는 효과.”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6(1), 25-47.
- 김민호·이영아(2011). “교류분석을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태도에 미치는 영향.” 『교류분석상담연구』 1(1), 21-45.
- 김수임·박민지(2020). “성인대상 분노조절 집단 프로그램 분석:2001~2019년 국내 연구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 15(2), 447-465.
- 김숙희(2013). “정서중심 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상호작용 및 분노조절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윤·최서윤·김범수(2007). “자아의식, 스트레스 및 인터넷 사용통제가 성인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IT서비스학회지』 16(1).
- 김유진(2006).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유아의 추론.” 『대한아동복지학회:아동복지연구』 4(2):63-78.
- 김윤주(2011). “교류분석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2013).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규·김종호(2008). “3군 영관장교에 대한 자아상태와 스트로크에 관한 연구 : 교류분석(TA)이론을 중심으로”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5(2): 27-43.
- 김아영(2010). 『학업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학지사.
- 김영희(2005). “교정학과 교육학의 비교.” 『한국교정학회』 5(6):17-30.

- 김유정(2007). “분노조절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진·박경규(2008). “다면평가 피드백 수용도 결정요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지: 경영학연구』 37(4):661-689.
- 김종호(2009). “교류분석(TA)이론의 이고그램(egogram) 척도개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2016). “스트로크를 활용한 진로집단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준(2005). “기독교 상담을 중심으로 한 교류분석훈련 프로그램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3(14): 16-29.
- 김현주(2008).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부모의 분노수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과 일반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민·손정락(2013).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사회복지시설 거주 정신장애인의 분노, 대인관계기술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연구』 21-2.
- 문은주(2011). “고등학생용 분노조절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중등교육연구』 59(2):443-480.
- 민은성(2012). “집단상담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인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교류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택(2001). “분노조절 훈련 프로그램이 교도소 수형자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희(2009). “미술매체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분노억제 청소년의 분노감 감소와 자기표현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호서대학교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혜(1995).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미(2015). “항공서비스관련학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나(2011). “초등학생의 분노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2001). “청소년 학교폭력 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15(2):25-52.
- 박영희(2012). “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자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희(2010).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격성 및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모(2007). “교류분석 부모훈련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화 조절능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구(2017). “교도소 여가활동이 폭력성향의 감소, 사회적 기술함양,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관광학회·관광학연구』 41(5):205-220.
- 박지수(2013). “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활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영(2003). “인지행동적 집단상담이 수행자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이정숙(2013). “국내 탄력성 연구 동향분석: 가정학 계열 학회지와 심리학회지 논문 중심을 중심으로(2000~2013).”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8(2):23-41.
- 배미현(2012). “스트로크 이론을 적용한 고객응대 교육이 순고객추천지수(NPS)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형미·이형실. 2002.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의 자아상태, 인생태도 및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39-51.
- 법무부(2017).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법무부(2020).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법무부(2020). 『교정통계연감』 법무연수원.
- 법무부 교정본부(2012). 『교정의 새로운 비전, 품격 있는 일류교정』 법무부 교정본부.
- 서수균·권석만(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임상』 21(2): 487-501.
- 서수균(2011).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에서 부적응적 인지전략과 대인관계양상의 매개효과.” 『상담 및 심리치료』 23(4):901-919.
- 서혜석(2013). “도구를 활용한 교류분석집단상담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율성, 생활자세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인간이해』 34(2):34-59.
- 서혜석(2014). “해병대 병사의 군생활 적응을 위한 교류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국사이크로드라마학회지』 17(2):123-139.
- 서혜석·이길구(2017). “교류분석을 적용한 개인 상담이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범죄자의 공격성,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 『교류분석상담연구』 9(1):87-103.
- 서윤주(2015). “교류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위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윤주(2016). “교류분석 집단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수나·이영호(2015). “스트로크 중심 TA집단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교류분석상담연구』 5(2):57-77.
- 손선미(2012). “교류분석(TA)이론을 기초한 집단미술치료가 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은·황순택·전미주(2009). “분노수준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213-227.
- 송태호(2003). 『교정교육학』 청문사.
- 송희자(2010). 『교류분석개론』 시그마프레스.
- 신수경·김현정(2013). “상호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교사의 긍정적 스트로크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 미디어 연구』 12(3)
- 신호식·김근화(2004).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학회지』 7(2): 47-58.
- 심응철(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2(2):24-34.
- 안진희(2012). “분노조절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우울성향 집단에 미치는 효과: 우울, 분노, 자아존중감, 자살사고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기숙(2007).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살인범 집단의 공격성과 충동성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재현(1995). 『이코그램 243패턴』 정암서원.
- 우재현(2015). 『(심성개발을 위한)교류분석(TA)프로그램』 정암서원.
- 이경남(2000). “아동의 자기-통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99-120.
- 이경범(2000). “수형자의 MMPI특성과 수행생활형태와의 관계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2013). “반사회적 특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APSD로 측정된 냉담/비정서, 자기에, 충동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자·이호신(2010).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어린이집 교사와 유아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교류분석연구』 1(1):29-49.
- 이선자(2014). “어머니의 스트로크가 유아 또래 간 인기도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2009). “상습규율위반자 교정시설 적응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5:63~93.
- 이은미(2000). “교류분석(TA) 프로그램이 결손가정에서 자란 청년의 자율성 및 인생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2013). “초등학생용 공격성 척도 개발”, 경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아·천성문(2013). “초등학생용 공격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 및 심리치료』 25(3):477-495.
- 이장호·정남운·조성호(2011). 『상담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 이재일(200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성 아동의 귀인양식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명, 김인규(2007). “교류분석을 통해서 본 재가불자들의 자아상태와 스트로크에 관한 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4(1):19-45.
- 이철호·이민규(2007).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교도소 수형자의 분노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사회 및 성격』21(1):35-46.
- 이현수(1992). 『충동성검사』 한국가이던스.
- 유철민(2002). “분노조절 집단상담이 수형자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옥경(2011). “교도소 수형자의 규율위반 행동에 대한 분석: 피해 경험과 절차적 공정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 87:391-424.
- 윤현경(2017). “초,중등학생의 자기 역량에 대한 평가유형과 공격성간의 관계.”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구은(2020). “가족기능이 중학생의 인터넷 게임 장애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병금(2008). “TA 이론에 기초한 고등학생의 자기존중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정(2004).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미(2003). “스트로크기법 중심의 교류분석프로그램 적용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기(1998).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분석 이론 고찰.” 『신라대학교 논문집』45:545-579.
- 조정미·최경희·김장희(2018). “교류분석 자아상태 프로파일에 따른 직업유형과의 관계 및 직업분류.” 『교류분석상담연구』8(2):123-149.
- 조현분(2007). “중학생의 자아상태, 인생태도, 공격성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수길(1989). “집단상담이 수형자의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갑섭(1996). 『교정심리학』 경기도서.
- 정경아(2016). “청소년의 우울, 불안, 충동성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선(2014). “교류분석이론에 근거한 부모의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안순(2008). “교류분석 프로그램적용이 빈곤아동의 자아상태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스트로크 기법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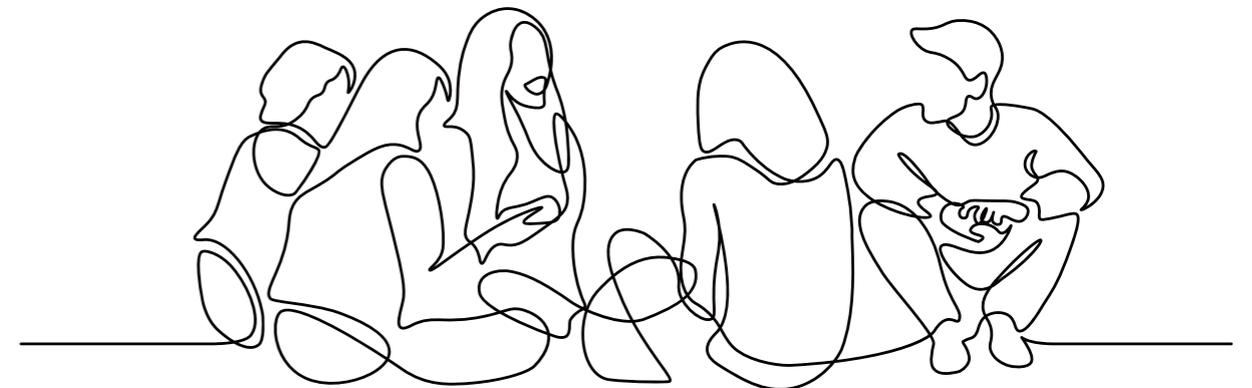
- 정운선(2009). “수용자 징벌의 효과 제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종진(1991). “공격행동의 유발요인과 매체폭력의 영향에 관한 문헌고찰.” 『학생지도연구』 17:61-91.
- 정혜원·박석훈(2011).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유대요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범죄비행학회: 범죄와 비행』 1:189-207.
- 제석봉·최외선(2006). “TA교류분석의 이론과 실제.” 한국 TA연구소.
- 제석봉(2010). “교류분석과 그리스도교 영성발달.” 『교류분석연구』1(1):73-86.
- 제석봉·최외선·김갑숙·윤대영(2016). 『현대의 교류분석: Ian Stewart, Vann Joines, 2007, Ta Today』 학지사.
- 제석봉·최외선·김갑숙·윤대영 공역(2010). 『현대의 교류분석』 학지사.
- 천성문(1999). “신경증적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치료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환(2013).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재소자의 자기효능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환·김태익·허창덕(2014). “수형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관한 교류분석 프로그램의 효과 및 교정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형사정책연구』 25(1), 1-29.
- 최낙균(2007). “REBT 집단상담이 수형자의 공격성·충동성 및 회망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승(1996).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통제성 및 비행회기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애나(2007). “음악치료가 소득계층별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옥채(2007). “얕은 욕망과 깊은 열등감의 발산: 범죄에 관한 인문학적 이해.”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목요포럼 자료집: 미발행』
- 최형선(2017). “교류분석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숙(2006). “또래상담 훈련과 활동이 또래상담자 및 소속 학급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창순(2004). “한국판 자기 통제력(self-control) 척도 타당화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진원(2011). “상호교류분석 이론에 기초한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호성(2007). “자기조절의 주요변인으로서의 자기통제력과 자아탄력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경숙·성승연(2014). “교류분석을 활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내의 통제성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1):29-51.

- 황재한(1999). "BPD경향성집단과 ADD경향성집단의 충동성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열(2000). 『범죄심리학』 학지사.

[국외 문헌]

- Aronson, E.(1980) Socialanimals. New York: W. H. Freeman & Company.
- Bandura, A.(1973). Aggression:A social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arratt, E. S.(1983). The biological basis of impulsiveness : The significance of timing and rhythm disor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4), 387-391.
- Berkowitz,L. & Lepage, A.(1967).Weapons as aggression-eliciting stimuli.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202-207.
- Berkowitz, L.(1993).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5, 494-503.
- Berne E.(1996). "Game people play" New York: grove Press.
- Berne, E(1964). "Games People Play". New York: Grove Press. 김홍용·우재현 역. 1993. 『심리적 게임』 대구: 정암서원.
- Buss, A. H.(1961).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 Buss, A. H, & Perry, M.(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Harrison, J. K, Chadwick, M, & Scales, M.(1996). There relationship between cross-cultural adjustment and the personality variables of self-efficacy and self-monito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 cultural Relations, 20(2): 167-188.
- Dusay, J. M.(1977). "Egogram : How I see you and you see me" New York: Bantom Press.
- Gaylin, W.(1984). The rage within. New York: Plenum Press.
- Gottfredson, M. R.,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G., Tittle, C. R., Bursik, R. J., & Arneklev B. J.(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30,5-29.
- Napper R.(2009). Comparison between Transactional Analysis and Positive Psychology. Transactional Analysis & Psychological Therapy, 6(1): 1-23.
- Patton, J. H, Stanford, M. S, & Barratt, E. S.(1995). Factor Structure of the Barratt Impulsiveness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 768-774.

- Scherbaum, C. A., Cohen-Charash, Y., & Kern, M. M.(2006). Measuring general self-efficacy: A comparison of three measures using item response theor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6), 1047-1063.
- Schwarzer, R., & Jerusalem, M.(1995). Self-efficacy measurement and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In J. Weinman, S. Wright, & M. Johnston(Eds.), Measures in health psychology: A users' portfolio(pp.33-39). Windsor: Neer-Nelson.
- Spielberger, C. D, Krasner, S. & Soloman, E. P.(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pp. 89-108). Ner York: Springer-Verlag.
- Stewart, I. & Joines, V.(2010). 현대의 교류분석[TA today]. 제석봉, 최외선, 김갑숙, 윤대영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7에 출판)
- Stewart, I. and Vann, J. 1987. "TA today: A New Introduction to Transactional Analysis". Lifespace Pub.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김종배

서울동부구치소 사회복귀과장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의 설계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V. 결론

국문 요약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6개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384명을 대상으로 역할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과 기술통계, 상관분석, 매개효과를 차례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소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근무 분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 근무연수, 직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직급이 낮고, 근무연수가 짧으면서, 연령이 30대인 직원이 직무소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할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넷째, 긍정심리자본 각각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병렬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에 대한 개입 시, 역할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교정공무원, 역할스트레스, 직무소진, 긍정심리자본, 매개효과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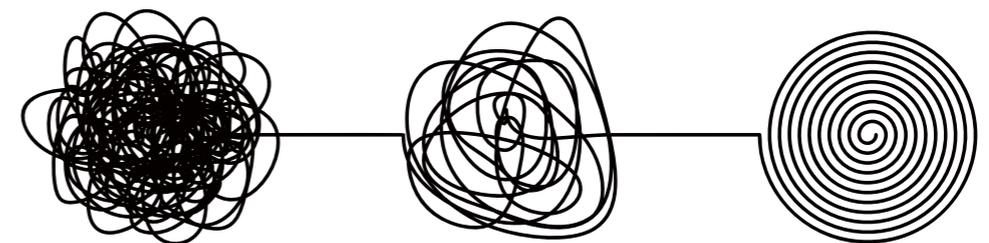
직업은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발휘하는 자기실현적 활동으로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태현, 2006). 일과 직업은 개인의 정체감, 자존감 및 심리적인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대부분 사람에게 일은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질을 결정한다(Muchinsky, 2000). 그러나 일을 통해 갈등과 좌절,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만큼 개인의 행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양점미, 2016). 여기에는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근무 강도가 높아져 ‘번아웃(burnout)’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30명의 공무원이 과로사하였다. 이로 인한 질병 재해도 늘고 있어 공무원의 과로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세계일보, 2022. 3. 22). 특히, 교정시설에서는 이 기간에 수용자들의 접견, 귀휴 등 외부 소통이 단절되면서, 사건·사고가 크게 늘고,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공격도 더불어 증가했다(동아일보, 2021. 9. 23).

Freudenberger(1975)는 직업적으로 정서적, 신체적인 피곤, 민감, 냉소주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소진(burnout)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했으나 기대했던 성과나 보상이 없이 인간적인 회의감이나 좌절감을 겪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신정재, 2012). 직무소진은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휴먼서비스 직종의 종사자가 장기간 정서적, 심리적 압박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갈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정동하, 2010). 소진에 대한 초기의 연구(McConnell, 1982)에서는 상담자, 사회복지사, 간호사와 같은 서비스 계통의 종사자에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최근에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기에 ‘또 다른 수용자(the other prisoner)’, ‘구금된 교도관(guards imprisoned)’, ‘전문적 수용자(professional prisoner)’ 등으로 불린다(Wick, 1980; Lombardo, 1981). 또한 ‘폐쇄와 격리’라는 특수한 조직문화를 배경으로 근무하면서, 수용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행정업무를 소화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회적 인 평판과 근무 여건은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강제상, 김광구, 김영근, 2011). 수용자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경험한 교정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균은 일반 직장인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수정, 윤옥경, 2004). 이러한 만성적인 직무스트레스는 결국, 각종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정서적 문제로 인한 소진(burnout)을 유발할 수 있다(Finney et al., 2013; 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직무소진은 구성원들의 이직 및 근태율 증가와 생산성 감소, 서비스 질 저하, 직무몰입의 어려움 등으로 조직 효과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Corey, 1998; 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또한 직무소진이 심화되면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무력감, 절망감, 강박증, 대인 비인격화, 적대감 등 삶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부정적 자아개념을 유발시킬 수 있다(Cherniss, 1980).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소진도 높아지며(정동하, 2010; 양점미, 문승연, 2016; 정혜경, 2014; 황선유, 2017; 박정수, 2016), 역할갈등이 심할수록 정서적 소진이 증가한다고 하였다(박혜련 외, 2009). 또한 역할 모호가 높아질수록 정서적 탈진, 비인간화, 업무성취감 저하를 일으키고, 역할 과다가 높아지면 정서적 탈진과 비인간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광구, 김학성, 김영근, 2012). 그리고 직장-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높아지지만(김미선, 박성수, 2019), 감성역량이 높아질수록 직무소진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황선유, 2017). 이처럼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직무스트레스이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직무 특성 요인(과업 난이도, 과업 모호성, 과업량의 과다, 핵심 직무 특성 등), 역할요인(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부하 등), 사회적 요인(대인관계,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등), 물리적 요인(작업 환경 등), 개인적 요인(성격, 경력, 능력, 환경변화 등) 등으로 나뉜다(Arsenault, Dolan, & Van Ameringen, 199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 중에서 역할요인에 초점을 맞춰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역할스트레스는 직장 내에서 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업무수행 전후에 생기는 역할에 대한 기대와 결과에 차이점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정신적 부조화 상태를 말한다(Lambert, Lambert & Ito, 2004). 역할스트레스의 하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역할갈등(Role conflict)은 역할수행자가 역할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곤란한 상황으로, 역할과 관련하여 겪는 심리적 갈등을 말하며(Rizzo, House & Lirtzman, 1970),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은 역할수행자가 역할의 목표나 요구 및 기대를 불확실하게 지각하여 결과에 대한 예측과 행동에 대한 반응이 불명확한 것을 의미한다(Beehr & Newman, 1978; Rizzo, House & Lirtzman, 1970). 또한 역할과부하(Role overload)는 개인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대되는 정도가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을 말한다(Margolis, Kroes & Quinn, 1974). 역할스트레스 이론에 의하면 직장의 역할전달자는 역할담당자에게 직장의 특성에 맞는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 역할담당자는 일정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역할 압력을 받게 되는데, 역할 압력은 역할담당자에게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같은 역할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고, 기대된 역할과 수행된 역할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개인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Kahn et al., 1964). 따라서 교정공무원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역할기대에 따라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 역할과부하 등의 역할스트레스를 느끼고 그로 인해 직무소진을 경험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두 가지 중심적인 역할은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것과 수용자가 출소 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다(이공희, 2010). 하지만 교정업무의 근거법령인 「행형법」이 수용자 처우 중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08. 12. 22.) 되면서 교정공무원의 역할은 단순한 보안역할보다는 인간적인 서비스 역할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고, 수용자 교육과 상담, 치료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되었다(김금자, 2020). 그러나 수용자를 대하는 세부적인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여전히 부족하여, 수용자들의 교정 및 사회복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Poole & Regoli, 1981; Toch & Klofas, 1982; Cullen et al., 1990; Finn, 2000). 이처럼 교정공무원은 구금관리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명제 속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이수락, 2011). 결국, 역할갈등이 심화되면 직무에 대한 혼란과 수용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Cullen et al., 1990; Finn, 2000). 또한 주기적인 행정업무와 많은 수용자를 상대해야 하기에 역할 과다가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업무를 수행할수록 본인이 수용자에게 무감각해지고, 비인간적으로 대한다고 느끼게 되어, 역할 과다가 비인간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김광구, 김학성, 김영곤, 2012).

박수경(2017)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상태의 부정적인 결과가 소진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소진에 대한 보호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영만(2016)은 소진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소진의 보호 요인으로 탄력성, 자아존중감, 교직전문성, 사회적지지, 자기위로능력,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임파워먼트 등 8개의 보호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탄력성,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근무환경을 건강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개인 내적 자원으로 긍정심리자본을 가정하고,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긍정심리자본이란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을 통합하는 상위 구성개념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자원으로 확장한 개념이다(Luthans & Youssef, 2004).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믿는 자신감과 확신이라고 하며(Bandura, 1997), 낙관주의(Optimism)는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념이나 태도, 사고방식을 의미한다(Seligman, 1998). 희망(Hope)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

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추구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진하게 하는 정신적 상태이고(Snyder, 2000), 회복탄력성(Resiliency)은 역경에 처했을 때 긍정적 변화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역량을 말한다(Luthans, 2002b). 긍정심리자본의 개념분석 연구에서 밝혀진 긍정심리자본의 속성은 긍정적인 인지를 통해 감정으로 표현되는 복합적인 심리 역량으로서 훈련과 학습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잠재적 자원으로 확인되었다(이순남, 김정아, 2017).

긍정심리자본과 소진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심리자본이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수영, 2019; 박민아, 2021; 윤정경, 2021). 그러나 역할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비슷한 연구 사례로 김수영(2019)의 정신과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 박민아(2021)의 역할 수행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연구가 있었다.

Luthans et al.(2007)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구성요소는 개별적으로 작용되는 것보다 통합된 심리적 차원으로 작용될 때 시너지가 발생되어 더욱 높은 긍정적 인지 상태와 동기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더 넓고 광범위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의 통합적 작용이,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의 개별적 작용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긍정심리자본의 통합적 효과를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주의, 희망 등 각각의 개별변인과 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많았으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구성요소로서 이들의 차별적인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의 다중병렬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각 하위요소들을 함께 비교·분석하였을 때 어떠한 경로를 나타내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III. 연구의 설계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소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의 다중병렬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 긍정심리자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4개 교정기관 및 충청, 경상 소재 2개의 교정기관을 중심으로 2022년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8일간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총 384부의 설문이 회수되어, 회수된 38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교, 근무연수, 근무 분야, 직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84)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50	91.1
	여자	34	8.9
연령	30세 이하	9	2.3
	31세~40세	127	33.1
	41세~50세	195	50.8
	51세 이상	53	13.8
결혼	결혼	316	82.3
	재혼	5	1.3
	이혼	4	1.0
	미혼	59	15.4
종교	기독교	114	29.7
	불교	66	17.2
	천주교	44	11.5
	무교	153	39.8
	기타	7	1.8
근무연수	10년 이하	203	52.9
	11년~20년	123	32.0
	21년 이상	58	15.1
근무 분야	총무, 민원	34	8.9
	보안, 출정	300	78.1
	분류심사	7	1.8
	사회복귀	14	3.6
	심리치료	6	1.6
	직업훈련	9	2.3
	의료처우	8	2.1
	복지예산	6	1.6
	합계		384
직급	9급	90	23.4
	8급	105	27.3
	7급	141	36.7
	6급 이상	48	12.5

3. 측정도구

1) 역할스트레스

역할스트레스는 Rizzo와 House, Lirtzman(1970), 그리고 Beehr와 Walsh, Taber(1967)가 개발한 문항을 최가영(2000)과 김진수(2006)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가영(2000)은 Rizzo와 House, Lirtzman(1970) 그리고 Beehr와 Walsh, Taber(1967)가 개발한 설문 문항을 종합하여 13개 설문 문항을 추출하였고, 김진수(2006)는 최가영의 문항에 ‘업무의 우선순위로 인한 갈등’, ‘직장 내 파벌로 인한 갈등’, ‘새로운 임무에 대한 해결책’,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여부’, ‘항상 시간에 쫓기는 기분’ 등 5개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하위요인은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부하이며 각 6문항,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부하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진수(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역할갈등 .745, 역할모호성 .887, 역할과부하 .80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2>와 같다.

<표 2> 역할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역할갈등	1, 2, 3, 4, 5, 6	6	.796
역할모호성	7*, 8*, 9*, 10*, 11*, 12*	6	.789
역할과부하	13, 14, 15, 16, 17, 18	6	.747
전체		18	.799

주. *는 역문항

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Luthans와 Youssef, Avolio(2007)가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척도를 임태홍(2013)이 한국어로 번안 및 수정한 ‘한국판 긍정심리자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에 따라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각 5문항과 회복탄력성 3문항인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태홍(201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기효능감 .879, 낙관주의 .822, 희망 .837, 회복탄력성 .72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3>과 같다.

<표 3> 긍정심리자본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자기효능감	1, 2, 3, 4, 5	5	.832
낙관주의	6, 7, 8, 9, 10	5	.804
희망	11, 12, 13, 14, 15	5	.799
회복탄력성	16, 17, 18	3	.763
전체		18	.928

3) 직무소진

직무소진은 Maslach과 Jackson(1981)이 개발한 소진 척도(MBI: Maslach Burnout Inventory)를 최혜윤(2002)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황선유(2017)가 교정공무원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에 따라 정서적 고갈 9문항, 비인간화 5문항, 성취감 저하 8문항인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졌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고갈, 성취감 저하, 비인간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황선유(2017)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정서적고갈 .87, 비인간화 .71, 성취감저하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4>와 같다.

<표 4> 직무소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정서적 고갈	1, 2, 3, 6, 8, 13, 14, 16, 20	9	.861
비인간화	5, 10, 11, 15, 22	5	.696
성취감 저하	4*, 7*, 9*, 12*, 17*, 18*, 19*, 21*	8	.813
전체		22	.851

주. *는 역문항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자료분석 과정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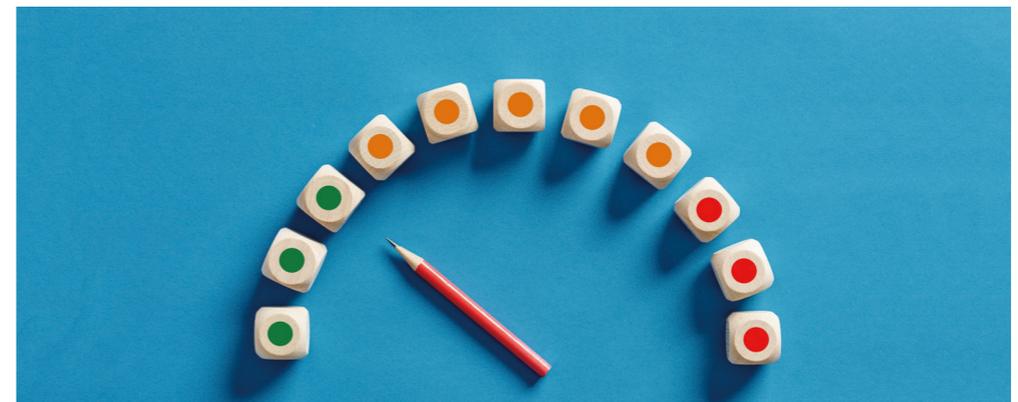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기술통계분석에서는 연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

째, 역할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성별, 연령, 근무연수, 근무 분야, 직급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직무소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다섯째,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및 하위요인의 매개변인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의 다중병렬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에 따라 다중병렬매개분석을 실시하였고,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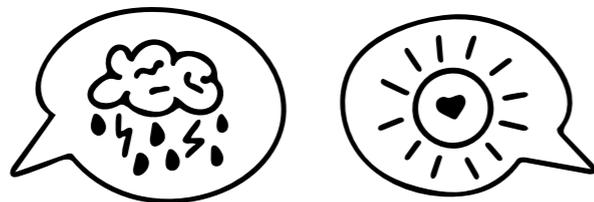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인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와 같은 기술통계량은 <표 5>와 같다. 하위요인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의 정규분포 기준은 West와 Finch, Curran(1995)의 연구에서 |왜도|<3, |첨도|<8이고, 역할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 하위요인들의 왜도는 절댓값 1 이하, 첨도는 절댓값 3 이하로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량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역할스트레스 전체	1.28	4.94	3.02	.457	-.478	1.770
역할갈등	1.00	5.00	3.31	.694	-.498	.348
역할모호성	1.00	5.00	2.36	.612	.386	1.307
역할과부하	1.00	5.00	3.38	.674	-.383	.528
긍정심리자본 전체	1.00	5.00	3.46	.569	-.428	2.258
자기효능감	1.00	5.00	3.49	.611	-.234	1.308
낙관주의	1.00	5.00	3.52	.655	-.457	1.589
희망	1.00	5.00	3.41	.639	-.304	1.355
회복탄력성	1.00	5.00	3.39	.735	-.357	.687
직무소진 전체	1.27	4.64	3.08	.506	-.572	1.337
정서적고갈	1.00	5.00	3.39	.716	-.567	.173
비인간화	1.00	4.60	3.01	.741	-.431	-.330
성취감저하	1.00	5.00	2.78	.634	.307	.555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 하위요인 간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역할스트레스는 직무소진($r=.691,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긍정심리자본($r=-.237,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소진($r=-.461,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관주의($r=-.231, p<.001$)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희망($r=-.225, p<.001$), 회복탄력성($r=-.217, p<.001$), 자기효능감($r=-.155, p<.001$) 순으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과 직무소진과의 상관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관주의($r=-.437, p<.001$)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희망($r=-.422, p<.001$), 회복탄력성($r=-.421, p<.001$), 자기효능감($r=-.334, p<.001$) 순으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6>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1	역할스트레스	1						
2	긍정심리자본	-.237***	1					
3	자기효능감	-.155**	.847***	1				
4	낙관주의	-.231***	.916***	.714***	1			
5	희망	-.225***	.897***	.638***	.769***	1		
6	회복탄력성	-.217***	.814***	.569***	.669***	.692***	1	
7	직무소진	.691***	-.461***	-.334***	-.437***	-.422***	-.421***	1

* $p<.05$, ** $p<.01$, *** $p<.001$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직무소진의 차이

교정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직무소진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 1>에서 제시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비교집단 수의 차이에 따라 두 집단 간 평균 비교가 요구되는 성별은 독립표본 t검정으로, 세 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 비교가 요구되는 연령, 근무연수, 근무 분야, 직급은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일원 배치 분산분석에서 F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날 때는 사후분석(Scheffe's post-hoc analysis)을 실시하여 유의한 차이의 패턴을 확인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직무소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직무소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7> 직무소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검증 1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성별	남성	350	3.080	.510	-.280	.779
	여성	34	3.106	.462		

* $p<.05$, ** $p<.01$, *** $p<.001$

다음으로는 직무소진에 대해 연령, 근무연수, 근무 분야, 직급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지 일원 배치 분산분석으로 확인해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 직무소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 검증 2

구분	분류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연령	30세 이하(a)	9	3.081	.537	7.774	***	.000	d<b
	31세~40세(b)	127	3.204	.410				
	41세~50세(c)	195	3.076	.512				
	51세 이상(d)	53	2.816	.588				
근무연수	10년 이하(a)	203	3.204	.374	13.843	***	.000	b,c<a
	11년~20년(b)	123	2.975	.561				
	21년 이상(c)	58	2.886	.656				
근무분야	총무, 민원(a)	34	3.057	.450	.660		.706	-
	보안, 출정(b)	300	3.107	.519				
	분류심사(c)	7	2.883	.472				
	사회복귀(d)	14	2.984	.350				
	심리치료(e)	6	2.902	.487				
	직업훈련(f)	9	2.995	.280				
	의료처우(g)	8	2.977	.731				
	복지예산(h)	6	2.894	.410				
직급	9급(a)	90	3.227	.355	11.917	***	.000	d<a,b,c
	8급(b)	105	3.146	.406				
	7급(c)	141	3.064	.581				
	6급 이상(d)	48	2.727	.505				

*p<.05, **p<.01, ***p<.001

분석결과, 직무소진에 대해 연령(F=7.774, p<.001), 근무연수(F=13.843, p<.001), 직급(F=11.917, p<.001)에서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보인 반면 근무 분야에서는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서는 사후분석(Scheffe's post-hoc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연령에서는 31세~40세와 51세 이상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1세~40세가 51세 이상보다 직무소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연수에서는 10년 이하, 11년~20년, 21년 이상 모두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고, 10년 이하가 11년~20년, 21년 이상과 대비해서 직무소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서는 9급, 8급, 7급, 6급 이상 모두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고, 9급, 8급, 7급 직원이 6급 이상 직원보다 직무소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1)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과정은 3개의 단계를 거치며, 분석결과는 <표 9>, [그림 1]과 같다.

<표 9>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R2	F
역할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	-.295	.062	-.237	-4.764	***	.056
역할스트레스	직무소진	.933	.050	.691	18.666	***	.477
역할스트레스	직무소진	.832	.047	.616	17.833	***	.571
긍정심리자본		-.342	.038	-.315	-9.133	***	

*p<.05, **p<.01, ***p<.001

[그림 1] 긍정심리자본의 매개모형



우선 긍정심리자본을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에서 역할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β=-.237, p<.001)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의 1단계를 충족하였다. 직무소진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2단계에서도 역할스트레스는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β=.69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을 추가하여 역할스트레스와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직무소진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에서 역할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β=.61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심리자본도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력(β=-.316,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2단계 역할스트레스의 표준화 계수보다 3단계의 표준화 계수가 감소하였으므로(β=.691>β=.616)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은 일종의 통계적 모의실험 절차로, 대규모 가상적 무선 표본을 만들어 각각에 대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매개효과의 존재가 통계적 무선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검증하는 것이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재추출한 표본수를 5,000개로, 95% 신뢰구간에서 지정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간접효과 크기는 .101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가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서 0을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는데(Preacher & Hayes, 2004),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40과 .164로 둘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0> 긍정심리자본의 Bootstrapping 결과

변인	B	SE	LLCI	ULCI
긍정심리자본	.101	.032	.040	.164

4.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의 다중병렬매개효과

1) 긍정심리자본의 다중병렬매개효과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4개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에 따라 다중병렬매개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표 11>,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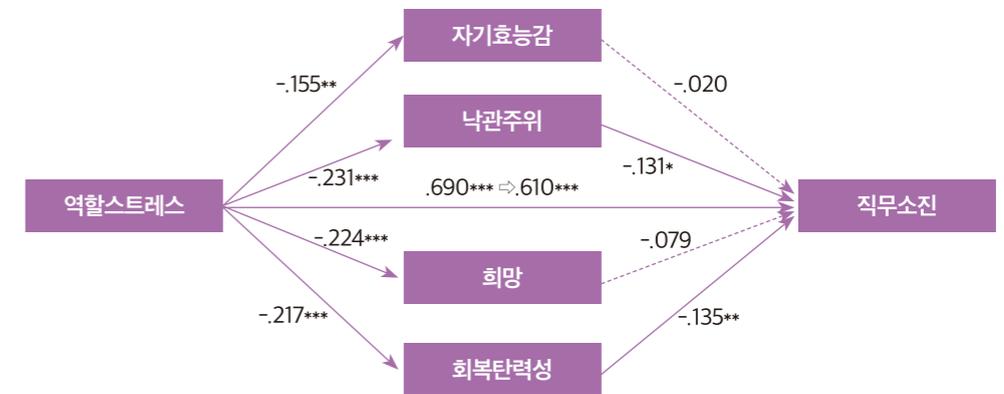
<표 11>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의 다중병렬매개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R2	F
역할스트레스	자기효능감	-.058	.019	-.155	-3.064	.024	9.388
	낙관주의	-.092	.020	-.231	-4.646	.054	21.581
	희망	-.087	.019	-.224	-4.507	.051	20.312
	회복탄력성	-.058	.013	-.217	-4.346	.047	18.890
역할스트레스		.825	.047	.610	17.618		
자기효능감		-.071	.179	-.020	-.397		
낙관주의	직무소진	-.444	.206	-.131	-2.159	.575	102.377
희망		-.273	.199	-.079	-1.373		
회복탄력성		-.681	.247	-.135	-2.758		
역할스트레스	직무소진	.933	.050	.690	18.666	.477	348.430

*p<.05, **p<.01, ***p<.001

먼저, 역할스트레스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β=-.155, p<.01), 낙관주의(β=-.231, p<.001), 희망(β=-.224, p<.001), 회복탄력성(β=-.217,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낙관주의(β=-.131, p<.05), 회복탄력성(β=-.135, p<.01)은 직무소진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능감(β=-.020, p>.05), 희망(β=-.079,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이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를 병렬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의 다중병렬매개모형



2) 다중병렬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다중병렬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검증한 Bootstrapping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재추출 표본 수 5,000개, 95% 신뢰구간 내에서 낙관주의는 하한값 .003, 상한값 .094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낙관주의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회복탄력성도 하한값 .010, 상한값 .078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회복탄력성의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효능감(-.025~.034), 희망(-.014~.068)은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의 Bootstrapping 결과

변인	B	SE	LLCI	ULCI
자기효능감	.004	.014	-.025	.034
낙관주의	.041	.023	.003	.094
희망	.024	.021	-.014	.068
회복탄력성	.040	.017	.010	.078



5. 논의

본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소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 근무연수, 직급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연령에서는 ‘31세~40세’가 ‘51세 이상’보다 직무소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근무연수에서는 ‘10년 이하’가 ‘11년~20년’, ‘21년 이상’과 대비해서 직무소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에서는 9급, 8급, 7급 직원이 6급 이상 직원보다 직무소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급이 7급 이하이고, 근무연수가 10년 이하 이면서, 연령이 31세~40세인 교정공무원이 직무소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할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 직무소진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유의하였다. 먼저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역할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소진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역할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 사이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긍정심리자본과 직무소진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과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긍정심리자본을 통하여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역할스트레스는 직무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긍정심리자본을 낮춤으로써 직무소진을 높이는 발생 경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직무소진이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 연구(Cushway & Tyler, 1996; Raquepaw & Miller, 198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어떠한 요인이 구체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병렬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역할스트레스는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할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 희망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통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낙관주의의 매개효과는 역할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교정공무원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더 많은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며, 회복

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역할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교정공무원은 역경에 처했을 때 긍정적 변화를 통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역량이 저하되어 더 많은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자기효능감과 희망은 개인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동기부여와 행동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전체적 능력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인 반면, 희망은 목표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경로와 계획 설정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홍소식, 김병식, 2012). 또한 희망은 낙관주의와도 유사한 개념이지만, 희망은 자아로부터 형성되는 반면, 낙관주의는 타인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형성된다는 점에서 개념적 차이가 있다(이상덕, 오상훈, 이성욱, 2019). 이는 낙관주의와 회복탄력성이 환경적응에 영향을 많이 미치며 개인 내적 요소보다는 개인 외적 요소에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자기효능감과 희망은 환경적응과 외적 요소보다는 개인의 목표성취와 내적 요소에 높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직무소진에 직접적인 인과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가설로 후속 연구를 통해 차별적 영향력을 반복 검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 및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교정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먼저 교정공무원의 역할갈등 해소를 위해 변화된 교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새롭게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역할과부하 해소를 위해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는 근무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야근 근무자에 대한 휴무보장 등은 교정공무원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교정공무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수용자의 수는 2019년 기준 3.4명, 2020년 기준 3.3명이다(교정통계, 2021). 이는 캐나다 1명, 독일 2.1명, 영국 2.7명과 비교해 1인당 관리 대상 수용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박정수, 2016). 따라서 수용밀도의 감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 시행 등과 더불어 교정공무원의 인력증원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들이 역할스트레스로 직무소진을 경험할 때, 이러한 직무소진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정공무원

에 대한 긍정심리자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Lazarus et al.(1981)는 개인의 긍정·부정 정서는 개인이 직면한 사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교정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역할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기르고, 이를 통해 직무소진에도 쉽게 빠지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셋째, 역할스트레스로 인해 직무소진을 경험하는 교정공무원을 상담할 때, 상담 개입방안으로 긍정심리자본 중에서도 특히 낙관주의와 회복탄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정공무원들은 역할스트레스로 인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역량도 감소하게 되어 직무소진에 더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상담자는 교정공무원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장애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교정공무원들이 점차 생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기대를 하면서, 자신의 실수 등에 적절한 감정조절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한다면, 결과적으로 직무소진을 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부하를 직장 내 대표적인 심리사회학적 스트레스원(stressor)인 역할스트레스(Glazer & Beehr, 2005; Kahn & Byosiere, 1992)로 통합하여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역할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 행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조직 및 집단 내에서의 역할이 사회적 구조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거나 조직 차원에서 종사원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Welbourne, Johnson & Erez, 1998). 이와 관련하여



이승주(2019)는 그의 연구에서 교정이념 지향성과 역할갈등 외 다양한 특정 요인들을 더욱 선명하게 밝히고 국내 정서와 상황에 맞는 이론을 정립하여 교정조직의 상충된 이념 속에서 교정공무원의 역할갈등 및 역할보호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 문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에 역할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직무소진 개입에 긍정심리자본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직업군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아도, 역할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 등 긍정심리자본의 개별 하위요인에 대한 매개효과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이를 통합해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의 각 하위요인들의 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역할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교정공무원이 직무소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긍정심리자본의 차별적 기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정공무원이 역할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이 감소하여 직무소진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소진에 대한 개입에 있어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긍정심리자본의 두 가지 요인을 역할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교정공무원을 위한 개입에 중점적으로 활용한다면 직무소진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한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4개 교정기관 및 충청, 경상 소재 2개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3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별에서는 남자(91.1%)가 많았으며, 연령에서는 41세~50세(50.8%), 근무 분야에서는 보안, 출정 근무자(78.1%)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설문 기간인 2022년 2월 21일 ~ 2월 28일은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과 대응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기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기와 인구학적 특성 등을 좀 더 다양하게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한 역할스트레스, 직무소진,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검사는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진행되어서, 측정 도구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이는 응답자들의 주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적 태도를 취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설문

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을 겪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직업군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어떤 요인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여 직업적 특수성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심리자본의 기제를 규명하였고, 이를 통해 역할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직무소진에 대한 개입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강남희, (2013),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제상/김광구/김영근, (2011), 교정직 공무원의 이직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4), pp.309-338.
- 김광구/김학성/김영근, (2012), 교정직공무원의 이직의사에 관한 실증연구: 소진(Burnout)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56, pp.93-133.
- 김광애, (2020), 재가센터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금자, (2020), 교정공무원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동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선/박성수, (2019), 교정공무원의 직장-가정갈등이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교정연구, 29(2), pp.159-182.

- 김수영, (2019), 정신과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수, (2006), 호텔종사원의 역할 스트레스와 긴장·소진 간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 (2006), 공직자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아, (2021), 중등교사의 온라인교수자 역할 수행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경, (2017),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수, (2016),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 공공서비스동기, 직무탈진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련/박민선/이빠라/정선아, (2009), 교도관의 정서적 소진과 직무만족, 역할갈등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2(2), pp.319-343.
- 손은아, (2020), 청소년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재, (2012), 리더의 감성역량과 구성원의 직무소진 관계에서 구성원 갈등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점미/문승연, (2016),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직무소진과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41, pp.99-131.
- 양점미, (2016), 교정공무원의 행복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숙경, (2013), 청소년상담자의 자아탄력성과 효능감이 소진(burnout)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경, (2021),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공희, (2010),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자, (2015), 아이돌보미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덕/오상훈/이성욱, (2019),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혁신행동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국방정책연구, 35(1), pp.159-160.
- 이성화, (2020), 초등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락, (2011), 교정공무원의 역할갈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윤옥경, (2004), 교정공무원의 폭행피해로 인한 탈진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pp.1-23.
- 이순늬/김정아, (2017),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23(2), pp.181-190.

- 이승주, (2019), 교정공무원의 하위문화 유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만, (2016), 교사의 심리적 소진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교사교육연구, 55(4), pp.441-459.
- 임태홍, (2013), 운동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동하, (2010), 교정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경, (2014), 남성 교정공무원의 근로환경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가영, (2000), 소진의 매개역할에 관한 연구: 역할스트레스·사회적 지원과 조직몰입·이직의도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윤, (2002), 상담자의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카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소식/김병식, (2012), 변혁적 리더십, 긍정심리자본, 학습동기간의 관계, 산업연구, 26(1), pp.65-90.
- 황선유, (2017),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감성역량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외국 문헌]

- Arsenault, A., Dolan, S. L., & Van Ameringen, M. R. (1991). Stress and mental strain in hospital work: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yond personalit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2(6), pp.483-493.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 Beehr, T. A., & Newman, J. E. (1978). Job stress, employee health,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 facet analysis, model, and literature review 1. *Personnel psychology*, 31(4), pp.665-699.
- Beehr, T. A., Walsh, J. T., & Taber, T. D. (1976). Relationships of stress to individually and organizationally valued states: Higher order needs as a moderat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1(1), p.41.
- Cherniss, C. (1980). *Staff Burnout: Job stress in the human servic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Corey, G. (1998).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4/e, Asia: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 Cullen, F. T., Skovron, S. E., Scott, J. E., & Burton Jr., V. S. (1990). Public support for correctional treatment: The tenacity of rehabilitative ideolog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7, pp.6-18.
- Cushway, D., & Tyler, P. (1996). Stress in clinical psycholog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42(2), pp.141-149.
- Finn, P. (2000). *Addressing Correctional Officer Stress: Programs and Strategies*. Issues and Practices.

- Finney, C., Stergiopoulos, E., Hensel, J., Bonato, S., & Dewa, C. S. (2013). Organizational stressors associated with job stress and burnout in correctional officers: a systematic review. *BMC public health*, 13(1), pp.1-13.
- Freudenberger, H. J. (1975). The staff burn-out syndrome in alternative institution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 Practice*, 12(1), pp.73-82.
- Glazer, S., & Beehr, T. A. (2005). Consistency of implications of three role stressors across four countri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5), pp.467-487.
- Kahn, R. L., Wolfe, D. M., Quinn, R. P., Snoek, J. D. & Rosenthal, R. A. (1964). *Organizational stress: Studies in role conflict and ambiguity*. Oxford, England: John Wiley
- Kahn, R. L., & Byosiere, P. (1992). *Stress in organizations*,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Lambert, V. A., Lambert, C. E., & Ito, M. (2004). Workplace stressors, ways of coping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Japanese hospital n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1(1), pp.85-97.
- Lazarus, R. S., Kanner, A. D., Coyne, J. C. & Schaefer, C. (1981).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pp.1-39.
- Lombardo, L. X. (1981). *Guards imprisoned: Correctional officers at work*. New York: Elsevier.
- Luthans, F. (2002a).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Develop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strengths.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16(1), pp.57-72., (2002b).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6), pp.695-706.
- Luthans, F. & Youssef, C. M. (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Organizational Dynamics*, 33(2), pp.143-160.
-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 (2007).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 Norman, S. M. (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3), pp.541-572.
- Margolis, B. L., Kroes, W. H., & Quinn, R. P. (1974). Job stress: An unlisted occupational hazard.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6(10), pp.659-661.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MBI: Maslach burnout inventory. manual*. Palo Alto, CA: University of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pp.397-422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pp.227-238.

- McConnell, E. A. (1982). *Burn-out in the nursing profession: Coping Strategies, Causes, and Costs*. Missouri. Mosby Inc.
- Muchinsky, P. M. (2000). *Psychology applied to work : An introduction to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th ed). Belmont, CA: Wadsworthn Pub.
- Poole, E. D., & Regoli, R. M. (1981). Alienation in prison: An examination of the work relations of prison guards. *Criminology*, 19(2), 251-270.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pp.717-731.
- Raquepaw, J. M., & Miller, R. S. (1989). Psychotherapist burnout: A componential 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0(1), p.32.
- Rizzo, J. R., House, R. J., & Lirtzman, S. I. (1970). Role Conflict and Ambiguity In Complex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5(2), pp.150-163.
- Seligman, M. E. (1998). *Learned optimism*. New York(State): Pocket Book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pp.422-445.
- Snyder, C. R. (2000). *Handbook of hope*. California: Academic Press
- Stajkovic, A. D. (2006). Development of a Core Confidence-Higher Order Constru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6), pp.1208-1224.
- Toch, H., & Klofas, J. (1982). Alienation and desire for job enrichment among correction officers. *Fed. Probation*, 46, p.35.
- Welbourne, T. M., Johnson, D. E., and Erez, A. (1998) The Role-Based Performance Scale: Validity Analysis of a Theory-Based Measur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5), pp.540-55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Sage Publications, Inc.
- Wick, R. J. (1980). *Guard society's professional prisoner*. Houston: Gulf Publishing.



미국 교정정책 동향 전자식 서신교환 정책에 대한 소견

곽대훈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 전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뉠 것이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코웃음 쳤던 기억이 있다. 당시만 해도 여타 전염병처럼 몇 개월 조심하면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들어 마스크 착용이 자연스러워진 것을 보면 인간의 적응력은 한계가 없는 것 같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서신교환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은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비용 절감과 교도소 내 밀수품 차단 등을 목적으로 2017년 웨스트버지니아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이었던 전자식 서신교환 정책이 뉴욕, 위스콘신 등을 포함한 14개 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전자식 서신교환 정책이란 교도소 또는 제3의 민간 업체를 통해 배달되는 우편물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을 시 원본을 복사 또는 스캔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미주리주에서는 2022년 7월부터 민간 업체와 계약한 후 수신된 우편물을 스캔해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뉴욕주는 동년 8월부터 교도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우편물을 스캔해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스캔 된 우편물은 편지 봉투를 포함한 인쇄된 사본으로 재소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웹사이트 등과 같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고 수용자가 직접 열람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교도소에서는 태블릿 PC 또는 공유 키오스크를 활용해 스캔 된 우편물을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용자는 횡수 제한 없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친지 또는 친구 등 민원인의 경우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인터넷 편지를 통해 수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우편물을 통한 전통적인 서신교환을 보완하는 제도로 전술한 미국의 전자식 서신교환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서신교환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용자들이 외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수용자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지지는 수용자 안녕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이며, 궁극적으로는 재범 위험성 감소로 인한 공공안전에 이바지한다고 봤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물리적 우편물은 사랑하는 사람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딸이 그린 그림의 크레용의 촉감을 느끼는 등 가족, 친구들과의 가시적인 연결(tangible links)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전자식 서신교환 정책의 문제점

전자식 서신교환 정책을 도입한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내 우편처리 비용 절감, 교도소 내 밀수품 반입 차단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편물을 통해 시설 내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교정학자는 전자식 서신교환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서신교환 정책을 도입한 궁극적 목적 중 하나는 교도소 내 밀수품 차단에 있다. 특히, 최근 일부 교도소에서는 액상 K2(합성 마리화나 일종)가 우편물을 통해 밀반입돼 큰 문제가 됐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자식 서신교환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플로리다 교도소에서 압수된 210만 개의 밀수품 중 1.7%만이 물리적 우편물을 통해 반입됐고, 우편물을 통해 반입된 밀수품은 대부분 테이프, 향수, 립스틱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물리적 우편물은 수용자들에게 큰 정서적 가치를 지니고, 정상적인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는 희망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플로리다에 수감 중인 한 수용자는 “전자식 서신교환 정책으로 편지를 만지거나 봉투에서 향수 냄새를 맡는 긍정적인 경험을 잃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스캔 된 복사본은 수용자들의 긍정적 경험의 기회를 박탈하며, 교도소로 보내지는 우편물이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스캔 되거나 파괴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주에서의 경우와 같이 교정당국이 아닌 민간 기업이 우편물을 스캔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끝으로, 우편물에 대한 교정당국의 지나친 개입은 자유로운 서신 왕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편물의 전체적인 양이 감소되고 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내 많은 주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자식 서신교환 정책(물리적 우편물 금지)은 서신교환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적극적인 외부와의 소통을 통한 재범 위험성 감소 및 재사회화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수용자들의 복지를 해치는 동시에 의미 있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직 국내 적용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진행되는 연구 결과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생상의 적절한 조치와 수용자 청결 의무에 관한 고찰

- ‘모포털이’와 위생의 상관관계 -

박경혜

수원구치소 보안과 교감

I. 서설

II. 수용자 ‘모포털이’의 본질

III. 관련 판결 등

IV. 침구류의 규격 및 ‘모포’라는 용어

V. 결어

I. 서설

보건은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으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포함하고, 위생은 널리 건강의 보전·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치유에 힘쓰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개인위생, 공중위생, 식품위생, 산업위생, 환경위생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외부로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수용자는 형벌의 집행 등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교정기관이 시설 내 보건·위생상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4장 위생과 의료’부분에서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위생·의료상의 적절한 조치 의무 및 수용자용 설비와 기구의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제30조, 제31조), 수용자에게도 자신의 신체 및 의류의 청결을 유지하고,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2조).

그런데 지난 2021년 7월경 국방부가 육군과 해병대도 모포, 포단 형태의 침구류를 일반 이불류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병영시설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¹⁾ 모포는 자주 세탁할 수 없어 위생 측면은 물론 수면 여건 보장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개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²⁾ 하지, 함정·기지에서 주로 생활하는 해·공군과 달리 유사시 주둔지를 떠나 야외에서 생활하는 작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민·관·군 협의회의 결정이라거나, 군대는 적이나 위협을 상대로 싸워 이겨야 하는 생활습관의 존재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하에서는 수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침구를 야외에서 털고, 자연광(햇빛)으로 건조하는 활동을 일컫는 이른바 ‘모포털이’를 위생 및 청결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판결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추억의 병영 모포털기’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숨이불’대체, 문화일보 2021. 7. 11. 입력, 2021. 7. 12 수정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711MW133135733587>)

2 ‘추억의 모포털기’ 사라지나... 군, 70년 만에 숨이불로 대체 추진(종합), 연합뉴스 2021. 7. 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1023900504?input=1195m>)

II. 수용자 ‘모포털이’의 본질

1. 근거

교정 분야에서의 위생은 수용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 제한된 장소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있는 특성상 감염병 발생 등 보건·위생상의 문제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용자에게도 청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규칙 그 어디에도 ‘모포털이’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포’라는 용어 자체를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일반적인 보건·위생 및 수용자 생활용품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2. 교정 보건·위생의 내용

수용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개인위생과 수용동, 작업장, 운동장 등 수용 시설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여 시설 내 위생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시설위생으로 대별된다.

가. 청결 의무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32조).

따라서 수용자는 교도관이 접견, 출정 등 수용거실 밖으로 나오거나 들어갈 때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것 등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필요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48조).

³⁾ 한편, 군 위생(military sanitation)은 집단생활, 생활환경이 다른 외지 근무, 각종 살상 무기에 노출되는 등 특수한 환경, 조건 아래에서 장병의 건강을 유지하지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구·치료·예방·대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수용자 건강을 고려한 생활용품 지급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질의 식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의류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탁하거나 소독하여 지급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다. 운동 및 목욕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동시간·목욕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형집행법 제33조).

라. 청결유지 및 보건·위생관리 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31조), 수용자의 건강, 계절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위생관리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46조).

마. 시설의 청소·소독

소장은 거실, 작업장, 목욕탕, 그 밖에 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취사장, 주식·부식 저장고, 그 밖의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소독하여야 하며, 저수조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소독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47조).

바. 위생검사

의무관은 매일 1회 이상 의료수용동의 청결, 온도, 환기,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교정시설의 모든 설비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급식 등에 관하여 매주 1회 이상 전반적으로 그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특히 중요한 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교도관직무규칙 제84조).

3. 수용자 침구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침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형집행법 제22조).

가. 품목

수용자 침구의 품목은 이불 2종(솜이불·겹이불), 매트리스 2종(일반매트리스·환자매트리스), 담요⁴⁾ 및 베개로 구분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조).

나. 품목별 사용 시기 및 대상

㉠ 솜이불은 환자·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수용자 중 소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 겹이불은 수용자가 봄·여름·가을철에, ㉢ 일반매트리스 수용자가 겨울철에, ㉣ 환자매트리스는 의료거실에 수용된 수용자 중 의무관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 담요 및 ㉥ 베개는 모든 수용자가 모든 계절에 각각 사용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조).

다. 지급기준 등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고(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수용자 의류·품목별 색채 및 규격은 법무부장관이 정⁵⁾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조).



4 담요는 모포(毛布)의 순화어이고, 순수한 털이나 털에 솜을 섞은 것을 곱게 짜든가 눌러서 만든 요를 뜻한다고 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5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1279호)

4. 소결 : 수용자 담요 세탁·교체 등의 문제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모포털이’는 수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침구의 일종인 담요를 청결히 하기 위하여 야외에서 흔들어 먼지 등을 털어내고, 건조대 등에 널어 햇볕에 말려 자연 소독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군 생활 시 덮고 자고 또 훈련 나갈 때 접에서 군장을 꾸리기도 하는 병영 침구류인 모포는 먼지와 진드기가 많음에도 단위 부대의 사정상 제때 직접 세탁하기 어려운 현실⁶⁾에서 생긴 병영문화 내지 군 생활 습관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용자 침구류인 담요는 거실 내에서 덮고 잘 때 사용될 뿐 야외 훈련 시 군장 등으로 쓰일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수용자 담요 털이 내지 담요 건조 행위인 이른바 ‘모포털이’를 군대 모포털기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수용자의 ‘모포털이’를 위생 및 청결의 관점에서 보면⁷⁾ 결국 소장이 수용자가 사용하는 침구류인 담요를 적당한 시기에 세탁 또는 교체하도록 하였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6 장병들 모포 없애고 이불로 전면교체... 세탁은 어떻게?[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2022. 9. 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5366632461432&mediaCodeNo=257&OutLnkChk=Y>)

7 그러나 대부분의 수용자들에게 ‘모포털이’는 약 10~20분 정도의 바깥바람을 쐬고 담요를 털면서 스트레스를 날리는 시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Ⅲ. 관련 판결 등

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2헌마753, 2022. 6. 7., 지정재판부]

【전문】

사 건 2022헌마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정 ○○

피청구인 ○○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양○○이 바지와 속옷에 변을 묻히고도 세탁하지 않고, 목욕 및 양치를 하지 않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아 청구인을 비롯한 같은 방 수용자들 모두 고통스럽게 생활한다며, 2022. 4. 11. 피청구인에게 위생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비위생적인 상태는 양○○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2022. 4. 18.까지 계속 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22. 5. 17.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 거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제30조), 수용자에게는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

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 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0. 11. 17. 2020헌마1509; 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치 거부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2022헌마1024, 2022. 8. 12., 지정재판부]

(전략)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2. 6. 2. 경부터 6. 13. 경까지 청구인을 조사·징벌하면서 한 생수 및 기타 생필품의 구매 제한 등의 행위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중략)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위 조사기간 및 징벌기간 중 위생 상태가 불량한 모포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해당 기간 청구인에게 세탁된 관담요 2개와 베개 1개를 매일 취침 전 지급하고 기상 시 회수하여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후략)

3. 전주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8가단47628 손해배상(기)

(전략)

원고는 2008. 12. 22.과 2008. 12. 23. OO교도소 담당 직원에게 원고의 침구류(자변으로 구입한 모포) 세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아픈 몸으로 직접 모포 세탁을 하여야 했고, 2008. 12. 24. 세탁물 중 양말 1쌍을 분실하여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략)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자변 구입한 모포를 교정시설에서 세탁해 줄 의무는 없고, 이는 원고가 환자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한편, 원고의 양말 1쌍이 전주교도소 측의 과실로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일체 이유 없다.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 10. 30. 선고 2013가단876 손해배상(기)

(전략)

나. 표 순번 제2항 기재 청구 부분

피고 소속 공무원이 관급 모포의 경우 직접 세탁하여 수용자가 원하면 교체하여 지급하고, 자비 구매용 모포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자비로 외부업체에 세탁하도록 해주었다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세탁실을 사용을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거나 원고가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중략)

타. 표 순번 제12항 청구 부분

원고가 섬유유연제(피죤)를 사용하지 못하여 원고의 위생, 건강에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후략)

5.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155600 구치소의 열악한 수용환경 등

(전략)

나. 수용자가 모포를 털거나 말리지 못하여, 모포가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중략)

나. 진정 요지 나. 항에 대하여

피진정 기관의 작업 및 교육 일지에 따르면, 피진정 기관의 2017. 5.부터 8.까지 월별 모포 건조 신청 현황은 각 27장, 10장, 27장, 50장이고, 같은 해 6.과 7.의 모포 교체 및 세탁 신청자는 각 109장, 127장이다. 진정인은 피진정 기관 수용자들이 모포를 털거나 건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모포 건조, 교체, 세탁 등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IV. 수용자 침구류의 규격 및 ‘모포’라는 용어

1. 수용자 침구류의 규격, 지급 시기 등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용자 피복 관리 및 제작·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조). 구체적으로 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은 위 지침 제2조 및 별표 7에서, 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사용기간 및 착용 시기는 제3조 별표 8에서 각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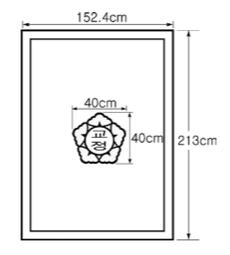


【별표 7】

침구의 제식(제2조 관련)

(전략)

3. 담요 및 베개

색채 및 재질	규격	도식화
가. 담요 : 하늘색 면사 및 폴리아크릴	가. 담요 (1) 표면 및 이면이 동일하여야 한다. (2) 사방절단 부분은 너비 3cm 나이론으로 선 테두리를 붙인다.	가. 담요 

(후략)

【별표 8】

의류·침구의 품목별 지급 기준(제3조 관련)

(전략)

구분	품목	1인당 지급량	사용기간	지급(착용) 시기	비고	
침구류	이불	솜이불	1매	3년	12월~2월	노약자, 임산부 등
		겹이불	1매	3년	3월~11월	
	매트리스	일반매트리스	1매	8년	11월~3월	
		환자매트리스	1매	5년	1월~12월	
	담요	2매	5년	1월~12월	난방, 수용자 건강 상태에 따라 적의 지급	
	베개	1개	1년	1월~12월		

(후략)

2. ‘모포’라는 용어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형집행 관계법령에서는 담요 외에 ‘모포’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고, 과거 행형법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아도 ‘모포’라는 표현은 단 한번도 쓰인 일이 없다.

□ **행형법** [시행 1950. 3. 18.] [법률 제105호, 1950. 3. 2., 제정]

제20조 (급여)

① 수형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를 급여한다.
② 의류와 침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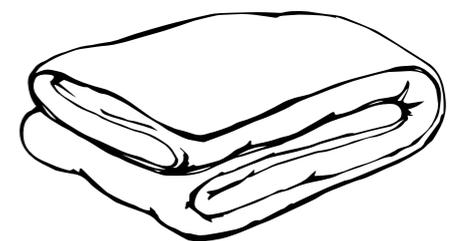
○ **행형법시행령** [시행 1962. 4. 3.] [각령 제626호, 1962. 4. 3., 폐지제정]

제73조 (급여의류등의 품목)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의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실내의
- 작업의
- 내의
- 허리띠
- 버선
- 이불 또는 담요
- 베개
- 모기장

② 전항 각호의 의류 및 침구의 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모포’는 점호, 내무반, 시건장치 등과 군대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일본식 한자어인 병영 언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573돌 한글날을 맞아 2005년 만든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에 실린 1,100여 개 단어 가운데 개선이 시급하고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선별하여 2019. 10. 발표⁸⁾하였는데, 순화할 일본식 한자어로는 종지부, 망년회, 잔고, 모포, 고수부지 등이 꼽으면서, 이들 단어를 마침표, 송년회, 잔액, 담요, 둔치로 순화하여 쓰자고 제안하였다.

V. 결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수용자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는 인권 보호의 기본적 요청이므로,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기관이 시설 내 보건·위생상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집단생활에 있어 위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집단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건강에도 직결되므로 수용자도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청결유지에 힘써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수용자 담요털기’는 수용자가 거실 내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인 담요를 실외 운동 시 또는 별도의 정해진 요일, 시간에 거실 밖으로 가지고 나와 바깥에서 털어내면서 그 자체가 햇빛을 접하며 하는 운동이거나, 바깥바람을 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동시에 세탁에 갈음하여 먼지 등을 털어내고 일광소독을 한다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으로 보인다.



8 '나가리'말고 이제 '무산'이라 하세요, 동아일보 2019. 10. 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09/97792224/1)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어져 온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각 교정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용자의 각종 처우를 조정하여 실외 운동이 제한, 축소되었다가 4단계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중지되기에 이르면서 담요 털기도 함께 축소 내지 중지되었다가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실외 운동 재개와 동시에 되면서 담요 털기도 함께 재개된 기관도 있고, 실외 운동만 재개된 기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바깥바람에 담요를 털어내고 햇빛에 말리는 것이 실제로 위생, 청결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오히려 거실 안에서 덮고 자는 침구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는 등 비위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수용자들이 단체로 담요를 마주 잡고 털어내는 과정에서 자칫 기관지 등에 먼지가 들어가 안과 및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담요 털기를 「수용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위생상의 적절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각 교정기관에서 세탁실의 건조기 대수와 스팀 공급량을 늘리는 등 기계적 설비 확충에 더욱 주력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용자 담요 세탁 및 교체 주기를 더욱 짧게 운용하여 <‘추억의 교정 모포털이’역사 속으로...>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끝마치고자 한다.



미국 민영 교정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I. 기रो에 선 미국의 민영 교정산업

II. 미국의 민영 교정산업의 현황과 성장 배경

III. 미국 민영 교정시설 관련 이슈

IV.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연방교정국의 민영계약 종료

V. 결론 및 미국의 민영 교정산업의 미래 전망

I. 기로에 선 미국의 민영 교정산업

2023년 1월 현재 미국의 교정시설의¹⁾ 인구 10만 명당 구금 인구는 505명으로 세계 6위로 전 세계 수용자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World Prison Brief, 2023).

미국의 전체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2008년에 최고조에 달해 2008년 1월 1일에 미국 성인 100명 중 1명 이상이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는 2008년 전 세계 수용자 980만 명 중 약 24.7%에 해당한다.

미국의 수용 인원의 급증은 민영 교정시설²⁾의 설치와 확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용 인원의 증가가 민간기업의 교정시설의 투자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조직적인 입법 로비 등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지적과 비판도 상당하다(CNBC, 2019).

2016년 미 연방정부의 법무부 감찰관실(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IG)³⁾은 당시 연방교정국이 계약한 민영 교정시설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은 민영 형사 구금시설의 사용을 폐지하기 위한 구금시스템 개혁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Reforming Our Incarceration System to Eliminate the Use of Privately Operated Criminal Detention Facilities, Executive Order 14006)에 서명하기에 이른다.



1 교정시설에는 교도소, 중간처우의 집, 보호관찰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미국의 교정기업은 이 밖에도 이민 구금시설도 연방정부 및 주정부 등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기존의 교도소를 개조하여 활용한다.

2 민영 교정시설이란 기업이 연방정부나 각 주정부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고 수용자 또는 사회내처우 대상자에 대한 교정 및 사회내처우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일부 교정기업이 교도소, 중간처우, 보호관찰 및 난민수용시설, 이민 구금 시설 등을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시설 등을 운영한다.

3 미국 법무부(DOJ)의 감찰관실(OIG)은 법무부 직원 및 업무의 청렴성,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임무로 창설된 법적 독립기관이다. OIG는 법무부 공무원의 법률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DOJ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진단하고 감사한다. 감찰관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법무부장관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https://oig.justice.gov/about/>

그러나 이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연방 국토안보부의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운영하는 이민 구금시설 등에는 여전히 추방 대상 혹은 심사대기 중인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있다. 일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도 민간기업과의 교정시설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와 더 이상의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미국의 민영 교정산업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민간 교정의 현황과 민간 교정산업의 발전 배경과 관련 이슈 등을 정리하고⁴⁾, 향후 전망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교정의 민영화를 포함하여 형사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민영화 추세 및 그 확장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경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I. 미국의 민영 교정의 현황과 성장 배경

1. 미국의 민영 교정시설의 수용 현황

1980년대의 무관용주의는 구금주의를 강화하였고, 수용 인구의 급증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막대한 교정예산이 투입되었고, 교정 비용의 절감과 형사사법 정책의 민영화라는 추세에 따라 민영 교정시설이 등장하였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국의 민영 교정시설 수용자는 2020년을 기준으로 99,754 명으로 이는 연방교도소 및 전체 주정부 교도소의 수용인원 120만 명 중 8% 정도에 해당된다. 미국 민영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은 2000년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14% 정도 증가하였다. 〈그림 1〉은 2000년 이후 미국 민영 교정시설의 수용 인구 추세를 보여준다. 각 주정부 마다 민영 교정시설의 도입 및 그 운영 여부는 차이를 보인다.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정기업은 GEO Group, Core Civic, LaSalle Corrections, Management and Training Corporation 등이다.

몬타나, 애리조나, 하와이, 뉴멕시코, 미시시피, 플로리다 등은 수용인구의 13~45% 정도를 민영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반면에 아칸소,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네바다, 유타 등은 민영 교정시설의 수용 인구를 100% 감소시키는 등의 상반된 변화를 보인다. 일부 폐지한 주정부도 있다.

4 이 연구는 허경미. (2020). 미국의 민영 교정산업의 성장 배경과 쟁점. 교정연구, 30(1), 65-96.에서 미국의 교정산업의 발전 배경 및 이슈 등을 상당 부분 발췌 또는 인용하였고, 보다 최근의 자료는 미 법무부, 국토안보부 및 의회 등에서 발간한 공식 문건 및 보도문 등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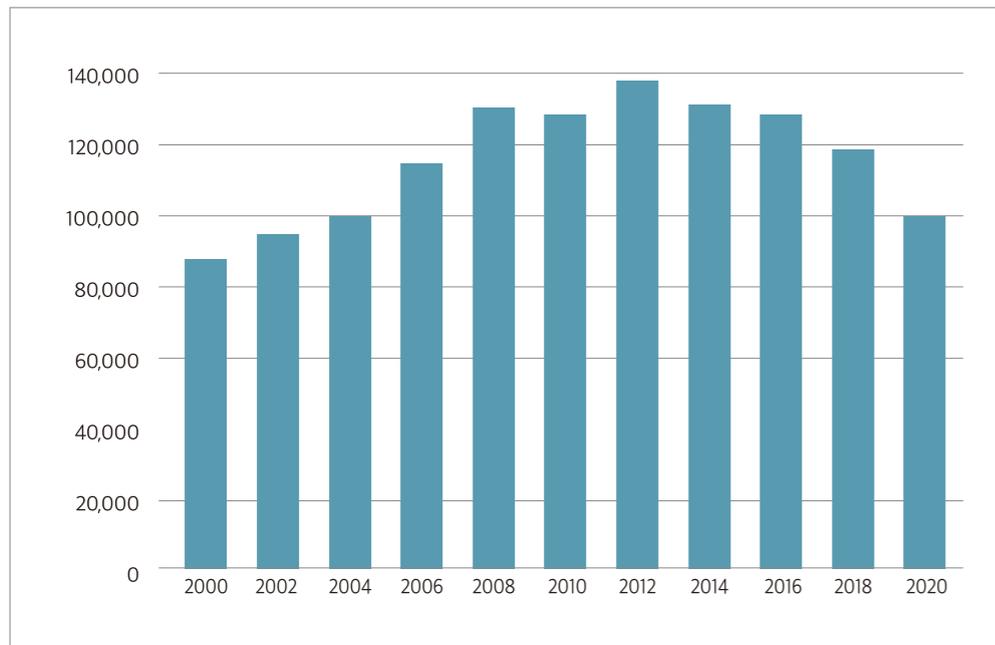
〈표 1〉 미국 민영 교정시설의 수용 인구 변화(2000-2020)

관할	도입	2000	2020	2020 (민영비중, %)	증감비(%)	비고(폐지)
Alabama	2003	0	254	1%	*	
Alaska	1985	1,383	206	11%	-85%	
Arizona	1994	1,430	7,185	19%	402%	
Arkansas	1998	1,540	0	0%	-100%	2002
California	1986	4,547	0	0%	-100%	
Colorado	1995	2,099	2,784	17%	33%	
D.C.	-	2,342	~	~	-100%	
Florida	1985	3,912	10,810	13%	176%	
Georgia	1998	3,746	6,525	14%	74%	
Hawaii	1995	1,187	999	36%	-16%	
Idaho	1997	1,162	727	10%	-37%	
Illinois	-	0	95	0%	*	
Indiana	1998	991	3,719	16%	275%	
Kentucky	1986	1,268	725	4%	-43%	
Louisiana	1990	3,068	0	0%	-100%	
Maine	-	11	0	0%	-100%	
Maryland	-	127	0	0%	-100%	
Michigan	1998	449	0	0%	-100%	2005
Mississippi	1996	3,230	3,240	19%	0%	
Montana	1999	986	1,962	50%	99%	
Nevada	1997	508	0	0%	-100%	2003
New Jersey	1996	2,498	553	4%	-78%	
New Mexico	1989	2,155	2,457	45%	14%	
North Carolina	1998	330	33	0%	-90%	
North Dakota	-	96	255	18%	166%	
Ohio	2000	1,918	6,204	14%	223%	
Oklahoma	1996	6,931	4,616	21%	-33%	
Pennsylvania	2001	0	315	1%	*	
South Carolina		0	84	1%	*	
South Dakota	1992	45	27	1%	-40%	
Tennessee	1984	3,510	6,984	31%	99%	
Texas	1984	13,985	9,249	7%	-34%	
Utah	1994	208	0	0%	-100%	2001

관할	도입	2000	2020	2020 (민영비중, %)	증감비(%)	비고(폐지)
Vermont	2004	0	194	21%	*	
Virginia	1998	1,571	1,483	5%	-6%	
Washington	2004	0	0	0%	0%	2010
Wisconsin	1998	4,337	0	0%	100%	2005
Wyoming	1997	275	259	12%	-6%	
Federal	-	15,524	27,810	20%	79%	

* 자료 : Mackenzie Buday and Ashley Nellis, 2022.

<그림 1> 미국 민영 교정시설의 수용 인구 추세(2000-2020)



* 자료 : Mackenzie Buday and Ashley Nellis, 2022.

공공 교정시설에 대비하여 민영 교정시설은 지난 2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2012년 이후 민영 교정시설의 수용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2020년 민영 교정시설의 수용자는 2000년에 비해서 14% 정도 증가한 것이다.

민영 교정시설에 가장 많이 수용자를 위탁하는 정부기관은 연방 법무부의 교정국(Bureau of Prison: BOP)이다. 2000년 이후 BOP의 민영 교정시설에 대한 의존도는 79% 정도 증가했으며, 민간 교정시설의 연방 범죄자는 2020년을 기준으로 27,810명이다.

2021년 1월 26일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6)으로 교정국은 2022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모든 교정기업과의 교정시설 계약을 폐기하기에 이른다(BOP, 2022). 그러나 아직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민영 교정시설은 일부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미국 국토안보부는 미국 국경을 비자 없이 넘은 이민자 22,014명을 이민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있다(ICE, 2023). 이 가운데 80% 정도를 민간 교정기업이 운영하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연방정부를 포함한 일부 주정부의 민영 교정시설의 이용은 정치적 영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일부 정치인들과 민간 교정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지면서 교정산업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용인구를 늘려 이익을 창출하려는 교정기업의 입장과는 상충되는 조치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교정의 민영화와 이민 구금시설의 민영화 정책 등과 그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다.

2. 미국 교정기업의 발달 배경

1) 1979년 사법제도 개선법(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 노동자들과 회사의 관계는 노동자의 권리를 극대화하려는 입장과 인건비를 낮추려는 사업주의 입장이 맞섰다.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정시설의 수용 인구를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부상되었다. 한편 노동자 단체들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값이 싸 자신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교정시설 생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각각 다른 입장들의 절충 방안으로 교도소 내 생산제품은 생산된 주(stste) 내에서만 판매하고, 해당 주 관할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하웨쿠퍼법(Hawes-Cooper Act, 1929), 애서스트썸너스법(Ashurst-Sumners Act, 1935), 그리고 월시힐리법(Walsh-Healey Act, 1936) 등이 제정되었다.

한편 1935년 제정된 와그너법(Wagner Act)으로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보장받게 되었지만, 1960년대까지 교정시설의 수용자 노동은 특별히 노동운동 단체의 관심에서 멀어져 노동자법의 사각지대로 전락되었다(Fink, 2016).

1965년 존슨(Lyndon Baines Johnson) 대통령은 교정시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Free Venture”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교정당국과 민간기업의 협력 사업을 시도한 것이다(US Dept of Justice, 1980). 그러나 하웨쿠퍼법 등의 장벽이 되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용자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1960년대 이후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수용 인구가 급증하자 이들의 노동력 활용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당시 미국의 거대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인 월마트(Walmart), 휴렛팩커드(Hewlett-Packard) 및 맥도날드(McDonald's)와 정치로비단체인 미국입법교환협의회(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 ALEC), 그리고 민간 교정기업인 미국교정(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 CCA), GEO, 코넬교정(Cornell Corrections) 등이 조직적으로 입법 로비를 벌였다(Chaneles, 1986). 결국 1979년에 제정된 수용자의 노동력을 기업에 공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법제도 개선법(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이 제정되었다(US Dept of Justice, 1980; Hawkins, 1983).

2) 삼진아웃제·법정형기제·절대형기제 : 구금형의 폭증

한편 교정시설 수용자의 값싼 노동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으로 월마트와 맥도날드 등을 포함한 거대 기업과 교정기업, ALEC 등은 치밀하게 입법 로비를 벌였다. 이들은 로비를 통해 폭력범과 마약범에 대한 삼진아웃법(Three-Strike Laws), 법정형기제(Mandatory Sentencing), 절대형기제(Truth-in-Sentencing) 등의 엄격한 처벌로 구금형을 늘리도록 하였다(Tonry, 2014).

삼진아웃법은 무관용주의(Zero Tolerance)를 바탕으로 한 미국 법무부의 형사정책으로 1994년 3월 7일에 처음 시행되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이전에 2회 이상의 폭력범으로 처벌 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중형으로 처벌(징역형, 사형 등)한다”는 것이다(Newburn, & Jones, 2007).



<표 2> 미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추이

연도	교정시설 구금 인원	미국 인구 10만 명당 구금 인원
1940	264,834	201
1950	264,620	176
1960	346,015	193
1970	328,020	161
1980	503,586	220
1985	744,208	311
1990	1,148,702	457
1995	1,585,586	592
2000	1,937,482	683
2006	2,258,793	752
2010	2,270,142	731
2016	2,157,800	666
2020	2,102,400	642

* 자료 : world prison brief, 2023. 재구성.

삼진아웃법의 적용 범죄자는 주(state)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지속 범죄자’(Persistent Offender), ‘흉악지속범죄자’(Prior and Persistent Offender)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정부가 폭력범죄자에게만 적용하던 삼진아웃법을 점차 마약사범에게도 적용하면서 교정시설의 구금 인원 절반이 마약사범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Shepherd, 2002; Newburn, & Jones, 2007).

법정형기제(Mandatory Sentencing)란 사법부의 판결 재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 반드시 특정한 형벌에 처하고 최소(Minimum) 이상의 형량에 처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즉, 법정형기제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범죄 상황 및 피고인의 특수한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배상 여부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형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재량권을 발동하기가 어렵다. 나아가 법조문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함으로써 구금형 선고가 증가하고, 장기간 수용케 됨으로써 수용 인구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Oleson, 2011).

절대형기제(Truth-in-Sentencing)는 수용자에게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등의 사회적 처우가 절대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구금제 또는 종신형제를 말한다(Shepherd, 2002).

절대형기제는 1984년 워싱턴 주정부가 최초로 도입하였다. 연방정부는 1994년에 폭력범죄통제 및 법집행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에 구금형 우선주의 및 절대형기제를 포함시켰다. 이 법에 의해 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구금 형기의 85% 이상 수용 생활을 하여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석방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Tonry, 2014).⁵⁾

이와 같이 삼진아웃법은 필연적으로 법정형기제 및 절대형기제와 연계되는 입법적 구조를 갖게 되며, 결국 이 제도들의 결합으로 구금형과 장기형 및 종신형 선고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증가로 이어지며, 수용자 노동력 확보의 원천이 되었다(Grimes, & Rogers, 1999; Mauer, 2018).

III. 미국 민영 교정시설 관련 이슈

1. 형사정책에의 영향력 행사

민영 교정기업들은 정부의 민영 교정예산의 확보와 민영 교정시설에 대한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관리 감독 등을 완화하고, 수용 인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 사법 및 행정부에 대한 치열한 로비전을 벌였다.

〈표 2〉는 교정기업의 로비로 비판받는 대표적인 교정 관련 법이다(Cohen, 2015). 교정기업들이 민영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보 제공 및 요구권 행사에 대한 규정을 공공 교정시설에 준하도록 한 민영 교정시설정보법안 및 교정시설정보통신감독에 대한 연방교정국의 감독 관리권을 골자로 한 교정시설안전통신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연방정부의 감독이나 지휘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지휘감독청인 법무부의 예산이 감축되었음에도 정작 민영 교정시설과 관련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거나 특히 민영기업이 대부분 운영을 맡고 있는 이민국의 이민 구금시설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로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이뤄졌는지를 추정케 한다(Burkhardt, 2019).

5 그런데 무관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법정형기제 및 절대형기제는 청소년에게도 적용되고, 이에 대하여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인권침해라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즉, 유엔인권위원회는 밀러 대 알라바마(Miller v. Alabama) 판결 및 그레함 대 플로리다(Graham v. Florida) 판결을 주목하면서 청소년 사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및 절대형기제 등을 성인범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Human Rights Committee, 2014).

〈표 3〉 교정기업, ALEC 등의 로비 대상 입법 및 결과

법률번호	법률명	주요 내용	로비 대상	로비 결과
H.R. 2450	민영교정시설정보법(Private Prison Information Act, 2009)	민영 교정시설의 연방 교정시설에 준하는 수용자의 정보자유법(FOIA)상 규정 준수	모든 규정	하원 소위원회 부결
S. 251	교정시설안전통신법(Safe Prisons Communications Act, 2009)	교정시설정보통신감독권을 연방교정공무원으로 제한	모든 규정	상원 통과, 하원 소위원회 부결
S. 3607	국토안보부세출법(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ppropriations Act, 2011)	국토안보부 산하 예산, 집행 등의 분석, 감독 등	이민 및 관세국 산하의 구금시설 관련 2011, 2012 예산	법무부 예산 17% 예산감소 불구, 2011 연방 구금위원회의 5.3% 예산 증가
S. 3636	상무·법무·과학 관련기관세출법(Commerce, Justice, Science,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2011)	상무·법무·과학 관련 기관 산하 예산, 집행 등의 분석, 감독 등	연방 교정예산, 민영 교정예산	법무부 17% 감소 불구, 교정국 예산 3.4% 증가
H.R. 3082	군사건설 및 재향군인 업무 및 관련기관 세출(Military Construction and Veterans Affairs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2010)	2010년 9월 30일 종료 회계 연도 및 기타 목적으로 군사건설, 재향군인 관련기관에 예산책정	FY2012 예산-연방구금 관리 사무소 및 ICE와 관련된 규정 및 자금	공법(Public Law, No: 111- 322) 제정

* 자료 : 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2011.

교정산업계의 로비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법원은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재판에서 2010년 1월 21일 기업들이 정치선거 광고에 일반회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메케인-화인골드캠페인개혁법(McCain-Feingold Campaign Reform Act)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Kelly, 2019).

이로써 미국 기업들은 기업의 자금으로 선거 후보자 지원 광고나 선거 연설 후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정기업 역시 특정 선거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후보자 지원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대 교정산업계는 선거직인 주정부 및 지방 법원 판사들의 선거 후원금을 지원하였다(Prison Legal News, 2018).

그런데 성인범의 민영 교정시설로의 구금형 배정이나 소년범의 특정 민영 교정시설로 배정 등은 판사의 재량이다. 결국 교정기업은 판사로부터 수용자 배정을 인원을 많이 받을수록 주정부 등과의 민영 교정시설 계약 연장 등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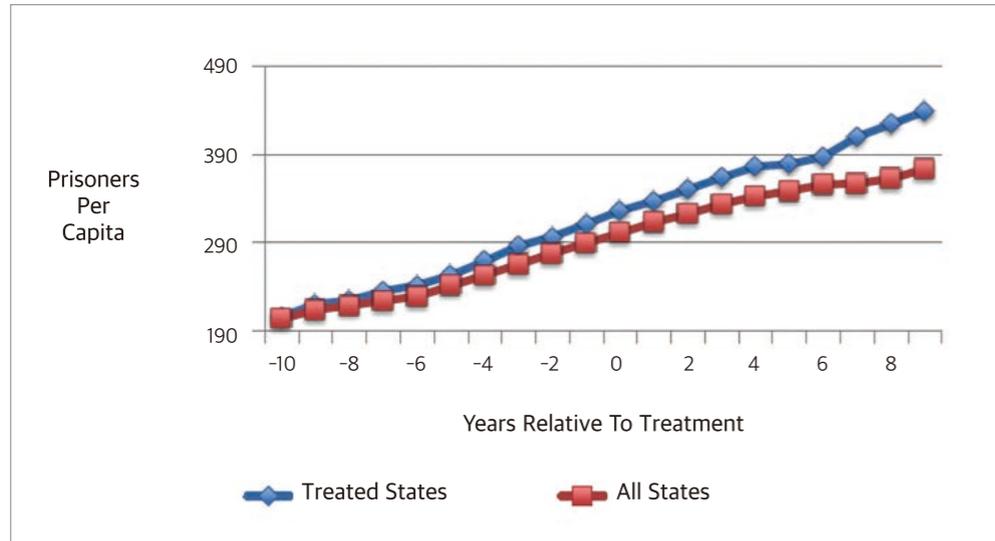
2. 교정시설 민영화와 수용 인구비의 급증

민영 교정시설을 도입하는 미국 주정부의 수용인구, 즉 인구 10만 명당 구금 인원은 미국 전국 평균 수용 인원 보다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민영화된 주의 민영화 직전 10년 동안 수용 인구나 민영화 후 10년 동안 평균 수용 인구나 50개 주 모두의 평균 수용 인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민영화를 도입하기 전 10년과 도입 후 10년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민영화 주들은 평균적으로 민영화 전에는 전국 평균 수용 인구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영화 후 3년여가 지나면서부터는 수용 인구가 전국 평균 보다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Kelly, 2019, 48-49).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민영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 확보 필요성과 법원의 엄격한 법정형기제 등의 적용 등으로 수용 인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확대해가는 사법 전략이 작동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Burkhardt, 2019).

<그림 2> 교정 민영화 전후의 수용 인구비 변화



* 자료: Kelly, 2019, 29. 재구성.

3. 수용자 노동과 갈등, 교도소 폭동

미국은 교정산업강화인증프로그램(PIECP)에 따라 교도소 수용자가 민간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다.⁶⁾

민간기업은 PIECP를 통해 연방, 주, 지방 및 인디언 교정기관과 합작 투자로 수용자 노동을 통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용자들은 민간 부문의 근로 환경과 급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PIECP 참여 수용자의 급여는 시간당 0.33 \$에서 1.4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News Week, 2018).

심지어 연방정부가 운영한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의 교도소 수용자들은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노동의 작업 조건 및 급여 수준 등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은 교도소 단위의 파업에서부터 연대 파업, 나아가 폭동으로 이어졌다.

2013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수용자 3만 명이 동참하는 파업을 일으켰고, 2014년, 2016년 앨라배마의 홀만 교도소 폭동 등 2018년 8월에 미국 17개 주의 교도소 수용자들이 노동임금을 높여주고 생활 조건을 개선하며,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며 연대 파업을 벌였다(News Week, 2018). 수용자들은 자신들은 교도소 노예(Prison Slavery)로 취급당하면서 음식 조리, 청소, 세탁, 그 외 시설 보수 등 노동과 공장 노동 등에 종사하지만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용자들의 불만은 수용자 노동의 조건이나 급여 수준 이외에도 교정비용을 수용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에도 기인한다. 즉 대부분의 미국 교정시설은 수용자들의 식별카드, 손목식별장치, 화상전화 등의 사용료를 수용자에게 징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교정시설은 비용을 절감하고, 민영 교정시설은 영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wyer, 2019).

6 미국은 1979년에 제정된 사법제도 개선법(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을 통하여 교정산업강화인증프로그램제(The Prison Industry Enhancement Certification Program: PIECP)를 도입하였다. 1984년 사법지원법(Justice Assistance Act of 1984)과 1990년 범죄통제법(The Crime Control Act of 1990)을 통하여 이 사업의 지속성이 인정되었고, 2012년부터 연방 교정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PIECP은 연방 교정국 산하의 국립교정산업협회(National Correctional Industries Association: NCIS)가 관장한다. 이 협회가 연방 교정시설, 주, 지방, 민영 교정회사 등으로부터 프로그램의 참여 승인, 감독, 파트너 업무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National Correctional Industries Association, 2020).

4. 대상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비용의 전가

민영 교정기업은 법원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교도소의 가석방 대상자 등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무를 연방, 주정부 등과 계약을 맺어 집행하며, 이는 대부분의 민영 교정기업이 민영교도소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민영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이 운영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사회 내 처우를 시행하는 것이다.

민영 사회 내 처우를 도입한 주정부 등은 법원이 유죄 확정 시 벌금형만을 선고하거나 구금형에 부과하여 선고하는 경우 민영 교정회사가 운영하는 보호관찰소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민영 교정기업은 수납한 벌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게 된다. 그리고 대상자가 2회 이상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대상자에 대한 구금형을 요구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자신의 재정 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 구금을 면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민영보호관찰관이 구금형 청구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 보호관찰 비용(Fee) 역시 대상자가 매주 40~50\$ 정도를 보호관찰소에 지불해야 한다. 결국 민영 교정기업은 사회 내 처우 대상자로부터 매주 보호관찰 비용을 징구하고, 벌금을 징구하면서 이중의 영리를 취하게 된다(Phelps, 2017). 또한 원칙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야 하며, 약물 오용 방지 프로그램이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의 비용도 대상자가 자부담하도록 하였다.

결국 보호관찰 대상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여 보호관찰 명령이 취소되고 구금형에 처해지거나, 민영 교정기업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압류 조치 등으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다(Appleman, 2016). 노숙자는 다시 크고 작은 범죄를 일으켜 구금형에 처해지고, 민영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교정 예산을 배정받는 도구로 전락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Huber, 2017).

5. 황금알을 낳아주는 이민 구금시설

미국의 이민 구금은 1996년에 제정된 비합법적인 이민과 이민자책임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근거를 둔다. 이 법은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하였고, 합법적인 이민자로서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 및 난민, 체류자 등에 대하여 미 정부가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congress.gov,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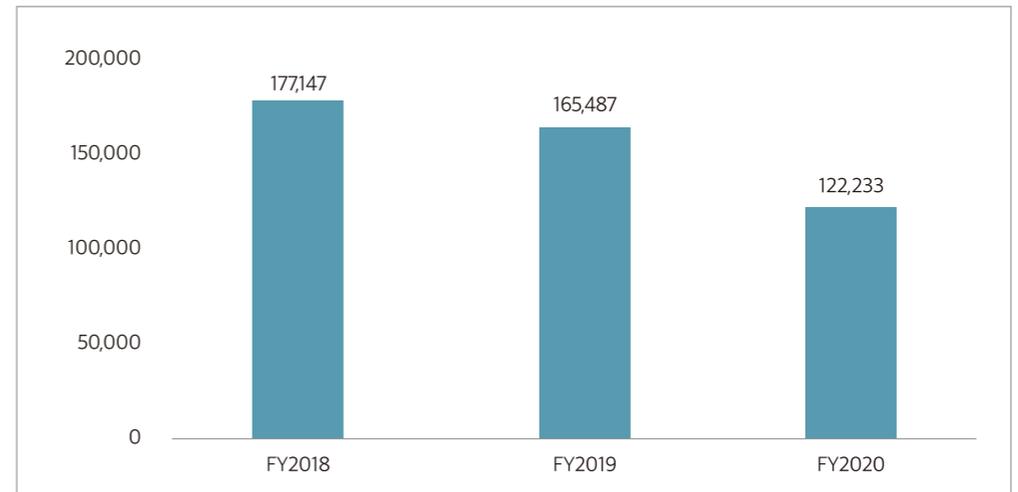
2003년에 국토안보부 산하에 설치된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이민 및 세관법(Immigration and Customs Laws)을 근거로 이

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이민자 등을 체포하여 구금센터에 수용하고 이민법 위반 조사 및 본국 송환, 체류 자격 부여 등의 조치와 관련 사무를 감독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방 교정시설에 체포한 이민자들을 수용하거나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에 위탁하여 수용하거나, 민간 교정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어 수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민 구금시설(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을 운영한다.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12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ICE, 2023).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민영 교정기업에 이민자 구금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경비를 교정기업에 지급하지만, 센터 내에서 착용하는 유니폼, 전화비 등은 모두 개인이 구금센터에 직접 납입해야 한다. 구금센터의 이민자들 역시 저임금의 노동에 종사하며, 하루 8시간 노동의 대가로 1~2\$ 정도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센터에서 생산한 상품은 교정기업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납품되거나 일반인에게 판매된다. 또한 민영 교정기업은 구금센터의 시설관리나 급식 등의 노동 역시 구금자들로 대체하고 있다(NPR, 2019). 결국 민영 이민 구금시설은 운영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이들을 상품 생산 현장에 투입하여 이익을 남기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 이외에도 상당한 영리를 취하는 것이다.⁷⁾

〈그림 3〉 이민 구금시설 구금 현황



* 자료: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 2021.

⁷⁾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이민자센터에게 수용자 1인당 일일 경비(cost)를 98.27\$ 정도 지불하나, 민영 시설의 경우 149.58\$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ICE)에 의해 이민자수용센터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대상자는 민영 교정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보호관찰 시스템의 일종인 전자발찌를 차고, 그 모니터링 비용도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Freedom for Immigrants, 2019).

민영 교정기업의 이민자 수용센터 운영 독점은 이들의 정치권 및 사법권에 대한 지속적인 로비의 결과라는 지적이다(Gómez, & Cataldo, 2016).

일례로 2016년 8월에 캘리포니아 의회는 정부와 민영 교정기업과의 이민 신청자의 구금 계약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인 「구금하지 않는 존엄성법」(Dignity not Detention act)을 제정하였다(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2019). 그러나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이 서명하지 않아 결국 폐기되었다. 그는 민영 교정기업의 교도관들로 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주 교도관노조협회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Gómez, & Cataldo, 2016). 그는 2013년에 GEO와 1,400여 명을, 그리고 CoreCivic과 2,300여 명을 수용하는 이민자 구금센터의 계약을 새로 맺기도 했다.

민영 교정기업의 로비는 연방 의회에도 파격적으로 이루어졌다(Enns, & Ramirez, 2018). 즉 CoreCivic는 2013년 이후 의회의 국토안보부 소위원회에 직접 천만 달러 정도의 로비를 퍼부었고, 이 소위원회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직접 민영 교정기업에 이민자를 할당(배정)하도록 했다. 결국 이민세관단속국이 직접 GEO, CoreCivic와 2013년과 2014년에 1,566백만 달러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In the Public Interest, 2018).

이와 같은 로비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루어졌다. 가장 큰 민간 교정기업인 GEO와 CoreCivic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각각 25만 불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Independent Global News, 2016; USA Today, 201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100일 안에 이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2~3백만 명의 사람들을 추방할 것이며, 추방 전에는 이민자 수용센터에 수용할 것이라고 이민자 통제 공약을 밝혔다. 이 발표 이후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까지 민영 교정기업의 주가는 평균 40% 정도 상승했고, 당선이 확정된 날에는 무려 16% 정도 급격히 상승했다(The Guardian, 2016).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을 확장하고 이민자 수용센터의 증설을 요지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이민자의 체포와 구금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EO와 CoreCivic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통제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USA Today, 2017).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민세관단속국의 이민 구금시설의 수용 인원은 2017년 34,000명에서 2018년에는 40,520명, 2019년에는 51,379명으로 늘었고, 예산은 28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이 가운데 GEO와 CoreCivic사 등 민영 교정기업이 매해 60~70% 정도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CNBC, 2019).

이민 구금시설의 평균 구금 기간은 2019년의 경우 평균 55일이지만, 이것은 센터에 입소 되기 전 대기 기간이나 이민 법원의 재판 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더 많은 기간 동안 구금되는 것이다(American Immigration Council, 2020; ICE, 2023).

IV.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연방교정국의 민영 계약 종료

1. 2016년 법무부 감찰관실의 민영 교정시설 진단 보고서

2016년 8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민영 교정시설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Review of the Federal Bureau of Prisons' Monitoring of Contract Prisons)를 발표하였다(Department of Justice'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2016). 감찰관실은 연방교정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한 민영 교정시설 14개소에 대하여 외부 물품 반입, 사건 보고, 봉쇄, 수용자 징계, 전화 모니터링, 고충 처리, 소변 약물검사, 성폭력 등 8개 항목을 진단하였다.

그런데 모든 민영 교정시설이 공공 교정시설 보다 1인당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정 서비스,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방 시설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며, 수용자의 안전과 인도적인 처우 역시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교도관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과 생활 여건도 공공 교정시설 보다 열악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찰관은 연방교정국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4〉 법무부 감찰관실의 제안 요지

1. 연방교정국은 공공 교정시설 보다 민영 교정시설의 1인당 안전 및 보안 사고가 더 많은 이유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방교정국은 민영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입소 초기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과 같은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는지 더 자주 모니터링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3. 연방교정국은 민영 교정시설이 당초 계약된 대로 교도관을 배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약된 대로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수시로 감시하여야 한다.
4. 연방교정국은 민영 교정시설이 계약 조건대로 교정행정 및 교정처우 등을 제대로 하는지를 정교한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평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재평가 및 분석하여야 한다.

2.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은 법무부 감찰관의 이 민영 교정시설에 대한 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26일 민영 형사 구금시설의 사용을 폐지하기 위한 구금시스템 개혁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Reforming Our Incarceration System to Eliminate the Use of Privately Operated Criminal Detention Facilities, Executive Order 14006)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하였다(The White House, 2021).

이 행정명령은 첫째, 향후 연방정부는 향후 민영 구금시설에 대한 의존을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인센티브를 줄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둘째, 미국의 구금 및 교정 시스템은 재활과 구속을 우선시해야 하며, 수용자는 양질의 생활비를 벌고, 저렴한 주택을 확보하고, 동료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완전히 재통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수용자의 안전과 인권 처우가 보장되어야 하며, 교도관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생활 여건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넷째, 연방의 법무부는 더 이상 민영 교정시설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다.

Executive Order on Reforming Our Incarceration System to Eliminate the Use of Privately Operated Criminal Detention Facilities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Section 1. Policy. More than two million people are currently incarcerated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people of color. There is broad consensus that our current system of mass incarceration imposes significant costs and hardships on our society and communities and does not make us safer. To decrease incarceration levels, we must reduce profit-based incentives to incarcerate by phasing out the Federal Government's reliance on privately operated criminal detention facilities.

We must ensure that our Nation's incarceration and correctional systems are prioritizing rehabilitation and redemption. Incarcerated individuals should be given a fair chance to fully reintegrate into their communities, including by participating in programming tailored to earning a good living, securing affordable housing, and participating in our democracy as our fellow citizens. However, privately operated criminal detention facilities consistently underperform Federal facilities with respect to correctional services, programs, and resources. We should ensure that time in prison prepares individuals for the next chapter of their lives.

The Federal Government also has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safe and humane treatment of those in the Federal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as the Department of Justice'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found in 2016, privately operated criminal detention facilities do not maintain the same levels of safety and security for people in the Federal criminal justice system or

for correctional staff. We have a duty to provide these individuals with saf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Sec. 2. Contracts with Privately Operated Criminal Detention Facilities. The Attorney General shall not renew Department of Justice contracts with privately operated criminal detention facilities, as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Sec. 3.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JOSEPH R. BIDEN JR.

THE WHITE HOUSE,

January 26, 2021.



V. 결론 및 미국의 민영 교정산업의 미래 전망

바이든 대통령의 출범 이후 미국의 민영 교정산업은 획기적인 전환점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의 법무부는 더 이상 민영 교정기업과의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적어도 법무부는 더 이상 연방 범죄자를 민영 교정시설에 수용치 않겠다는 의미와 둘째는 민영 교정기업이 그들이 제공하는 교정 서비스에 신뢰감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법무부 감찰관실의 2016년 감사보고서는 모든 진단 항목에서 민영 교정시설이 공공 교정시설 보다 교정서비스의 질적 측면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명확하게 지적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집행명령에 적시하였다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결국 2022년 11월 30일을 기점으로 연방교정국은 민영 교정기업과 체결하였던 교정 계약을 종료하였다고 2022년 12월 1일에 발표하였다(BOP, 2022). 즉, 더 이상 연방정부 차원의 연방범에 대한 민영 교정시설에의 구금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민영 교정기업의 중요한 수입원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토안보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구금시설이 그것이다. 연방정부가 이민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이민 구금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민영 교정기업의 구금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연방정부의 고민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소송은 민간 교정기업인 GEO와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대상으로 제소한 사건이었다(LA Times, 2022).



2022년 9월 26일 연방대법원의 제9항소순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입법 예고한 민영 교정기업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교정시설을 운영하거나 연방정부의 이민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Assembly Bill 32)은 주정부들이 연방법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수정헌법의 주권 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정헌법 위헌을 선고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장기 구금을 끝내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 이민에 대한 제재 방침도 밝히고 있다. 즉, 민영 교정기업이 여전히 이민 구금시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기회는 남아있는 것이다(NY Times, 2022).

또한 연방정부가 주정부 등에 위탁 수용하면서 주정부 등이 민영 교정기업과 예약을 맺던 위탁 수용 방식 역시 변호를 가져올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같이 형사범 위탁 수용이나 이민 구금시설 등을 주정부 등의 관할 지역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주법을 제정함으로써 연방정부에 맞서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참고문헌〉

[국외 문헌]

- Appleman, L. I. (2016). Nickel and Dime into Incarceration: Cash-Register Justice in the Criminal System. *BCL Rev.*, 57, 1483.
- Burkhardt, B. C. (2019). The politics of correctional privatization in the United States. *Criminology & Public Policy*, 18(2), 401-418.
- Cohen, M. (2015). How for-profit prisons have become the biggest lobby no one is talking about. *The Washington Post*, 28.
- Congress.Gov.(1996). <https://www.congress.gov/104/crpt/hrpt828/CRPT-104hrpt828.pdf>
- Department of Justice'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2016). Review of the Federal Bureau of Prisons' Monitoring of Contract Prisons.
- Fink, E. M. (2016). Union Organizing & Collective Bargaining for Incarcerated Workers. *Idaho L. Rev.*, 52, 953.
- Gómez, J., & Cataldo, P. (2016). Private prisons and political contributions: How big money shackles immigration policy.
- Grimes, P. W., & Rogers, K. E. (1999). Truth-in-sentencing, law enforcement, and inmate population growth,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28(6), 745-757.
- Hawkins, G. (1983). Prison labor and prison industries. *Crime and justice*, 5, 85-127.
- In the Public Interest, https://www.inthepublicinterest.org/wp-content/uploads/ITPI_PrivatePrisonP3s_June2018FINAL.pdf
- Huber, P. J. (2017). Justice for sale: The rhetoric of for profit probation and rehabilitation. Western Carolina University.
- Human Rights Committee. (2014).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port No. CCPR/C/USA/CO/4.
- Kelly, T. (2019). *The Politics of Prison Privatization: Political Strategies of Business and Labor* (Doctoral dissertation, UC Berkeley).2
- Buday, M. & Nellis, A. (2022). *The Sentencing Project*, 2022.
- Mauer, M. (2018). Long-Term Sentences: Time to Reconsider the Scale of Punishment. *UMKC L. Rev.*, 87, 113.
- Newburn, T., & Jones, T. (2007). Symbolizing crime control: Reflections on zero tolerance. *Theoretical criminology*, 11(2), 221-243.
- Phelps, M. S. (2017). Mass probation: Toward a more robust theory of state variation in punishment. *Punishment & Society*, 19(1), 53-73.

- Sawyer, W., & Wagner, P. (2019). Mass incarceration: The whole pie 2019. Northampton, MA: Prison Policy Initiative. Retrieved April, 8, 2019.
- Sentencing project, <https://www.sentencingproject.org/wp-content/uploads/2017/08/Private-Prisons-in-the-United-States.pdf/>
- Tonry, M. (2014). Remodeling American sentencing: A ten-step blueprint for moving past mass incarceration. *Criminology & Public Policy*, 13(4), 503-533.
- Oleson, J. C. (2011). Risk in sentencing: Constitutionally suspect variables and evidence-based sentencing. *SMUL Rev.*, 64, 1329.
- Sawyer, W., & Wagner, P. (2019). Mass incarceration: The whole pie 2019.
- Northampton, MA: Prison Policy Initiative. Retrieved April, 8, 2019..
- Shepherd, J. M. (2002). Fear of the first strike: The full deterrent effect of California's two-and three-strikes legislation.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31(1), 159-201.
- US Dept of Justice. (1980). Programs Meeting Effectiveness Criteria of Section 401 (A)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1979.
-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2021),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Fiscal Year 2020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Report.

[웹사이트]

- A.C.L.U. Says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y Should Be Shut Down, <https://www.nytimes.com/2022/09/22/us/politics/aclu-ice-immigration-detention.html>
- BOP, Ends Use of Privately Owned Prisons, https://www.bop.gov/resources/news/20221201_ends_use_of_privately_owned_prisons.jsp/
- CNBC, Private prison firm quietly ramps up GOP lobbying efforts as Trump expands immigrant detention centers, <https://www.cnbc.com/2019/10/04/private-prison-firm-ramps-up-lobbying-amid-trump-immigration-crackdown.html>
- Freedom for Immigrants, <https://www.freedomforimmigrants.org/detention-statistics/>
- ICE, detention-management, <https://www.ice.gov/detain/detention-management/>
- Independent Global News, https://www.democracynow.org/2016/11/11/will_trumps_immigration_crackdown_be_a/
- ITPI, CoreCivic and GEO Group's push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building prisons, https://www.inthepublicinterest.org/wp-content/uploads/ITPI_PrivatePrisonP3s_Jan2018.pdf/
- LA Times,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2-09-26/court-says-california-ban-on-private-ice-detention-facilities-is-unconstitutional/>
- National Correctional Industries Association, <https://www.nationalcia.org/>

- News Week, <https://www.newsweek.com/prison-slavery-who-benefits-cheap-inmate-labor-1093729/>
- NPR, <https://www.npr.org/2019/04/19/713910647/hunger-strikes-at-ice-detention-centers-spread-as-parole-bond-is-denied/>
- Prison Lgal News, <https://www.prisonlegalnews.org/news/2018/aug/6/private-prison-firms-use-revolving-door-lobbying-generous-campaign-donations/>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6/nov/10/corporate-winners-donald-trump-election-private-prisons-pharma/>
-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https://oig.justice.gov/about/>
-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6/executive-order-reforming-our-incarceration-system-to-eliminate-the-use-of-privately-operated-criminal-detention-facilities/>
- USA Today, <https://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2017/02/23/private-prisons-back-trump-and-could-see-big-payoffs-new-policies/98300394/>
- World Prison Brief, <https://www.prisonstudies.org/country/united-states-america/>



전국 교정기관 언론담당관 영상회의 개최



일시·장소 3. 13.(월) 16:30, 교정본부 회의실
회의 방식 비대면 온나라 영상회의
참석 대상 -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 등 3명
 - (소속기관) 지방교정청 및 교정기관 총무과장
회의 주제 취재 요청 시 대응 요령 및 유의 사항 등

교정본부-한국청년회의소 업무 협의



일시·장소 3. 29.(수) 15:00, 교정본부장 집무실
참석 대상 - (교정본부) 교정본부장, 사회복귀과장 등 3명
 - (한국청년회의소) 이상현 중앙회장 등 5명
주요 내용 청년 교정위원 위촉 활성화를 위해 교정본부와 한국청년회의소 간 업무 협조체제 방향 논의

교정본부장, 「제36회 아시아교정포럼 공동학술대회」 축사

일시·장소 3. 24.(금) 14:00, 교회방송센터 ※ 교정본부장, 줌(Zoom) 영상회의 참석 및 축사



「제36회 아시아교정포럼 공동학술대회」 개요

- 일시·장소 : 3. 24.(금) 14:00, 서강대학교
- 방법 : 대면 / 비대면(Zoom 영상회의) 병행
- 주제 : “알코올 및 마약 중독과 범죄자 처우”
- 주최 : (사)아시아교정포럼 학회,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 ※ '11. 6. 법무부에서 사단법인 아시아교정포럼 설립 허가

법무부장관, 신규 교정직 7급 수료식 및 임용식 참석



일시·장소 3. 31.(금) 10:30,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참석 대상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법무연수원장·부원장, 교육생 및 가족 등 200명
주요 내용 법무부장관이 진천 법무연수원 개원 이래 최초로 교정공무원 임용식 참석 및 계급장 수여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김석구

수용자 자녀지원 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3월 14일 소속기관 수용자 자녀지원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용자의 미성년 위기 자녀 발굴 사례 발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다짐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김승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서울구치소는 3월 6일부터 일주일간 부서별 릴레이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실시했다.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 및 개인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안양교도소 | 교사 이승연

난동 진압 훈련 실시

안양교도소는 3월 8일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난동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 직원들은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상황전파 및 출동·설득·진압 등을 통해 조기에 소란·난동을 진압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수원구치소는 3월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및 '음주운전 근절 표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괜찮겠지! 한잔 정도, 후회한다! 한평생을(교위 이기현)" 표어는 배너로 제작해 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EBS <자이언트 팽TV> 촬영 지원

서울동부구치소는 3월 14일 교정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교정행정 홍보를 위해 EBS <자이언트 팽TV> 촬영 제작을 지원했다. 이날 촬영은 호송버스로 정문을 통과해 신입실, 수용동, 접견실, 작업장 등 실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음주운전 근절 표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인천구치소는 3월 21일 음주운전 근절 표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87건의 표어가 접수됐으며, 교도관 회의를 실시한 후 최우수작 1건, 우수작 2건을 선정해 표창장을 시상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조도현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서울남부구치소는 3월 6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에서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낭독 및 음주운전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공명환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3월 9일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헌혈자 감소에 따라 혈액 보유가 어려운 상황 속 국가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채병준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체 소방훈련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3월 17일 인명 구조와 화재 대비를 위해 심폐소생술 및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참여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은 직접 심폐소생술 실습하고 소화기 등 소방장비를 활용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홍재성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여주교도소는 3월 21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류동수 소장은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 상생에 앞장서고, 생명 나눔 실천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이동희

직원 교정훈련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3월 22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방지를 위해 직원 교정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수용자들이 직원들에게 행동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호신술 및 제압술 교육으로 진행됐다. 내부감사 차병근 교위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음주운전 가상 체험 교육 실시

춘천교도소는 3월 17일 음주운전 가상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원들이 소주 1~2병의 음주 상태와 같은 효과를 내는 특수고글을 착용한 후 라바콘 피하기, 일직선 걷기 등을 체험했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피부로 느낀 유익한 시간이 됐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원주교도소는 3월 6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는 전 직원이 선서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서민 소장은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강릉교도소 | 교사 고경오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 실시

강릉교도소는 3월 10일 교정협의회와 오병이어봉사단의 후원으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 Day!'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단이 조리한 약 2,000개의 붕어빵은 전 수용자에게 지급됐으며, 박대철 소장은 수용자들이 따뜻한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해 준 교정협의회와 봉사단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월교도소 | 교위 서찬우

자살 예방 및 음주운전 방지 교육 실시

영월교도소는 3월 9일 자살 예방 및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온나라 영상희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한편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업무협약 체결

강원북부교도소는 3월 20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직원들은 속초 개인택시 복지정보센터에 방문해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 정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수용자 물품 기증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3월 2일 한국국제기드온협회 평택 캠프로부터 성경 300권을 기증받았다. 김석홍 지소장은 “종교를 통한 수용자들의 수용 생활 안정과 교정교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황실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는 3월 7일 황실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황실문화를 통한 교정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교정교화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최윤호

보안과장 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3월 7일 폭행사건 예방대책 및 보안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소속기관 보안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우희경 청장은 소속기관 보안과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보다 나은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장학금 전달

대구교도소는 3월 23일 하빈초등학교, 동곡초등학교, 다사초등학교를 방문해 모범 학생 4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김남주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가야고속관광투어(주)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는 3월 17일 비상 상황 시 위기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부산지역 국가 중요 시설 인명 보호와 지역사회 혼란 방지를 위해 가야고속관광투어(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동윤 소장과 가야고속관광투어(주) 대표가 참석해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수용자 이송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강중구

마약류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3월 13일 마약류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수용자들은 약물의 문제와 정신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단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장중선 소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창원교도소 | 교도 김시진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창원교도소는 3월 2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원들은 음주운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등 교육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사고 사례 및 징계 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부산교도소 | 교위 이재운

사랑의 손잡기 운동 행사 실시

부산교도소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랑의 손잡기 운동 행사를 실시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경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 계층에게 봉사활동, 고충상담, 후원금 등을 지원하는 행사다.

포항교도소 | 교사 박승현

교정시설 참관 실시

포항교도소는 3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장원재 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검찰청 직원들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대감이 형성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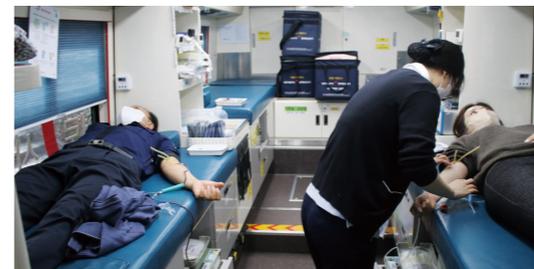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진주교도소는 3월 9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에서 직원들은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되새기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다졌다.

대구구치소 | 교위 장지윤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대구구치소는 3월 6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윤시현

음주운전 근절 포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3월 7일 음주운전 근절 포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최우수상 교사 이

정호, 우수상 전문경력관 나군 조희영, 장려상 교위 문영진 등 총 6명에게는 포상금을 시상했다.

안동교도소 | 교사 신동관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안동교도소는 3월 6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 15명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졌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3월 15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진보중학교 성적 우수 학생 1명과 효행 학생 1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강성현 소장은 “앞으로도 교정장학회 사업을 통해 꾸준히 지역사회 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진용혁

수용자 물품 기증

김천소년교도소는 3월 9일 한국국제기드온협회 김천캠프로부터 성경 200권을 기증받았다. 허덕환 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사 최도원

승진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3월 9일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송진수 소장은 승진 직원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임명장을 직접 전달하며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교정발전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합동 종합 소방훈련 실시

울산구치소는 3월 21일 울산 온산소방서와 합동으로 종합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교정시설 내 화재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조치를 통한 조기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시설물 보호 등 적극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주교도소 | 교위 이상길

소년·노인수용자 등 건강검진 실시

경주교도소는 3월 14일 소년 및 노인수용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건강 관리에 취약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최재우 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합동 전술 토의 개최

통영구치소는 3월 15일 국가 중요 시설 합동 전술 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의에서는 방호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및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을 이야기했다. 통영구치소는 이번 토의를 통해 방호 지원 부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장학금 전달

밀양구치소는 3월 24일 관내 자매결연 학교인 부북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우 관계가 좋은 학생에게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정원수 소장은 “직원들의 작은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안전 관리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개최

상주교도소는 3월 16일 상주소방서와 안전 관리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 관리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됐다. 또한, 핫라인 구축 및 초기 대응체계를 위한 간담회도 함께 진행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최경환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류기현 대전지방교정청장은 3월 29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소속기관 직원의 후생 복지 및 근무환경, 수용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대전교도소는 3월 24일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과 3월 안전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교정현장 확인을 위해 소내 참관을 실시했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태권도 9단 승단

청주교도소 교감 임섭은 3월 8일 교정공무원 중 최초로 태권도 9단에 승단했다. 임섭 교감은 1992년 무술교도관 태권도 특채로 입직해 수용자 교정교화와 수용 질서 확립에 기여했으며, 진천 법무연수원 태권도 교수로도 활동해 왔다.



천안교도소 | 교사 광태업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천안교도소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심신케어 프로그램은 각종 직무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심신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커피 트릭과 스트레스 측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조은희

차담회 실시

청주여자교도소 각 부서는 3월 6일부터 2주에 걸쳐 이규성 소장과 차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규성 소장은 각 부서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으며, 고충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 개최

공주교도소는 3월 6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에서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 및 선서, 음주운전 교육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미소갤러리 작품 전시회 개최

충주구치소는 3월 13일 민원봉사실 내 미소갤러리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미소갤러리에서는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매년 정기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옥수 작가의 작품 10점을 ‘청춘’이라는 주제로 전시했으며, 방문 민원인에게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고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홍성교도소 | 교사 김희빈

교정시설 참관 실시

홍성교도소는 3월 8일 관내 유관기관장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교정시설을 살펴본 유관기관장들은 교정행정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리 상담, 피지컬 상담, 마음힐링부스가 운영돼 직원들이 수용 관리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출정 수용자 도주 사고 대비 훈련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3월 14일 출정 수용자 도주 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검찰청 및 법원 내 취약개소, 예상 도주로 등을 파악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도주 사고 예방과 직원들의 효율적인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전용배

비상소집훈련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3월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직원들의 비상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것으로 비상연락망 체계 및 자체 방호계획을 점검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인균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실천 결의 대회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3월 6일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를 통해 직원들은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되새겼으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광주교도소 | 교위 이현진

청렴 플로깅 캠페인 실시

광주교도소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북구 일곡동 일대에서 '청렴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맞이 환경미화와 청렴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전주교도소는 3월 7일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사랑의 헌혈 운동' 캠페인 확산을 위해 각 부서장 및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순천교도소는 3월 2일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 대회에서 직원들은 선서문 낭독과 서약서 작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과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호신술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목포교도소는 3월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호신술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사고를 예방하고, 교정현장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에 직원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교도소 | 교위 우영미

양성평등교육 실시

군산교도소는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독립운동 앞에 성별은 없다>라는 영상

을 시청하고, 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교도소 | 교사 고동성

음주운전 근절 표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주교도소는 3월 7일 음주운전 근절 표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정해 시상했으며, 선정된 표어는 청사 전광판 및 현수막으로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다.

장흥교도소 | 교사 채종건

교정협의회 미용 봉사 실시

장흥교도소는 3월 8일 교정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 봉사를 실시했다. 조병주 소장은 "여성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신 교정협의회의 활동에 감사드립니다"며 소감을 말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청렴 탐방 실시

해남교도소는 3월 9일 다산초당 및 백련사 등을 방문해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되새기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최종일 소장은 "다산 유적지 탐방에서 되새긴 청렴 정신을 전 직원에게 전달해 청렴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윤홍익

정읍드론항공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는 3월 16일 재난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상호 간의 정보 공유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읍드론항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성일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교도소 교위 김윤수

김윤수 교위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수용자 상담으로 개별적인 수용 생활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질서 있는 수용동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은밀하고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수용자 간 폭행 피해를 조기에 발견해 교정사고를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해 수용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사 장근봉

장근봉 교사는 현재 보안과 야근 담당자로 근무 중 수용자가 화장실로 수건 두장을 가지고 들어가 자살 시도하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즉시 거실 내로 들어가 자살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저지해 교정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충주구치소 교감 신국철

신국철 교감은 수용기록과 취·창업 업무를 맡아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출소수형자들을 취업시키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근무 자세로 수용 질서 확립 및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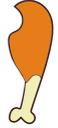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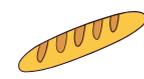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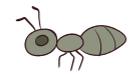
제주교도소 교사 김태익

김태익 교사는 일일 평균 90~100명에 육박하는 미지정 수용동을 담당하면서 수용자에 대한 동정 관찰을 철저히 하며, 수용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으로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해 교정사고 방지 및 수용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독자퀴즈

숨은 그림 찾기

아래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숨은 그림 10개를 찾아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치킨
-  우산
-  아이스크림
-  피자
-  케익
-  바게트
-  셔플룩
-  햄
-  주스
-  개미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문화상품권 1만 원권 발송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합니다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4일 ~

대상 지역 : 경기도 부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 등
- ※ (제외)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

신청방법

- 01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목록 확인
※ 유의사항
① 진단서는 소급하여 발급 불가하므로 질병·부상 발생 즉시 발급 필요
②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최대 8주)

지원내용

-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하여 → 일 46,180원,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 02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 준비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03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자세한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세요!





장소변경접견 안내

법무부는 사회적 유력자가 아니라 **노약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장소변경접견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소변경접견이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접견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

장소변경접견을 원하는 민원인께서는 신청 사유를 상세하게(증빙서류 첨부) 기재한 「장소변경 접견 신청서」를 방문 기관 민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모사전송 등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견 시간

장소변경접견은 평일에 실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국가지정기념휴일)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허가 절차

장소변경접견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주일 정도 후에 그 결과를 유·무선(문자)의 방식으로 회신해 드립니다.

※ 장소변경접견은 심의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접견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피의자*, 조직폭력·마약류수용자, 조사·징벌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는 장소변경접견이 제한됩니다.
 - * 피의자 : 피고인 또는 수형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포함
 - 접견 시간은 30분 이내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접견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소변경접견은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소변경접견 시 교도관이 참여합니다.(미결수용자의 경우 녹음 실시)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